

월간

재정포럼

2015. September_Vol.231

9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소득 불평등과 복지 정책/ 장용성

현안분석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최한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과 건강보험재정관리에 대한 시사점/ 최성은

특집

2015 지방세제 개편(안)

공공정책포럼

사람의 혁신, 100년의 미래

CONTENTS

권두칼럼

소득 불평등과 복지 정책 · 장용성 02

현안분석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 최한수 06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과 건강보험재정관리에 대한 시사점
· 최성은 26

특집 · 2015 지방세제 개편(안)

2015년 지방세제 개편(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이동혁 45

2015년 지방세제 개편안 평가 · 김현아 50

공공정책포럼

사람의 혁신, 100년의 미래 58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OECD, 각국의 조세행정체계와 우수사례들을 비교하는
Tax Administration 2015 보고서 발표 외 66

정책흐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114

2015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126

2016년 국세 세입예산(안) 128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130

이슈&포커스

기재부·OECD·KIPF 공동 '제4차 국제재정포럼' 개최 외 144



소득 불평등과 복지 정책



장용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상위 1% 부자들의 탐욕 때문에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구호와 행진이 미국의 월가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면 빈부격차가 연상된다. 실제 2010년 미국 가계의 재산 실태 조사에서는 상위 1%가 경제 전체 재산의 약 35%를 소유한다고 추정한다. 과연 자본주의가 이처럼 부의 집중을 심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주범일까?

201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세전 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4로서 OECD 평균(0.47)이나 미국(0.49)보다 훨씬 양호하다. 세후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1로서 딱 OECD 평균이다. 어느 한 시점의 소득 불평등 정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분포가 딱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나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부자에 대한 불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10대 부자 중 7명이 자수성가한 1세대이고 3명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10대 부자 중 7명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3명이 자수성가한 1세대다. 한국 노동 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소득을 5개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최하위 그룹에 있던 사람이 1년 뒤에 최소한 한 단계 이상 올라갈 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이 과거 약 40%였다. 다음해에도 최하위 그룹에 머무를 확률은 60%였다. 그러나 이 숫자가 2000년대 들어 30대 70이 되었다. 소득 분위가 올라갈 확률이 40%에서 30%로 낮아진 것이다. 횡단면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그리 나쁘지 않으나 동태적 측면에서는 역동성이 떨어지고 소득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

소득만 놓고 보면 아이돌 스타들도 상위 1%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소득의 불평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치열한 경쟁을

뚝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는 사례를 보면 오히려 그곳에 엄청난 재능과 노력이 모여든다.

공정한 기회가 약속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후적 결과의 불평등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쟁에 뛰어들 용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잘 살 수 없다면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한다. 해보나마나 한 게임이라면 누군들 참여하고 싶겠는가?

시장경제와 경쟁은 필연적으로 결과의 불평등을 낳는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하면 시장경제만큼 인류의 삶을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개선시킨 체제도 없었다. 오랜 세월 인류의 평균적인 삶은 사실상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 19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봉건적인 신분제의 타파와 함께 등장한 사유재산권의 확립과 시장경제가 낳은 기술 혁신이 성장의 원동력이었다고 경제 사학자들은 평가한다.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시간은 1분 45초에 불과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가 눈을 감기 전 비행기는 수십 명의 승객을 싣고 대서양을 횡단했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불평등이 계속 악화될 것만도 아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미국에서 지니계수는 비록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지니계수가 악화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1980년대 이후의 큼직한 발명들(예를 들어,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혁명)이 숙련 노동자 내지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숙련 노동 보완적 기술 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형태로 진행된 것이 주된 이유라 평가된다.

복지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공정한 게임을 보장하고 세금을 요긴하게 잘 사용할 것이란 신뢰를 준다면 복지 정책에 대한 합의가 훨씬 수월하다. 하지만 정부가 미덥지 않다면 부자는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기회를 주지 않은 사회가 원망스러울 것이다.

복지 정책은 대체로 세 가지 기능을 지닌다. 첫째, 부자의 소득 일부를 어려운 이에게 이전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 둘째, 열심히 노력했지만 운이 나빠 곤경에 처한 경우를 돕는 일종의 보험기능. 품앗이, 경조사 부조 등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으로 내려오는 전통이다. 셋째, 도로, 공원, 학교 등 다함께

.....
**공정한 기회가
 약속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후적 결과의
 불평등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쟁에 뛰어들 용의가
 있을 것이다.**

.....

**복지정책이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쟁이 지나치게
소득 재분배
이슈로만 부각되는
것은 아쉽다.**

.....

사용하는 공공재에 대한 투자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나 공공재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혜택을 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적다. 복지 정책이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쟁이 지나치게 소득 재분배 이슈로만 부각되는 것은 아쉽다. 오히려 이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 정책들에 사용되는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진정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몇 년 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교수가 해준 얘기가. 초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가 하루는 “아빠, 오바마에게 투표하세요”라고 했다. 왜 오바마를 찍어야 하냐고 물었더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펴니까요.”라고 답하더라. “그런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아빠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라고 되물었더니 “네 괜찮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라고 한다.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스러운 일이다.

마침 이날이 할로윈 데이(Halloween Day)라 딸아이는 동네를 돌며 사탕을 모았다. 한 달을 먹고도 족히 남을 양이었다. “어차피 너 혼자 먹기에 너 무 많으니 내일 학교에 가져가서 기부를 좀 하는 게 어때?”했더니,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추운 날 온 동네를 돌며 애써 모은 사탕을 왜 남에게 주라고 하느냐”며 버럭 화를 내더라.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

각종 복지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에게 과연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사업의 혜택은 큰 소리로 얘기하지만 그 비용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정치인은 드물다. 정부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올리거나, 새로 돈을 찍거나, 돈을 빌려 적자 재정을 꾸려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더 걷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가가 성큼성큼 오르는 요즘 돈을 더 푸는 것도 위험하다. 일단 빌려 쓰는 것이 당장에 손쉬운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자 재정으로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은 결국 다음 세대의 돈을 빌려 지금 소비하는 것이다.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세금을 부담시킬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최상의 복지(welfare)는 일자리(workfare)라는 점을 선거에 나서는 선량들이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최한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과 건강보험재정관리에
대한 시사점
최성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hoihs@kipf.re.kr)

I. 연구의 동기

한국의 사법부는 기업범죄, 특히 재벌이 연루된 경제범죄에 대해 유독 관대하다.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 재판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2008년 4월, 삼성특검은 이견희 회장을 「특가법」상의 조세포탈과 「특경가법」상의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번의 파기 환송을 포함하여 총 4번의 재판을 거친 뒤 2009년 8월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같은 해 크리스마스, 이명박 대통령이 이견희 회장을 단독 사면했다. 형 확정에서 사면까지 걸린 시간은 139일이었다. 3개월 뒤인 2010년 3월 이견희 회장은 그룹 총수로 복귀했다. 이를 두고 한 외신은 “전 엔론(Enron) CEO인 제프리 스킨링(Jeffrey Skilling)이 한국인이었다면 우리는 그가 이미 CEO로 복귀해 회사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놀라운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¹⁾

왜 한국의 법원은 재벌범죄에 대해 이처럼 관대한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음의 세 가지 질문으로 바꾸어 던져보았다.

첫째, 기업범죄에서 재벌 피고인³⁾과 비재벌 피고인 사이의 양형 격차(sentencing disparity)가 존재하는가?

둘째, 이러한 양형 격차가 있다면 그 격차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것은 법원의 재벌 편향(財閥 偏向)의 산물인가 아니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제

1) 본 연구는 Choi, Hansoo, Hyung-Goo Kang, Changmin Lee(2014), “What Constitutes Too-Big-To-Jail,” working paper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외국의 독자를 위해 쓰여진 working paper와 달리 본 연구는 국내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작성하였고 특히 제V장과 제VI장 부분은 working paper에 없는, 본 연구를 위해 별도로 작성된 부분이다.

2) Oliver, Christian, “The Korea discount: blame the businessmen,” Christian Oliver: beyond bricks, *Financial Times*, 31 August 2010, Web, 22 April 2014.

3) 재벌 피고인은 단지 재벌 총수 일가뿐 아니라 재벌 계열사들을 담당하는 전문 경영인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반 요인, 그중에서도 재벌과 비재벌 피고인들이 선임한 변호인 간의 능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가?

일반적으로 부유한 피고인들은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수사 와 재판에 대비하는데, 사법부의 편향성을 논의 하기에 앞서 이러한 요인이 형량의 차이를 가져오 는 것은 아닌지(미국 기업범죄의 경우 Weisburd et al.(1994); Strader, J. K.(2006) 참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법원의 재벌 편향(chaebol bias)이 존재한다면 법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편향 된 태도를 갖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을 던져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음의 두 가설(testable hypotheses)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재벌 편향성은 재벌이라는 거대 한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서 기 인한 것이라는 가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규모 가설(size hypothesis)’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또 다른 가설은 기소가 된 범죄의 주된 동기가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것이지만 이것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형식을 띠는 한 법원이 이러 한 범죄를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그 비난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여 이러한 판단이 양 형에 있어 집행유예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López de Silanes et al.(1999); López de Silanes et al.(2000); Djankov et al.(2008))은 대륙법계(civil law)의 사법부는 자기 거래(self-dealing)를 소수주주나 투자자가 아닌 그 료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보통 법계(common law) 사법부보다 외부 투자자 보호 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선행연 구에 근거해 앞서 언급한 가설을 ‘대륙법 가설(civil law hypothesis)’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본 연구에

“
**총수 일가나 전문경영인을
 가리지 않고 범죄자가
 재벌 계열사와 관련 있을 경우,
 유죄 선고 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일반 경제범죄자보다
 10%p 올라간다.**
 ”

서는 이 두 가설들이 데이터를 통해 지지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사법시스템의 강 한 재벌 편향성의 확인이다.

총수 일가나 전문경영인을 가리지 않고 범죄자 가 재벌 계열사와 관련 있을 경우, 유죄 선고 시(실 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일반 경제범 죄자보다 10%p 올라간다. 이러한 결과는 아주 강건 해서 사건과 범죄자의 특성, 그리고 변호사의 능력 과 검찰의 기소 편향의 요인들을 통제한 뒤에도 거 의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본 연구는 규모 가설과 대륙법 가설 모두 데이터에 의해 지지된다는 점을 보였다. 이런 맥락 에서 본 연구가 주목한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은 재 벌(총수)에 대한 실형 판결이 가져올 경제 전반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지배주주의 자기거래에 대한 미흡한 형사법적 규율의 산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를 선행 연구와 관련지어 서술하고 제 Ⅲ장에서는 연구를 위해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축하 였는지 설명하고 제Ⅳ장에서는 주요 변수와 이들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할 것이다. 제Ⅴ장에서는 회귀식 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제Ⅵ장에서는 법원의 재벌 편향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볼 것

“
**이 연구는 기업집단과 관련된
 기업인 범죄자가
 일반 범죄자에 비해 양형에 있어
 관대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인 최초의 연구이다.**
 ”

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원이 재벌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온정적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소개 및 본 연구의 의의

법과 금융(law and finance) 연구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해당 국가의 사법체계가 어떤 법적 전통(legal origin)에 속해 있는지 여부가 기업들의 소유구조(ownership structure)와 자본시장(financial markets)의 발전 정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해 왔다(López de Silanes et al.(1998); Porta et al.(1999); Demirgüç-Kunt and Maksimovic (1998); Rajan and Zingales(1998); Beck, Demirgüç-Kunt and Levine(2003)).

이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López de Silanes et al.(1999, 2000); Djankov et al.(2008))에 따르면 여러 요인 중 특히 자기거래(self dealing)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 따라 아주 상이하며 대륙법계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법계는 자기거래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몇몇 연구들은(Khanna and Palepu(2000); Mock(2007)) 재벌과 같은 형태의 기업집단이 주

된 기업조직 형태로 존재할 경우, 내부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소수주주를 착취(expropriate)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보였다.

단 이러한 연구들은 데이터의 제약상 몇몇 사례(Johnson et al.(2000))를 분석하거나 가상적인 자기거래사례(hypothetical self-dealing)를 상정하고 대륙법과 보통법 체계하에서 이러한 거래가 사전적과 사후적으로 각각 어떻게 규율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쳤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민사법(주로 회사법이나 증권거래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실제 사례를 중심에 놓고 분석할 뿐 아니라 기존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온 형사법의 문제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 본 연구는 기업집단과 관련된 기업인 범죄자가 일반 범죄자에 비해 양형에 있어 관대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인 최초의 연구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법과 금융 문헌에서 제기되었으나 풀리지 않았던 퍼즐(Djankov et al.(2008))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형사·행정법적 제재의 강도와 자본시장의 발전과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통념에 반하는 결과들을 내어놓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주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명목상의 법률 규정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I. 데이터셋(Dataset)에 대한 설명

본 논문을 위해 필자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252명의 기업인 범죄자에 대한 피고인별 자료(defendant-level data)를 구축하였다.

본고의 분석대상이 된 기업인 범죄는 지배주주와 기업 임원들에 의한 경제범죄 중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 것으로 실정법상으로는 대부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⁴⁾ 상의 횡령·배임 및 사기 사건에 해당한다. 단, 이득액이 5억원 미만으로 형법상의 횡령·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처럼 기소가 된 거래 대상 주식이 비상장인 관계로 이득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검사가 특경가법상의 횡령·배임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형법상의 횡령·배임죄가 인정된 경우 역시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최고경영자(CEO)나 이사처럼 기업의 고위에 있는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태도를 분석하는 것이니만큼 임원이 아닌 부장급의 중간 간부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셋을 구축한 결과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법원(1심과 항소심 법원만 포함, 대법원 판결 제외)에서 심리한 삼성, 현대차, SK, 대우 등 재벌들의 경제범죄는 거의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비재벌 사건의 경우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데이터셋에 포함된 범죄들을 피고인이 그 범죄

“
본고의 분석대상이 된 기업인 범죄는 지배주주와 기업 임원들에 의한 경제범죄 중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 것으로 실정법상으로는 대부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횡령·배임 및 사기 사건에 해당한다.
”

를 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1993년부터 2006년까지 23년 동안 발생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표 1> 참고).

<표 1> 연도별 범죄 발생 건수

(단위: 건, %)

| 연도 | 범죄 건수 | 비율 |
|-------------|-------|-----|
| before 1993 | 15 | 2 |
| 1994 | 34 | 4 |
| 1995 | 54 | 6 |
| 1996 | 114 | 13 |
| 1997 | 136 | 15 |
| 1998 | 118 | 13 |
| 1999 | 92 | 10 |
| 2000 | 92 | 10 |
| 2001 | 57 | 6 |
| 2002 | 72 | 8 |
| 2003 | 55 | 6 |
| 2004 | 43 | 5 |
| 2005 | 23 | 3 |
| 2006 | 1 | 0 |
| Total | 906 | 100 |

4)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3조,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범죄 유형별로 보면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횡령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사건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법률과 「특경가법」상
 사기죄가 경합된 것이다.**
 ”

범죄 유형별로 보면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횡령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사건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과 「특경가법」상 사기죄가 경합된 것(분식회계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범죄유형들은 광의의 자기거래(self-dealing)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지배주주나 임원이 회사의 자산을 자기에게 이전함으로써 부를 축적한 것(주로 횡령)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재벌총수가 거래의 상대방으로 계열사와 부당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협의의 자기거래), 마지막 유형으로 한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그룹 전체의 지배권이 유지되어 총수 일가가 이득을 보는 경우(계열사 간 내부 거래)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협의의 자기거래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구별될 수 있다. 협의의 자기거래는 거래 일방이 지배주주로, 이들은 위법적인 자기거래의 직접적 수혜자(direct beneficiary)이다. 반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거래의 당사자는 동일 그룹내부에서의 계열사들로 지배주주는 이 거래를 통해 지배권의 유지라는 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데이터셋에 포함된 실제 협의의 자기거래 사례들은 (1) 지배주주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시장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2) 회사가 지배주주에게 염가로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지배주주가 회사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받는 경우이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실제 사례로는 (1) 주력 계열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사줌으로써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는 경우 (2) 특정 계열사가 다른 부실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구축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기업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의 3가지 자료에 의존하였다.

먼저 기업범죄자에 대한 명단을 만들기 위해 언론보도에 의존하였다.⁵⁾ 언론기사는 데이터 구축에 있어 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언론보도는 빠른 시간 내에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로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252명의 판결문을 입수,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일일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정보의 경우 로앤비 법조인 정보를 이용하였다.

5) 물론 이는 조사대상 선정상의 편의(bias)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은 회사의 손해액이 일반 횡령·배임죄에 비하여 크고 해당 기업들이 국민경제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기업일 것이라는 점에서, 본 보고서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 고위층'이 저지른 경제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다.

IV.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과 기초 통계량

1. 주요 변수

(1) 종속변수(dependant variable)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종속변수는 유죄판결 시 법원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가 여부이다(변수 Imprisonment).

즉 본 연구에서는 무죄판결은 애초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 혹자는 양형이 아니라 유·무죄 여부가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을 포착하기에 더 좋지 않은가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유·무죄 판결보다 유죄선고 시 법원에 의한 집행유예·실형 결정을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특히 미국과 달리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율이 대단히 낮다는 점이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범죄자가 복수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현실하에서 일부 무죄가 아닌 전부 무죄의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따라서 무죄판결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을 때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관찰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에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은,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이 붙고 그 이행 여부에 따라 형 집행의 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미국식의 보호관찰(probation)과 달리, 피고인에게 특별한 행동의 제약이 부가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취소율도 매우 낮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하여 다시 CEO로

“
본 연구의 목적이 법원의 판결에 내재된 재벌 편향성을 감지하는 것이라면 유·무죄 판결보다는 양형의 선택을 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

복귀한 여러 사례들이 말해주듯 집행유예 판결은 전직 CEO가 기업으로 돌아가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집행유예는 사실상의 무죄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법원의 판결에 내재된 재벌 편향성을 감지하는 것이라면 유·무죄판결보다는 양형의 선택을 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즉, 사법부 내에 재벌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이것이 판결에 반영된다고 하자. 그러나 이것만으로 판사가 유죄인 피고인을 무죄로 석방시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유·무죄 여부는 검사에 의해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사안이다. 따라서 충분한 법률적 근거가 없이 사법부의 편향성에 의해 주도된 무죄판결은 그만큼 상급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양형의 경우는 다르다. 전통적으로 형량은 100% 판사의 재량이라는 시각이 팽배⁶⁾하였고 검찰의 입장에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무죄만큼 치열하게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의 재벌 편향이 판결에 드러난다면 이는 유무죄 판단보다는 양형에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집행유예 판결에 집중될 것이다.

6) 특히 이 시기에는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제정하기 전 시기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실형 선고 시의
 형량과 구속기소 여부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법원이 재벌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실형 선고 시의 형량(변수 Length of Imprisonment)과 구속기소 여부(변수 Pre-trial Detention)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법원이 재벌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설명변수

① 재벌(변수 Chaebol): 피고인이 재벌 기업과 연결되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된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정의된 대규모 기업집단 여부로 판단하였다. 재판 당시 부도 등의 이유로 이미 해체된 기업집단일지라도 범죄 시 그 회사가 재벌의 계열사였다면 재벌로 간주하였다. 변수 Chaebol은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재벌이면 1, 아니면 0 값을 갖는다.

② 지배주주(변수 Controlling Shareholder):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먼저 동일인을 전제한 후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동일인이 개인인 경우 지배주주는 동일인의 직계 혈족이나 인척(흔히 총수 일가)으로 정의될 수 있다. 총수 일가가 아닌

임원이나 CEO의 경우는 전문경영인으로 분류하였다. 단 지배주주 일가가 이사나 상무와 같은 직함을 갖고 있는 경우 전문경영인인 아닌 지배주주로 분류하였다. 변수 Controlling Shareholder 역시 더미 변수로 지배주주면 1, 전문경영인이면 0 값을 갖는다.

③ 범죄 피해액(변수 Amount of Losses): 원칙적으로 손해액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금액을 준거로 사용하였다. 범죄로 인한 피해액을 확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건에 다수의 피고인이 존재하는 경우 피고인 개개인이 피해액 전부에 책임 있는 것으로 보고 회사의 피해를 피고인별 이득액으로 계산하였다. 이 변수는 연속변수로 $\ln(\text{범죄이득액}^7+1)$ 이다.

④ 피해 변제 여부(변수 No Compensation): 경제범죄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범죄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주었는가 여부는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인 중 하나이다. 피해액 변제 여부는 양형사유에 손해를 완전 배상하였다고 서술한 경우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이 변수 역시 더미 변수로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면 0, 변제하지 않았으면 1의 값을 갖는다.

⑤ 변호사의 질: 본 연구에서는 변호사의 질에 대한 대용 변수로 다음의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다. 먼저 가장 단순한 지표로,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수⁸⁾이다(변수 NL).

나머지 두 지표는 변호사 간의 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변수이다. 먼저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의 경우 능력과 경험에 있어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보다 더 우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변호사의 질을 포착하는 두 번째 변수는 피고인별로 선임한 전

7) 단위는 억원이고 억원 이하의 값은 버렸다.
 8) 보다 정확히는 $\ln(\text{변호사 수})$ 이다.

체 변호사 중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⁹⁾들이 차지하는 비율(변수 HPL ratio)로 삼았다.

마지막 변수는 10대 로펌 변호사들을 얼마나 선임했는지 여부이다. 사용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에 있어 10대 로펌과 중소규모 로펌(혹은 단독으로 개업한 변호사) 간에는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이 재판결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변수 Top10 ratio는 피고인별로 선임한 전체 변호사 중 10대 로펌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3) 회귀방정식

본 논문에서 사용한 기본적 회귀방정식은 로짓(logit)모델을 이용하여 유죄선고 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판사가 실형을 내릴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내릴지 분석하였다.

$$\begin{aligned} \text{Imprisonment} = & a + b_1 \text{Chaebol} + \\ & b_2 \text{Controlling Shareholder} + \\ & b_3 \text{No Compensation} + b_4 \text{Amount of Losses} + e, \\ & e \text{는 오차항} \end{aligned}$$

두 번째 회귀방정식은 실형 선고 시 판사가 징역형의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인데 이는 토빗(tobit)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begin{aligned} \text{Length of Imprisonment} = & a + b_1 \text{Chaebol} + \\ & b_2 \text{Controlling Shareholder} + \\ & b_3 \text{No Compensation} + b_4 \text{Amount of Losses} + e, \\ & e \text{는 오차항} \end{aligned}$$

마지막 회귀방정식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구속되었는지 여부이고 이 역시 로짓모델을 통해 추정하였다.

$$\begin{aligned} \text{Pre-trial Detention} = & a + b_1 \text{Chaebol} + \\ & b_2 \text{Controlling Shareholder} + \\ & b_4 \text{Amount of Losses} + e, \text{ } e \text{는 오차항} \end{aligned}$$

위 회귀방정식에서 주목하는 계수는 b_1 이다. 만약 법원이 재벌에 대해 어떠한 편향성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b_1 은 0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벌이라는 것은 별도의 양형요인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연관된 변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르면 b_1 의 부호는 음수가 될 것이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재벌일수록 유죄선고 시 실형 가능성이 하락(다른 말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승)하거나 실형을 받더라도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4) 기초 통계량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대상 피고인의 총 숫자는 252명이다. 이 중 1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143명¹⁰⁾이고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총 109명이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항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이 경우 각기 다른 피고인으로 간주하였다.

9)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정확한 정의는 판사의 경우 지법 부장판사 이상의 경력, 검사의 경우 지검 부장검사 이상의 경력을 갖고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변호사를 의미한다.

10) 이 중 42명은 실형, 101명은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42명의 피고인 중 39명이 항소, 101명 중 57명 항소(이 경우는 대부분 검찰측의 판결 불복에 의해)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 변수 | 관측치 | 더미변수인 경우 1의 값을 갖는 경우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Imprisonment | 252 | 66 | .26 | .44 | 0 | 1 |
| Pre-trial Detention | 147 | 66 | .44 | .49 | 0 | 1 |
| Length of Imprisonment(개월) | 252 | | 32.8 | 13.4 | 0 | 96 |
| Chaebol | 252 | 144 | .57 | .49 | 0 | 1 |
| Controlling shareholder | 252 | 125 | .49 | .50 | 0 | 1 |
| Amount of Losses | 252 | | 5.19 | 2.76 | .69 | 14.85 |
| No compensation | 252 | 211 | .83 | .36 | 0 | 1 |
| NL | 252 | | 4.1 | 3.2 | 1 | 18 |
| LnNL | 252 | | 1.13 | .78 | 0 | 2.89 |
| HPL | 252 | | 1.8 | .15 | 0 | 9 |
| HPL ratio | 252 | | .48 | .32 | 0 | 1 |
| Top10 | 252 | | 2.4 | 3.2 | 0 | 16 |
| Top10 ratio | 252 | | .47 | .46 | 0 | 1 |

주: 1. 변수 NL은 피고인 1인당 선임한 변호사의 수
 2. 변수 HPL은 피고인 1인당 선임한 전직 고위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수. '전직 고위 판검사'의 정의는 각주 11을 참고하라
 3. Top10은 피고인 1인당 선임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의 수

선고 연도별 자료를 보면 판결이 비교적 연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2003~2005년에 판결이 몰려 있는 것은 ([그림 1] 참고) 공적자금비리 합동 단속반이 IMF 외환위기 직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영진들에 대한 수사의 결과물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설명한다.

전체 피고인 중 재벌과 관련된 피고인은 56%, 비재벌 피고인은 44%이다. 재벌 총수 및 그 일가는 약 23%, 재벌계열사 전문경영인은 약 32%이다(자세한 내용은 〈표 3〉 참고).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중 25%만이 유죄선고시 실형을,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재벌 피고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약 20%

이고 비재벌 피고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약 32%이다. 이러한 수치의 차이를 바로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의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 차이가 두 피고인 집단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능력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2]에서 보이듯 재벌과 비재벌 피고인 간에는 상당한 수준의 변호사의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경우는 평균 형량은 약 45개월, 약 4년이 채 되지 못했다. 최소 18개월에서 최대 96개월까지 형량을 선고받았다. 마지막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의 평균은 1,780억원이고, 중위값은 219억원, 최댓값은 2조 1,788억원이었다.¹¹⁾

11)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사례는, 그 피해액이 너무 커서 전체 평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본 통계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3〉 데이터셋상의 피고인 분류

Panel A: 재벌계열사 소속 여부와 회사 내 지위에 따른 분류 (N=252)

| | 재벌 | 비재벌 | 전체 |
|---------|-----|-----|-----|
| 지배주주 일가 | 59 | 66 | 125 |
| 전문경영인 | 81 | 46 | 127 |
| 전체 | 140 | 112 | 252 |

Panel B: 재벌계열사 소속 여부와 회사 내 지위에 따른 분류: 1심 (N=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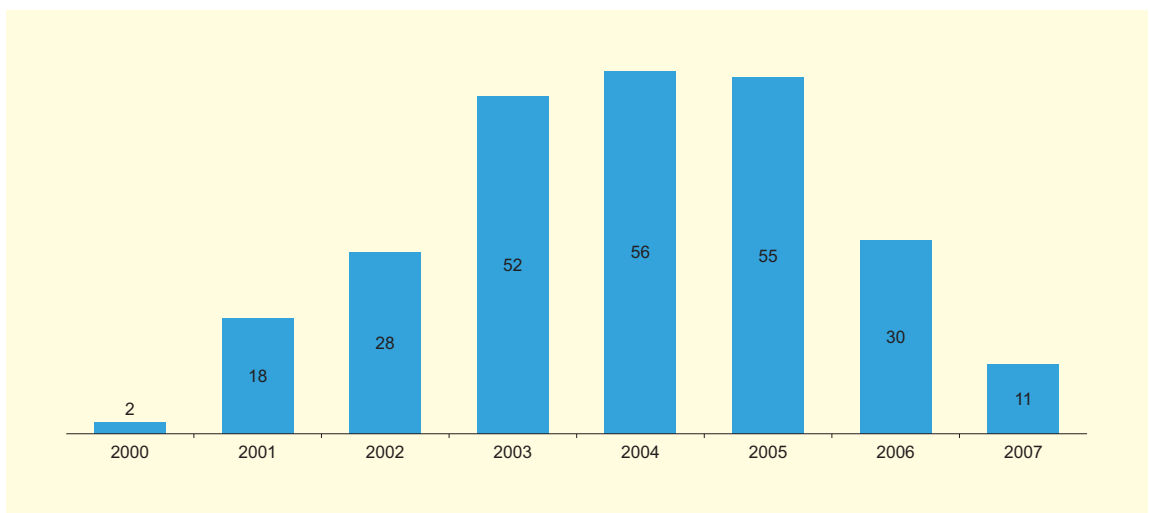
| | 재벌 | 비재벌 | 전체 |
|---------|----|-----|-----|
| 지배주주 일가 | 32 | 32 | 64 |
| 전문경영인 | 53 | 26 | 79 |
| 전체 | 85 | 58 | 143 |

Panel C: 재벌계열사 소속 여부와 회사 내 지위에 따른 분류: 항소심 (N=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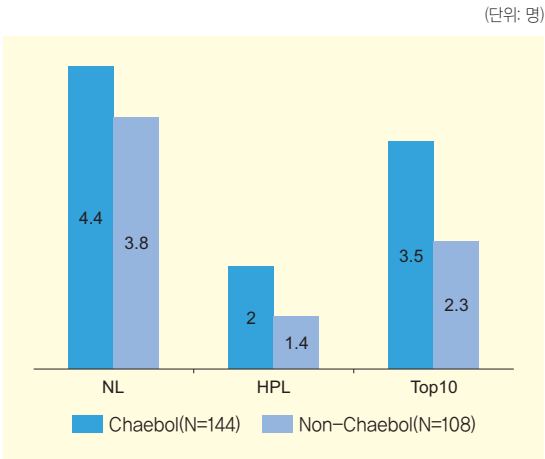
| | 재벌 | 비재벌 | 전체 |
|---------|----|-----|-----|
| 지배주주 일가 | 27 | 34 | 61 |
| 전문경영인 | 28 | 20 | 48 |
| 전체 | 55 | 54 | 109 |

[그림 1] 판결의 연도별 추이

(단위: 건수)



[그림 2] 재벌과 비재벌 피고인 1인당 변호사 숫자의 차이



주: 1. 변수 NL은 피고인 1인당 선임한 변호사의 수
 2. 변수 HPL은 피고인 1인당 선임한 전직 고위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수. '전직 고위 판검사'의 정의는 각주 11을 참고하라
 3. Top10은 피고인 1인당 선임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의 수

V. 분석결과

1. 기본 결과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형사사법시스템 전체에서 강한 재벌 편향성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구속 결정 여부(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양형(선고 및 형량 확정단계) 전반에 재벌 피고인이 일반 피고인에 비해 관대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

즉, 범죄자가 총수 일가나 전문경영인을 가리지 않고 재벌 계열사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모든 조건을 통제하고 난 뒤에도 재벌 피고인의 경우 비재벌 피고인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은 약 10%p, 구속 기소될 가능성은 약 27%p 정도 낮았다. 실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재벌 피고인이 비재벌 피고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19개월 정

도 덜 복역하였다(〈표 4〉 참고).

또한 이러한 결과는 구속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예컨대 피고인이 지배주주인지, 전문경영인지 여부, 범죄피해액의 크기,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했는지 여부)을 통제하더라도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이다.

〈표 4〉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에 대한 기본 분석 I

| | (1) Imprisonment | (2) Pre-trial Detention | (3) Length of Imprisonment |
|----------------------------|---------------------|-------------------------------|----------------------------------|
| Chaebol | -0.47** (.23) | -0.85*** (.24) | -19.5** (8.1) |
| Controlling Shareholder | 1.59*** (.23) | 1.12*** (.24) | 63.7*** (8.5) |
| No Compensation | .77** (.35) | | 33.0** (13.5) |
| Amount of Losses | .18*** (.05) | .11** (.04) | 7.5*** (1.8) |
| 심급 고정효과 | Y | N | Y |
| 상수 | -2.82*** (.96) | -.72* (.20) | -107.4*** (21.3) |
| 관측치 | 252 | 147 | 252 |

주: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표 5〉에서는 변수 재벌과 지배주주의 교차항을 넣어 재벌의 지배주주가 어떻게 처벌받는지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재벌범죄에 있어 지배주주 일가가 전문경영인에 비해 집행유예나 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다거나 형량이 올라가는 현상은 찾지 못했다. 즉 재벌의 경우 총수 일가나 전문경영인을 가릴 것 없이 관대하게 처벌받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배주주 일가가 전문경영인에 비해 중하게 처벌받는 현상은 비재벌 피고인 그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도 주의를 요한다. 실제 비

재벌 기업의 범죄에 있어 지배주주 일가가 중하게 처벌받는다라는 것은 다분히 상대적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지배주주 일가가 전문경영인에 비해 더 중하게 처벌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경영인이 너무나 관대하게 처벌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실제 본 연구의 샘플 안에서 비재벌 기업 전문경영인의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표 5〉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에 대한 기본 분석 II
-교차항 추가

| | (1) Imprisonment | (2) Pre-trial Detention | (3) Length of Imprisonment |
|------------------------------------|---------------------|-------------------------------|----------------------------------|
| Chaebol | -.66* (.40) | -.93*** (.32) | -28.9 (18.1) |
| Chaebol×Controlling Shareholder | .26 (.47) | .16 (.47) | 12.4 (19.2) |
| Controlling Shareholder | 1.45*** (.33) | 1.03*** (.35) | 57.4*** (13.2) |
| No Compensation | .78** (.32) | | 33.1** (13.5) |
| Amount of Losses | .18*** (.05) | .11** (.04) | 7.4*** (1.8) |
| 심급 고정효과 | Y | N | Y |
| 상수 | -2.71*** (.44) | -.66* (.32) | -106.7*** (18.3) |
| 관측치 | 252 | 147 | 252 |

주: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2. 강건성 분석 I : 변호사 간 능력 차이 고려

강건성 분석의 일환으로 본 절에서는 변호사의 능력과 관련된 변수를 넣고 회귀식을 돌려보았다. 〈표 6〉에서 〈표 8〉까지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

데, 전반적으로 앞 절에서 제시된 결론들이 대부분 유지됨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집단을 대리하는 변호인 간에 이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질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재벌 피고인들이 비재벌 피고인에 비해 관대한 사법처리를 받는다는 결론에는 큰 변화가 없다.¹²⁾ 이는 법원의 재벌에 대한 경미한 처벌은 재벌 피고인이 비재벌 피고인에 비해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만으로는 전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강건성 분석(집행유예 선고 여부) :
변호사 간 능력의 차이

| Dependent Variable= Imprisonment | (1) | (2) | (3) |
|-------------------------------------|-------------------|-------------------|-------------------|
| Chaebol | -.50** (.22) | -.35 (.23) | -.47** (.23) |
| Controlling Shareholder | 1.52*** (.24) | 1.64*** (.25) | 1.62*** (.24) |
| No Compensation | -.85** (.36) | .70* (.36) | .85** (.35) |
| Amount of Losses | .18*** (.05) | .20*** (.06) | .19*** (.05) |
| LnNL | .18 (.14) | | |
| Top 10 ratio | | -.48* (.28) | |
| HPL ratio | | | -.63** (.31) |
| 심급고정효과 | Y | Y | Y |
| 상수 | -3.02*** (.49) | -2.71*** (.46) | -2.65*** (.46) |
| 관측치 | 252 | 252 | 252 |

주: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12) 유일하게 결론이 바뀌는 부분이 실형 선고 여부에 대해 10대 로펌 변호사 비율을 통제하였더니 재벌 효과가 사라졌다.

“
 흑자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가
 검찰의 기소 단계의 편향성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의 기소 시스템이 검찰에 의한
 기소 독점주의와 편의주의라는 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표 7〉 강건성 분석(실형 선고 시 형량) :
 변호사 간 능력의 차이

| Dependent variable= Length of Imprisonment | (1) | (2) | (3) |
|---|---------------------|---------------------|---------------------|
| Chaebol | -20.5*** (7.8) | -14.6* (8.0) | -19.1** (8.0) |
| Controlling Shareholder | 60.5*** (8.6) | 64.6*** (8.6) | 63.3*** (8.6) |
| No Compensation | 35.6*** (13.7) | 29.7** (13.7) | 34.9*** (13.4) |
| Amount of Losses | 7.4*** (1.7) | 8.0*** (2.0) | 7.9*** (1.7) |
| LnNL | 7.3 (4.8) | | |
| Top 10 ratio | | -17.7* (9.4) | |
| HPL ratio | | | -23.7** (10.3) |
| 심급고정효과 | Y | Y | Y |
| 상수 | -119.3*** (17.8) | -106.9*** (16.1) | -103.8*** (16.8) |
| 관측치 | 252 | 252 | 252 |
| Sigma | 40.2 | 40.4 | 40.0 |

주: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표 8〉 강건성 분석(구속기소 여부) :
 변호사 간 능력의 차이

| Dependent variable= Pretrial Detention | (1) | (2) | (3) |
|---|------------------|------------------|------------------|
| Chaebol | -.86*** (.24) | -.86*** (.26) | -.88*** (.24) |
| Controlling Shareholder | 1.12*** (.25) | 1.12*** (.24) | 1.15*** (.24) |
| Amount of Losses | .11** (.04) | .11** (.04) | .11** (.04) |
| LnNL | .00 (15) | | |
| Top 10 ratio | . | .02 (.27) | |
| HPLratio | | | .46 (.36) |
| 상수 | -.72** (.33) | -.72** (.30) | -.94** (.36) |
| 관측치 | 147 | 147 | 147 |

주: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3. 강건성 분석Ⅱ: 기소 편향의 문제

흑자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가 검찰의 기소 단계의 편향성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의 기소 시스템이 검찰에 의한 기소 독점주의와 편의주의라는 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검찰의 기소 편향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반된 논리가 가능하다. 첫 번째 주장은 검찰이 일반 경제범죄와 비교하여 재벌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기소하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일반 사건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건이 재벌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리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검찰의 실정법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기소 독점을 견제한다

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검찰이 재벌 사건을 여간해서는 법정으로 끌고 가려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재벌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에 비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재벌 총수 일가들의 형사재판에는 전관변호사와 유수의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이로 인해 검찰로서는 유죄 입증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일반 사건에 비해 엄격한 잣대를 갖고 기소할 사건의 유죄 가능성을 따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재벌 수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꼽을 수 있다. 실제 재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것이 길어질수록 수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사안들이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만약 첫 번째 주장이 설득력 있다면 법원이 재벌 관련 피고인에게 관대한 양형을 선고하는 것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때문이지 법원의 탓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그다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기소를 담당하는 주 검찰청 총장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검사들이 거약과 싸운다는 대중적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이 이후의 본인들의 경력관리에 있어 그다지 불리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 검찰의 경우 현재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재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정치적 연줄 등으로 인해 수사과 기소로 가는 길에 여러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수사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검찰은 오랜 기간 동안 사건을 묵히고 있다가 결국 내부고발이 있는

“
**검찰이 기소하는 재벌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법리적으로 유죄 가능성이
 아주 명백한 사건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

뒤에야 마지못해 수사를 시작하였고 결국 기존 검찰조직이 아닌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한마디로 한국과 미국의 검사는 선출 방식도 다르고 당연히 인센티브 구조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하는 재벌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법리적으로 유죄 가능성이 아주 명백한 사건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재벌 사건에 있어 검찰의 기소 편향성(prosecutorial bias)이 존재한다면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법원의 재벌 편향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추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재벌 사건의 경우 일반 기업범죄에 비해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사건만이 기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비재벌 기업범죄에 비해 현저하게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원의 재벌 편향성의 정도가 실제 편향성의 최저치(a lower bound)임을 추론하게 해준다.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관찰되는 재벌과 비재벌 피고인 간의 양형 격차가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불평등한 행사의 결과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데이터셋의 재벌 사건들 중에 애초 위법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여론

“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 의해
 기소된 사건들은
 그렇지 않은 사건에 비해 법원에 의해
 관대하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벌이 비재벌에 비해
 약하게 처벌받는 효과는 남아있다.**
 ”

에 떠밀리거나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 주도된 사례들이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경우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 의해 기소된 사례들이다. IMF 외환위기 직후 언론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었다. 따라서 정부는 감사원, 검찰, 국세청, 금감원과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 투입을 유발한 부실기업주,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의 비리혐의를 수사하고 이들을 기소하는데 주력했다.

이렇게 기소된 기업인들 중에는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자금을 은닉한 악의적인 경우도 있으나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본의 아니게 기업의 부도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어 기소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기소된 사례들을 더미변수(변수 Task Force)를 통해 포착하고 이를 기본적인 회귀방정식에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가 <표 9>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법원이 재벌을 관대하게 처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 의해 기소된 사건들은 그렇지 않은 사건에 비해 법원에 의해 관대하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재벌이 비재벌에 비해 약하게 처벌받는 효과는 남아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벌 편향성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법원의 양형 조정만으로 전부 다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보여준다.

<표 9> 강건성 분석 : 검찰의 기소 편의

| Dependent Variable | (1) Imprisonment | (2) Length of Imprisonment | (3) Pre-trial Detention 7 |
|-------------------------|------------------|----------------------------|---------------------------|
| Chaebol | -.43* (.23) | -17.2** (7.8) | -.88*** (.24) |
| Controlling Shareholder | 1.74*** (.27) | 66.2*** (10.3) | 1.13*** (.24) |
| No Compensation | .98*** (.34) | 38.6*** (12.3) | |
| Amount of Losses | .27*** (.06) | 10.2*** (2.0) | .13*** (.05) |
| Task Force | -.84*** (.28) | -29.2*** (9.3) | -.40 (26) |
| 심급고정효과 | Y | Y | N |
| Constant | -3.27*** (.47) | -6.19*** (1.32) | -.66** (.31) |
| Sigma | | 39.1 | |
| 관측치 | 252 | 252 | 147 |

주: 1.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2. 변수 Task Force는 더미변수로 피고인이 공적자금 비리 합동단속반에 의해 기소되었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VI. 사법부 재벌 편향성의 원천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먼저 검토하려는 것은 ‘규모 가설’이다. 규모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목도한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은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사법부적 변용, 즉 대마불옥(大馬不獄)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벌을 10대 재벌과 10대 이하 재벌로 나누어 각각의 효과

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재벌효과는 10대 재벌일수록 다른 재벌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같은 재벌 피고인일지라도 피고인이 10대 재벌에 속해 있을 경우 비재벌 범죄자에 비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11.1%p 올라가는 반면, 10대 이하 재벌일 경우 8.6%p만 올라간다(자세한 내용은 <표 9> 참고).

이러한 결과는 10대 재벌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대 이하 재벌과 비교하여 훨씬 크고 이에 비례하여 이들에 대한 실형 판결이 불러올 경제 사회적 파장 역시 훨씬 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골드만삭스나 다른 월가의 거대 금융기관에 대해 어떠한 형사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이들의 논리도 유사했다. 에릭 홀더(Eric Holders) 법무부장관의 의회 청문회 발언이 그 예이다.

“나는 몇몇 금융기관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들을 기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심히 우려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금융기관을 기소한다는 움직임을 보았을 때 그것은 우리의 국가경제에 해가 될 것이고(아마도 세계경제 전체), 그 부정적인 효과는 아마도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규모에 비례할 것이다”¹³⁾

이러한 논리는 한국의 재벌들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먼저, 재벌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법원으로서의 재벌 범죄자들에 대한 실형판

“
**재벌효과는 10대 재벌일수록
 다른 재벌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같은 재벌 피고인일지라도
 피고인이 10대 재벌에 속해 있을 경우
 비재벌 범죄자에 비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11.1%p 올라가는 반면,
 10대 이하 재벌일 경우
 8.6%p만 올라간다.**
 ”

결이 경제에 줄 부담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월가 금융기관과 재벌그룹 간의 구조적 유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뱅크런(bank-run)에 직면한 금융기관과 복잡한 순환 출자로 유지되는 재벌 구조는 그 부분의 위기가 다른 분야로 빠르게 번져나갈 수 있고 결국 경제 전반의 위험(systemic risk)으로 번지는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기구나 법원 모두 평상시가 아닌 위기 상황에서 판단에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1997년 당시 한국이 직면한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 월가의 금융위기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이나 사법부 모두 자신의 결정이 미칠 파장을 쉽사리 예측할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마불옥’의 문제는 거대한 규모의 기업을 가진 경제 어디에서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은 이것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필요한 가설이 앞서 설명한 ‘대륙법 가

13) Jason M. Breslow, “Eric Holder Backtracks Remarks on “Too Big To Jail”,” May 16, 2013. <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business-economy-financial-crisis/untouchables/eric-holder-backtracks-remarks-on-too-big-to-jail/>

설'이다. 한국의 사법부는 다른 형태의 자기거래와 다르게 재벌 그룹을 살리기 위한 명분으로 진행되는 '내부거래'에 대해 그룹 전체의 이익 측면에서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법성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서, 2004년 고합의 장치혁 회장 항소심 판결의 감형사유를 보자. 법원은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은 사건에 대해 판단하면서 "편취한 금원과 이익 거의 모두 회사의 기존부채 변제나 기업운동을 위해 쓰여 졌고, 피고인의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은닉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항변(이를 '내부거래 항변'이라고 부르겠다)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과연 이것이 일부 문제인지 아니면 재벌과 관련된 사건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지를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 우리는 법원 판결문의 양형 사유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내부거래 항변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를 명시적으로 감형사유로 인정한 것을

내부거래 변수(변수 Ingroup Transaction)로 만들어 기존의 회귀방정식에 넣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일단 내부거래 자체는 재벌 피고인의 실행 가능성을 일반 피고인에 비해 약 10%p 정도 낮춘다. 더 나아가 내부거래 변수는 재벌 효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실제 내부거래 변수를 넣었을 때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와 비교하여 재벌 피고인의 경우 실행 가능성이 10.2%에서 8.4%로 줄어든다.

〈표 10〉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의 근거에 대한 회귀분석

| 변수 | Imprisonment | | | | Length of Imprisonment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Chaebol | -.47** (.22) | | | -.40* (.23) | -20.5*** (7.8) | | | -11.1 (7.8) |
| Top_10 | | -.58* (.39) | | | | -23.5** (9.9) | | |
| Less Top_10 | | -.41* (.25) | | | | -18.8** (8.8) | | |
| Ingroup Transaction | | | -.51** (.22) | -.44* (.22) | | | -20.8*** (7.2) | -18.8** (7.3) |
| 관측치 | 252 | 252 | 252 | 252 | 252 | 252 | 252 | 252 |

주: 1.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2. 변수 Top_10은 더미변수로 피고인이 소속한 계열사가 재벌 중에 10대 재벌 소속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변수 Less Top_10은 더미변수로 피고인이 소속한 계열사가 재벌 중에 10대 이하 재벌(즉 예컨대 재계순위 11위 재벌)이면 1, 0의 값을 갖는다. 10대 재벌 여부는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위(자산 규모 기준)에 해당 재벌이 단 한 번이라도 10위 안에 들었던 적이 있는지 여부를 갖고 판단하였다.
3. 변수 Ingroup Transaction은 더미변수로 법원이 내부거래 항변을 감경사유로 받아들인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4. 앞서 분석에서 포함된 여러 변수들은 회귀분석식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본 표에 보고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법원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온정적 태도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법적 전통을 갖고 있는 대륙법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López de Silanes et al.(2000))에서 이러한 경향은 여러 가지 예를 통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외형상 경영상의 목적을 갖는 거래의 형태로 위장된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주의 착취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흔히 이사의 (충실)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거래의 상대방인) 지배주주가 **동일 그룹 내의 다른 회사일 때**는 더욱 그렇다.” (강조는 필자)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은 재벌의 크기에 대한 법원의 우려와 계열사 내부거래에 대한 소극적 규율의 결과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VII.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대마불옥(大馬不獄)은 존재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벌 피고인은 비재벌 피고인에 비해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향은 재벌의 규모가 클수록 보다 강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법원의 재벌 편(bias)는 한국사회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에 대한 사법적 고려의 산물이자 법원이 지배주

“
**법원의 재벌 피고인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IMF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비상상황에서의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한 사법적 자제라는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

주의 시익 추구를 위해 진행되는 내부거래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의 실패의 결과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렇다면 법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벌범죄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지속할 것인가? 이는 답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실제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 이후인 2008년 이후 재벌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재계 3위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 실형이 확정되어 감옥에서 복역하였다. 이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반면에 한화 김승연 회장의 경우는 1심·2심에서의 실형 선고 후 파기 환송심에서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는 사법부가 과거의 판결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의 재벌 피고인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IMF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비상상황에서의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한 사법적 자제(judicial forbearance)라는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가 종료하고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와 같은 고려가 작용할 여지는 크게 줄어든다. SK나 태광의 사례에서 보여진 법원의 태도는 이러한 상황 인식의 변화의 자연스러운 귀결인 셈이다.

“
**범죄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행태로 발생하는 경우,
 여전히 한국의 법원은 소수 주주와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그룹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위법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관행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범죄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행태로 발생하는 경우, 여전히 한국의 법원은 소수 주주와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그룹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위법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관행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한화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과거의 관행을 따른 이유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면 재벌에 대한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여부는 상당 부분 법원이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소수 주주의 보호와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규율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실현하려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에서 얘기되는 ‘Too Big to Jail’의 문제와 본 연구에서 다룬 현상은 일견 유사해보이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의 ‘Too Big to Jail’의 문제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금융위기라는 이례적인 사례에서 행해진 일종의 사법적 자제인 동시에 이는 본질적으로 검찰의 문제였다. 만약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여 법원이 최종 사법적 판결을 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과거 Enron이나 Worldcom 사례에서 보듯 한국 법원보다는 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밝혀낸 한국 법원의 ‘대마불옥’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법원의 재벌 내부거래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례와 다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경제범죄 중에서도 조세포탈과 같은 세법 범죄에 대해서 유사한 판결 성향이 나타나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데이터셋을 확장하여 2008년 양형기준 제정 이후 과연 법원이 기업범죄의 양형에 대해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¹⁴⁾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유 이외에 전관예우¹⁵⁾나 재벌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법원이 재벌 피고인과 비재벌 피고인을 다르게 처우한 것은 아닌지도 후속 작업을 통해 충분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KIPF**

〈참고문헌〉

경제개혁연대, 「법원의 화이트칼러 양형 분석」, 『경제개혁리포트』, 2007-8호, 2007.
 경제개혁연대, 「화이트칼러 범죄 판결의 양형 사유 분석」, 『경제개혁리포트』, 2007-9호, 2007.
 Beck, T., Demircug-Kunt, A and Levine, R., “Law and Finance: Why Does Legal

14) 현재 이 작업은 필자에 의해 진행 중이고 조만간 분석 결과가 나올 것이다
 15)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 연구는 Choi (2015) 참고

- Origin Matter?,"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1(4), 2003, pp. 653-675.
- Choi, Hansoo, Hyoung-Goo Kang, Changmin Lee, "What Constitutes Too Big To Jail," working paper, 2014.
- Choi HS, Kang HG, Lee CM, Kim W. "Too Big to Jail? Company Status and Judicial Bias in an Emerging Market,"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Forthcoming, 2015.
- Choi, Hansoo, "Quantifying the Impact of the Revolving Door: Evidence from South Korea's Judiciary(May 29, 2015)," Edmond J. Safra Working Paper No. 65, 2015.
- Demirgüç-Kunt and Maksimovic, "Law, Finance, and Firm Growth," *The Journal of Finance*, 53, 1998, pp. 2107-2137.
- Djankov, S., La Porta, R., Lopez-de-Silanes, F., and Shleifer, A., "The Regulation of Entr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1), 2002, pp. 1-37.
- _____, "The law and economics of self-deal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8(3), 2008, pp. 430-465.
- Lopez-de-Silanes, F., La Porta, R., and Shleifer, A.,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e*, 54(2), 1999, pp. 471-517.
- Johnson, S., La Porta, R., Lopez-de-Silanes, F., and Shleifer, A., "Tunneling," *American Economic Review*,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90(2), 2000, pp. 22-27.
- Khanna, T., and Palepu, K., "Is group affiliation profitable in emerging markets? An analysis of diversified Indian business groups," *Journal of Finance*, 55, 2000, pp. 867-891.
- La Porta, R., Lopez-de-Silanes, F., Shleifer, A., and Vishny, R. W., "Legal determinants of external finance," *Journal of Finance*, 52, 1997, pp. 1131-1150.
- _____, "Law and fin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 1998, pp. 1113-1155.
- La Porta, R., Lopez-de-Silanes, F., and Shleifer, A.,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e*, American Finance Association, 54(2), 1999, pp. 471-517.
- Morck, R. K.(Ed.), *A history of corporate governance around the world: Family business groups to professional managers*, University of Chicago, 2007.
- Rajan, R. G., Zingales, L., "Financial dependence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8, 1998, pp. 559-586.
- Strader, J. K., *Understanding White Collar Crime*, Matthew Bender & Co; 2 edition, 2006.
- Weisburd, D., Wheeler, S., Waring, E., and Bode, N., *Crimes of the Middle Classes: White-Collar Offenders in the Federal Courts*, Yale University Press, 1994.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과 건강보험재정관리에 대한 시사점

I. 서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sechoi@kipf.re.kr)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13년 50.9조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진료비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 지출도 2013년 약 4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 지출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도 거의 매년 이어져 와 2015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07%로 인상되었다. 소득세 공제 축소에 따른 연말환급금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정도로 큰 조세 저항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아 보인다.

이렇듯 건강보험 지출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등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비급여항목의 급여화가 추진되었다. 더불어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도 지속되고 있는데 2015년에도 수가가 평균 2.2% 인상되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향후에도 노인 의료비의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적정 수준의 보장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재정위기를 겪어온 남유럽 국가를 포함하여 유럽국가들의 복지개혁은 대부분 연금과 건강보험 부문의 개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현황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요인들을 살펴보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II.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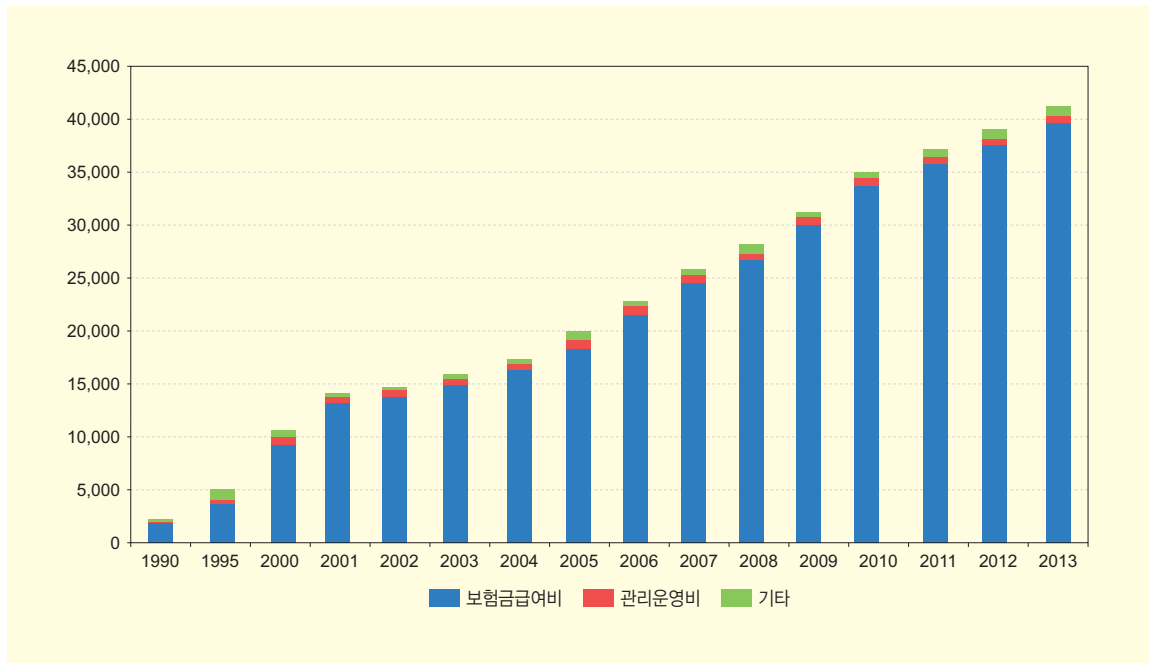
건강보험 지출은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1990년 약 2.2조원에서 2014년에 약 43.9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증가를 보여왔다. 건강보험 지출의 본격적 증가는 의료보험 보험자 조합의 통합과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 급여의 본격적 확대기에 들어선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0년 약 10조원에서 단 1년 만인 2001년 약 31% 증가해 14조원 규모에 이르렀다.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의 본격적 증가와 더불어 건강보험 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보험료에 대

“
건강보험 지출의 본격적 증가는
의료보험 보험자 조합의
통합과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 급여의
본격적 확대기에 들어선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한 국고지원이 법제화되면서, 점차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서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구조화되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3년부터 당기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등 재정상황이 개선되어서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수지도 2014년에는 약 12.8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림 1] 건강보험 지출 추이

(단위: 십억원)



주: 연도 말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건강보험급여 지출의 증가로 인해 피보험자의 보험료율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인상되어 왔다.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2006년 4.48%에서 2015년 6.07%까지 인상되었다. 보험료 수입은

2000년 약 7.3조원에서 2013년 약 39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담배부담금과 국고지원도 2000년 약 1.6조원에서 2013년에는 약 5.8조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1〉 건강보험 수익 추이

(단위: 십억원 %)

| | 계 | 보험료 | 정부지원금 | | | 기타 | |
|------|-------------------|------------------|-----------------|-----------------|--------------|----------------|-----------------|
| | | | 보험재정국고 지원금 | 관리재정국고 지원금 | 담배부담금 | | |
| 1990 | 2,432 (100.0) | 1,884 (77.4) | 364 (15.0) | 246 (10.1) | 118 (4.8) | 0 (0.0) | 185 (7.6) |
| 1995 | 5,614 (100.0) | 3,601 (64.1) | 755 (13.5) | 562 (10.0) | 193 (3.4) | 0 (0.0) | 1,258 (22.4) |
| 2000 | 9,828 (100.0) | 7,229 (73.6) | 1,553 (15.8) | 1,381 (14.1) | 172 (1.7) | 0 (0.0) | 1,046 (10.6) |
| 2001 | 11,928 (100.0) | 8,856 (74.2) | 2,625 (22.0) | 2,467 (20.7) | 158 (1.3) | 0 (0.0) | 447 (3.7) |
| 2002 | 14,305 (100.0) | 10,928 (76.4) | 3,014 (21.1) | 2,445 (17.1) | 130 (0.9) | 439 (3.1) | 364 (2.5) |
| 2003 | 17,467 (100.0) | 13,741 (78.7) | 3,424 (19.6) | 2,643 (15.1) | 136 (0.8) | 645 (3.7) | 302 (1.7) |
| 2004 | 19,408 (100.0) | 15,579 (80.3) | 3,483 (17.9) | 2,716 (14.0) | 140 (0.7) | 626 (3.2) | 347 (1.8) |
| 2005 | 21,091 (100.0) | 16,928 (80.3) | 3,695 (17.5) | 2,643 (12.5) | 127 (0.6) | 925 (4.4) | 469 (2.2) |
| 2006 | 23,263 (100.0) | 18,811 (80.9) | 3,836 (16.5) | 2,757 (11.8) | 113 (0.5) | 966 (4.2) | 616 (2.6) |
| 2007 | 26,050 (100.0) | 21,729 (83.4) | 3,672 (14.1) | 2,704 (10.4) | 0 (0.0) | 968 (3.7) | 649 (2.5) |
| 2008 | 29,787 (100.0) | 24,973 (83.8) | 4,026 (13.5) | 3,002 (10.1) | 0 (0.0) | 1,024 (3.4) | 788 (2.6) |
| 2009 | 31,500 (100.0) | 26,166 (83.1) | 4,683 (14.9) | 3,657 (11.6) | 0 (0.0) | 1,026 (3.3) | 651 (2.1) |
| 2010 | 33,949 (100.0) | 28,458 (83.8) | 4,856 (14.3) | 3,793 (11.2) | 0 (0.0) | 1,063 (3.1) | 635 (1.9) |
| 2011 | 38,761 (100.0) | 32,922 (84.9) | 5,028 (13.0) | 4,072 (10.5) | 0 (0.0) | 957 (2.5) | 811 (2.1) |
| 2012 | 42,474 (100.0) | 36,390 (85.7) | 5,343 (12.6) | 4,336 (10.2) | 0 (0.0) | 1,007 (2.4) | 741 (1.7) |
| 2013 | 47,206 (100.0) | 39,032 (82.7) | 5,799 (12.3) | 4,801 (10.2) | 0 (0.0) | 999 (2.1) | 2,375 (5.0) |

주: 1. 연도 말 기준

2. () 안은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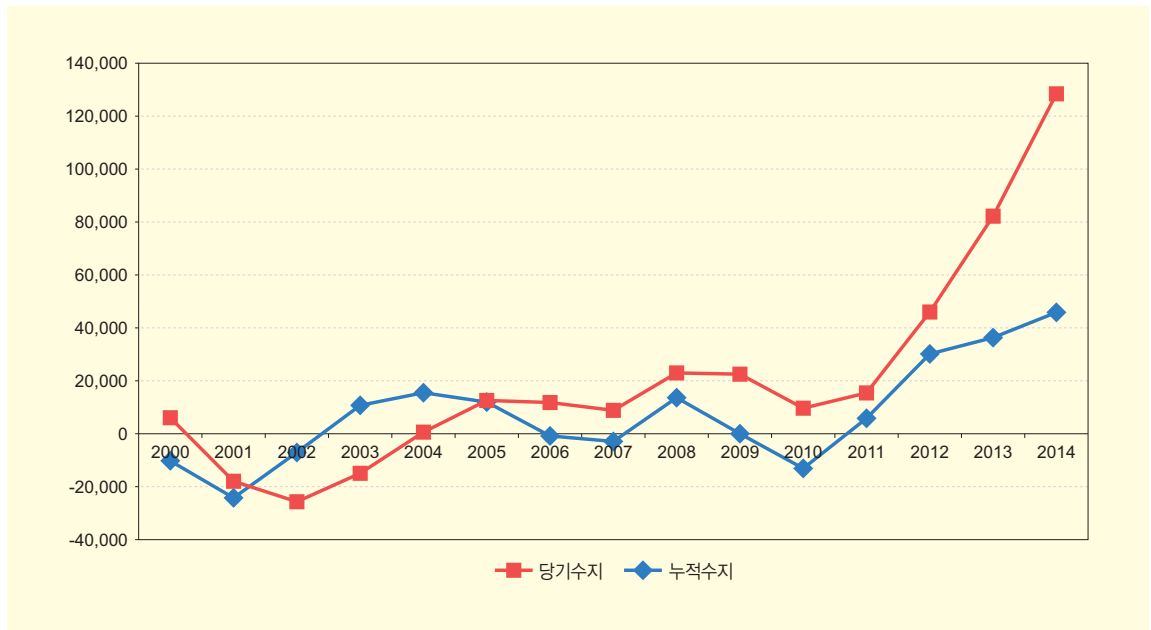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건강보험 지출은 인구고령화, 소득증가, 의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검진의 확대와 의료기술 의 발달은 건강한 노령층을 증가시켜 진료비 지출 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사망 직전 의 료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 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진료 비 지출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건강보험 진료 비가 2050년 GDP의 약 5.7~6.2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일수 외, 2011; 박형수 외, 2011; 현경래, 2015).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하 는 국고지원금은 2014년 GDP의 0.58% 수준에서 2060년에는 1.09% (약 94조원)까지 증가하는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NABO, 2014).

이러한 증가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의 인상과 더 불어 국민부담의 증가를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입 측면의 재정확보 방안에 선행한 건 강보험 지출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절실함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다. 특히 4대 중증질환에 대 한 급여항목의 확대와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 대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의료계의 수가 인상 요구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구조 개편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건강보험 재정현황 추이(200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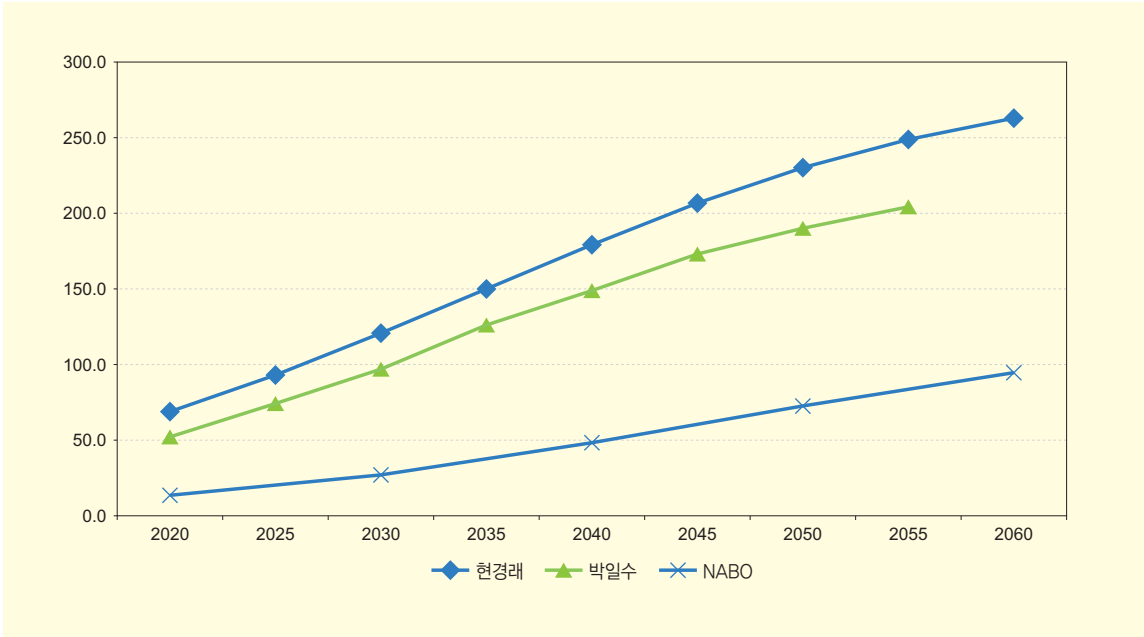
(단위: 억원)



주: 2012년부터 누적수지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급여 총당부채 적용
출처: 현경래(2015),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재정전망』, pp. 2~3, 재구성

[그림 3] 건강보험 지출 전망

(단위: 조원)



주: NABO 자료는 건보료 국고지원금 기준임
 출처: 현경래(2015),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재정전망』, p. 13.
 박일수 외(2011),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연구』, p. 147.
 국회예산정책처(2014),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 pp. 32,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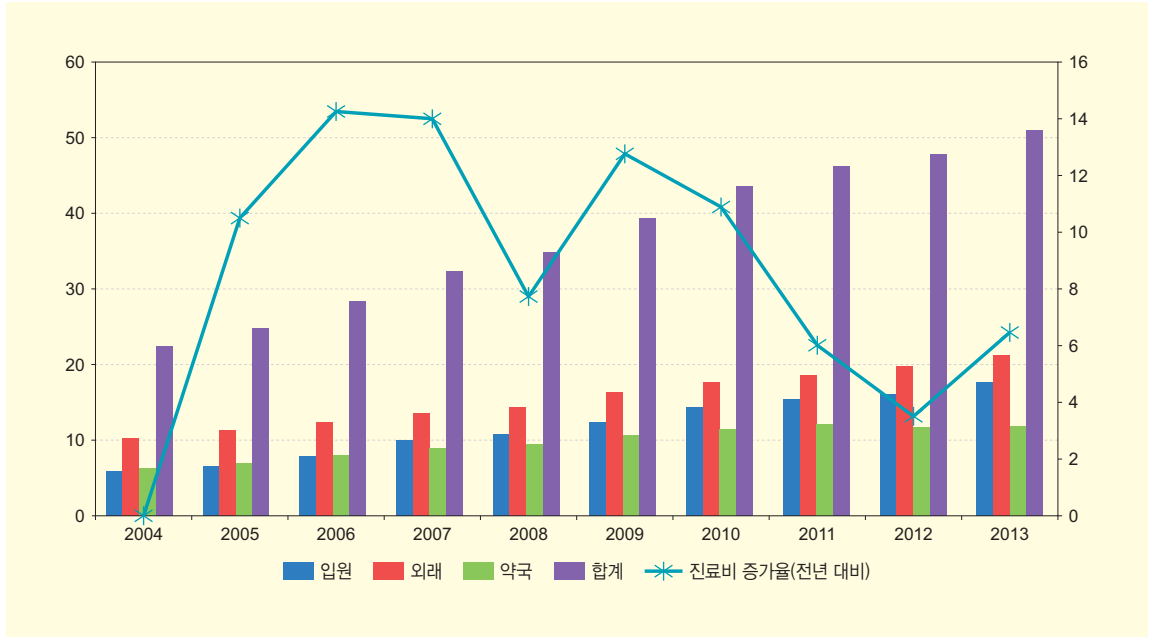
Ⅲ.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4년 약 22.5조원에서 2013년 약 50.9조원까지 연평균 9.5%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속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의 비중은 2013년 기준 25.2%이고 건강보험 급여비가 74.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진료비의 증가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의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진료비 유형별로는 외래진료비가 2013년 약 21.3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41.8%로 입원진료비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입원진료비는 2013년 약 17.7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34.7%로 나타나고 있으며, 약제비도 11.9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23.5%를 차지하고 있다. 외래와 약제비의 비중이 입원진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면 경증진료비 지출도 상당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림 4] 건강보험 진료형태별 진료비 추이

(단위: 조원, %)



가. 건강보험 대상자와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는 대상자의 증가, 대상자의 의료이용 증가, 의료이용 단가의 증가로 나누어 그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건강보험 대상자 추이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대상자는 2004년 약 4,700만명에서 2014년 약 5,000만명으로 연평균 약 0.6% 증가하였다. 건강보험 대상자 구성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높은 피부양자의 비중이다. 피부양자는 최근 들어 가입자 증가에 비해 증가 속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입자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장가입자가 2014년 약 1,500만명인데 피부양자 수는 약 2,0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2004년 전체 건보대상자의 45.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4년에는 약 29.2%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2004년 54.8%에서 2014년 전체 건보대상자의 약 70.8%로 증가하고 있다.

〈표 2〉 가입유형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명, %)

| | 건보적용인구 | 직장 | | | 지역 가입자 |
|------|-----------------------|----------------------|----------------------|----------------------|----------------------|
| | | 소계 | 가입자 | 피부양자 | |
| 2004 | 47,371,992 (100.0) | 25,979,308 (54.8) | 9,282,739 (19.6) | 16,696,569 (35.2) | 21,392,684 (45.2) |
| 2005 | 47,392,052 (100.0) | 27,233,298 (57.5) | 9,745,597 (20.6) | 17,487,701 (36.9) | 20,158,754 (42.5) |
| 2006 | 47,409,600 (100.0) | 28,445,033 (60.0) | 10,415,340 (22.0) | 18,029,693 (38.0) | 18,964,567 (40.0) |
| 2007 | 47,819,674 (100.0) | 29,424,424 (61.5) | 11,174,872 (23.4) | 18,249,552 (38.2) | 18,395,250 (38.5) |
| 2008 | 48,159,718 (100.0) | 30,416,577 (63.2) | 11,616,958 (24.1) | 18,799,619 (39.0) | 17,743,141 (36.8) |
| 2009 | 48,613,534 (100.0) | 31,412,740 (64.6) | 12,145,781 (25.0) | 19,266,959 (39.6) | 17,200,794 (35.4) |
| 2010 | 48,906,795 (100.0) | 32,383,526 (66.2) | 12,763,729 (26.1) | 19,619,797 (40.1) | 16,523,269 (33.8) |
| 2011 | 49,299,165 (100.0) | 33,256,574 (67.5) | 13,396,713 (27.2) | 19,859,861 (40.3) | 16,042,591 (32.5) |
| 2012 | 49,662,097 (100.0) | 34,106,034 (68.7) | 13,990,644 (28.2) | 20,115,390 (40.5) | 15,556,063 (31.3) |
| 2013 | 49,989,620 (100.0) | 35,005,695 (70.0) | 14,606,113 (29.2) | 20,399,582 (40.8) | 14,983,925 (30.0) |
| 2014 | 50,316,384 (100.0) | 35,601,802 (70.8) | 15,140,804 (30.1) | 20,460,998 (40.7) | 14,714,582 (29.2) |

주: 1. 연도 말 기준

2. 2014년 수치는 잠정수치임

3. () 안은 비중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2015), 『2014 건강보험주요통계』, p. 2.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는 2004년 약 48만원에서 2013년 약 102만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하여 왔다. 1인당 진료비는 2011년부터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가 단기적 추세인지 향후에도 지속될 추세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어쨌든 대상자와 1인당 진료비를 놓고 보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

가는 대상자 증가요인보다는 대상자 1인당 의료사 용량의 증가나 의료수가 인상으로 인한 결과로 보 인다. 그런데 의료수가 인상이 물가상승률 이하로 통제되어 왔음을 고려한다면 1인당 의료사용량 증 가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됨 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3〉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 추이

(단위: 만원, %)

| | 입원 | | 외래 | | 약국 | | 합계 | | |
|------|------|------|------|------|------|------|-------|------|---------|
| | 진료비 | 급여비 | 진료비 | 급여비 | 진료비 | 급여비 | 진료비 | 급여비 | 진료비 증가율 |
| 2004 | 12.6 | 10.0 | 21.8 | 14.6 | 13.1 | 9.5 | 47.5 | 34.1 | - |
| 2005 | 13.9 | 11.1 | 23.7 | 16.1 | 14.8 | 10.7 | 52.5 | 38.0 | 10.53 |
| 2006 | 16.6 | 13.7 | 26.4 | 18.2 | 16.9 | 12.3 | 59.9 | 44.2 | 14.10 |
| 2007 | 20.6 | 17.0 | 28.5 | 19.7 | 18.6 | 13.4 | 67.7 | 50.1 | 13.02 |
| 2008 | 22.6 | 18.2 | 30.0 | 20.8 | 19.8 | 14.2 | 72.4 | 53.2 | 6.94 |
| 2009 | 25.5 | 20.5 | 33.4 | 23.2 | 22.0 | 15.8 | 80.9 | 59.5 | 11.74 |
| 2010 | 29.5 | 24.2 | 36.2 | 25.3 | 23.5 | 17.0 | 89.2 | 66.4 | 10.26 |
| 2011 | 31.3 | 25.7 | 37.9 | 26.7 | 24.5 | 17.8 | 93.8 | 70.1 | 5.16 |
| 2012 | 32.6 | 26.6 | 40.0 | 28.1 | 23.8 | 17.1 | 96.3 | 71.9 | 2.67 |
| 2013 | 35.4 | 29.0 | 42.6 | 30.0 | 23.9 | 17.3 | 101.9 | 76.2 | 5.82 |

주: 1. 연도 말 기준
 2. 입원과 외래의 진료비는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의미함
 3. 약국은 처방조제와 직접조제 진료비 합계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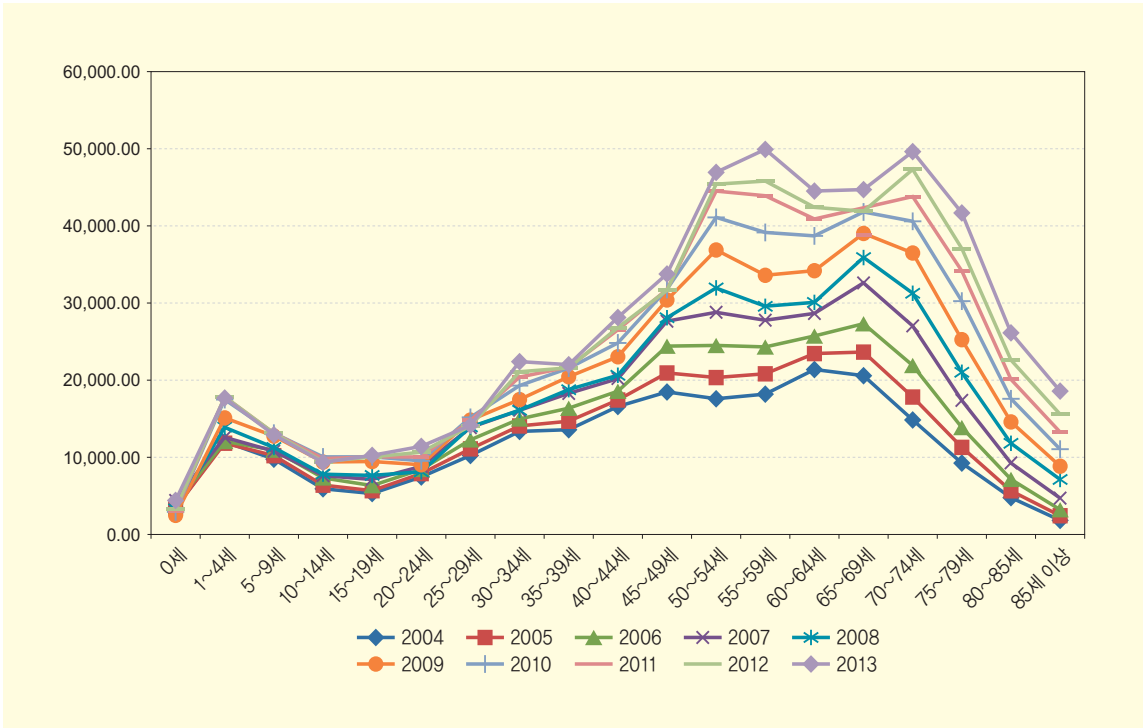
나. 연령대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

의료이용은 건강상태와 발병에 의해 사용량이 주로 결정되므로, 연령대별로 진료비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령대별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난 10여년간 크게 변하지 않고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청소년보다는 영유아의 의료비가 높고,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의 의료비가 높으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진료비가 전반적으로 높은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50대의 진료비가 60대의 진료비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70대의 진료비는 50대 진료비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고 80대 진료비는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연령대별 대상자 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연령대별 대상자를 고려한 1인당 진료비는 보다 역U자형 패턴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1인당 영유아 진료비는 청소년층의 1인당 진료비에 비해 현저히 높고, 이후 청년층에서 고령

층으로 갈수록 현저한 진료비 증가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1인당 진료비는 약 10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55~59세 연령대의 1인당 진료비는 약 142만원, 65~69세는 약 238만원, 75~79세는 약 361만원, 85세 이상은 약 46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연령별 총진료비 현황(2004~2013)

(단위: 억원)



주: 1. 연도 말 기준
 2. 입원과 외래의 진료비는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의미함
 3. 약국은 처방조제와 직접조제 진료비 합계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대상자의 11.5%인 570만명(2013년)이 65세 고령인구인데, 이들의 진료비 지출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고령인구 대상자 비중은 2004년 7.9%에서 2013년 11.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화 속도의 증가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 고령

인구 대상자 비중의 증가요인은 지속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1인당 진료비는 2013년 약 315만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대상자의 1인당 진료비 102만원의 약 3배(2013년)에 달하는데 이를 보아도 고령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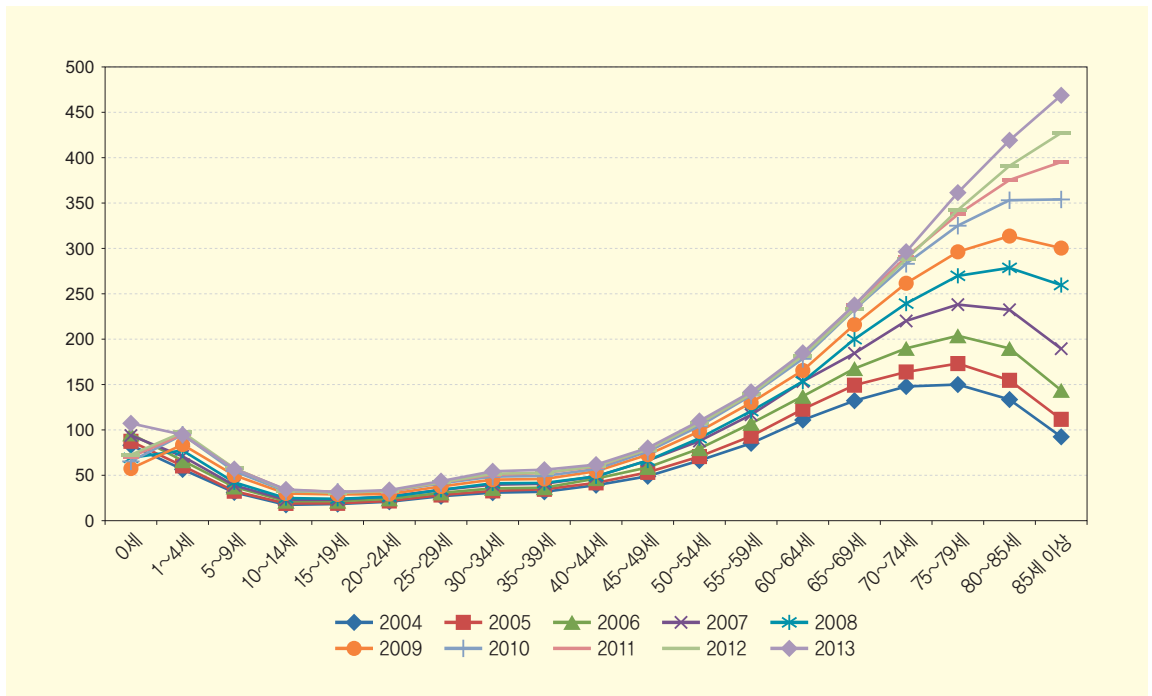
고령인구의 1인당 진료비는 2004년 약 137만원에서 2013년 약 315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전체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의 증가속도를 밑도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고령인구 진

료비의 증가율이 더디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노인 의료비의 일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서비스 비용으로 전환된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령인구의 진료비는 건강보험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이 있을 수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약 30%가 65세 고령인구(201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의료급여 대상자는 약 45만명)로, 1인당 의료급여 진료비도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면서 2013년에는 약 520만원(건강보험 고령인구 1인당 진료비의 약 1.7배)에 달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지출도 2010년 약 2.6조원에서 2014년에는 약 3.9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의료급여의 증가까지 감안한다면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넘어서 고령인구 전체 진료비의 증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연령별 1인당 진료비 현황(2004~2013)

(단위: 만원/명)



주: 1. 연도 말 기준
 2. 입원과 외래의 진료비는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의미함
 3. 약국은 처방조제와 직접조제 진료비 합계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표 4〉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 및 급여비 현황

(단위: 명, 조원, %)

| | 65세 이상 건보 적용인구 (전체 적용인구 대비 비중) | 65세 이상 건보 진료비 (전체 진료비 대비 비중) | 65세 이상 건보 급여비 (전체 급여비 대비 비중) |
|------|-----------------------------------|---------------------------------|---------------------------------|
| 2004 | 3,747,875 (7.9) | 5.1 (22.8) | 3.8 (23.8) |
| 2005 | 3,919,404 (8.3) | 6.1 (24.4) | 4.6 (25.3) |
| 2006 | 4,073,135 (8.6) | 7.4 (25.9) | 5.6 (26.7) |
| 2007 | 4,387,064 (9.2) | 9.1 (28.2) | 7.0 (29.0) |
| 2008 | 4,599,562 (9.6) | 10.7 (30.8) | 8.1 (31.6) |
| 2009 | 4,826,440 (9.9) | 12.4 (31.6) | 9.4 (32.5) |
| 2010 | 4,978,757 (10.2) | 14.1 (32.4) | 10.8 (33.4) |
| 2011 | 5,184,387 (10.5) | 15.4 (33.3) | 11.8 (34.2) |
| 2012 | 5,467,861 (11.0) | 16.4 (34.4) | 12.6 (35.3) |
| 2013 | 5,739,679 (11.5) | 18.1 (35.5) | 13.8 (36.3) |

주: 연도 말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고령인구 진료비의 특징은 입원비와 약제비가 외래비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전체 건강보험 대상자를 볼 때 외래비 지출이 입원이나 약제비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령인구는 중증질환, 사망전 치료 등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비 지출이 크고, 또 만성질환, 복합성 증후 등으로 인한 약제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진료비 구성도 외래보다는 약제비와 입원비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령인구의 입원 의료강도가 높은 것은 1인당 입내원일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고령인구의 1인당 입

내원일수는 2013년의 경우 약 50일로 전체 건강보험 대상자의 약 2.6배에 해당하고 있다. 입원일수는 전체 건강보험 대상자의 약 5배에 달하고 외래일수는 약 2배에 달하는 등, 입원의 의료강도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5〉 65세 이상 고령인구 1인당 진료비의 비교

(단위: 만원, %)

| | | 입원 | | 외래 | | 약국 | | 합계 | | |
|--------|------|-------|-------|------|------|------|------|-------|-------|-------|
| | | 진료비 | 급여비 | 진료비 | 급여비 | 진료비 | 급여비 | 진료비 | 급여비 | 증가율 |
| 전체 | 2004 | 12.6 | 10.0 | 21.8 | 14.6 | 13.1 | 9.5 | 47.5 | 34.1 | |
| | 2005 | 13.9 | 11.1 | 23.7 | 16.1 | 14.8 | 10.7 | 52.5 | 38.0 | 10.53 |
| | 2006 | 16.6 | 13.7 | 26.4 | 18.2 | 16.9 | 12.3 | 59.9 | 44.2 | 14.10 |
| | 2007 | 20.6 | 17.0 | 28.5 | 19.7 | 18.6 | 13.4 | 67.7 | 50.1 | 13.02 |
| | 2008 | 22.6 | 18.2 | 30.0 | 20.8 | 19.8 | 14.2 | 72.4 | 53.2 | 6.94 |
| | 2009 | 25.5 | 20.5 | 33.4 | 23.2 | 22.0 | 15.8 | 80.9 | 59.5 | 11.74 |
| | 2010 | 29.5 | 24.2 | 36.2 | 25.3 | 23.5 | 17.0 | 89.2 | 66.4 | 10.26 |
| | 2011 | 31.3 | 25.7 | 37.9 | 26.7 | 24.5 | 17.8 | 93.8 | 70.1 | 5.16 |
| | 2012 | 32.6 | 26.6 | 40.0 | 28.1 | 23.8 | 17.1 | 96.3 | 71.9 | 2.67 |
| | 2013 | 35.4 | 29.0 | 42.6 | 30.0 | 23.9 | 17.3 | 101.9 | 76.2 | 5.82 |
| 65세 이상 | 2004 | 47.4 | 37.6 | 48.1 | 35.1 | 41.6 | 29.8 | 137.0 | 102.5 | |
| | 2005 | 53.5 | 42.5 | 53.4 | 39.3 | 48.0 | 34.5 | 154.9 | 116.3 | 13.07 |
| | 2006 | 64.8 | 52.7 | 60.1 | 44.8 | 55.6 | 39.9 | 180.5 | 137.5 | 16.53 |
| | 2007 | 81.7 | 66.2 | 65.2 | 48.5 | 60.9 | 43.8 | 207.9 | 158.5 | 15.18 |
| | 2008 | 93.7 | 73.9 | 72.3 | 53.8 | 67.4 | 48.5 | 233.4 | 176.1 | 12.27 |
| | 2009 | 103.7 | 81.8 | 80.1 | 59.7 | 73.7 | 53.1 | 257.4 | 194.7 | 10.28 |
| | 2010 | 120.1 | 96.6 | 85.4 | 64.2 | 78.4 | 56.9 | 283.9 | 217.7 | 10.30 |
| | 2011 | 126.6 | 101.9 | 89.6 | 67.4 | 80.6 | 58.5 | 296.8 | 227.8 | 4.54 |
| | 2012 | 130.7 | 104.8 | 93.7 | 70.3 | 76.4 | 55.3 | 300.8 | 230.3 | 1.35 |
| | 2013 | 140.0 | 112.1 | 99.4 | 73.9 | 75.7 | 54.9 | 315.1 | 240.9 | 4.75 |

- 주: 1. 연도 말 기준
- 2. 입원과 외래의 진료비는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의미함
- 3. 약국은 처방조제와 직접조제 진료비 합계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표 6〉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평균 내원일수 추이

(단위: 일, 명)

| | | 의료기관 | | | 약국 | 총계 |
|--------|------|-------|-------|-------|-------|-------|
| | | 소계 | 입원 | 외래 | | |
| 전체 | 2004 | 14.86 | 1.13 | 13.74 | 8.21 | 14.89 |
| | 2005 | 15.33 | 1.19 | 14.13 | 8.43 | 15.35 |
| | 2006 | 16.01 | 1.32 | 14.69 | 8.78 | 16.04 |
| | 2007 | 16.53 | 1.57 | 14.96 | 8.80 | 16.56 |
| | 2008 | 16.78 | 1.74 | 15.03 | 8.82 | 16.81 |
| | 2009 | 17.91 | 1.91 | 16.00 | 9.38 | 17.94 |
| | 2010 | 18.51 | 2.12 | 16.39 | 9.51 | 18.54 |
| | 2011 | 18.76 | 2.20 | 16.56 | 9.61 | 18.79 |
| | 2012 | 19.14 | 2.30 | 16.84 | 9.83 | 19.17 |
| | 2013 | 19.31 | 2.45 | 16.86 | 9.65 | 19.33 |
| 65세 이상 | 2004 | 34.61 | 4.19 | 30.42 | 16.37 | 34.65 |
| | 2005 | 36.53 | 4.61 | 31.92 | 17.33 | 36.57 |
| | 2006 | 38.49 | 5.26 | 33.24 | 18.18 | 38.55 |
| | 2007 | 40.60 | 6.59 | 34.00 | 18.47 | 40.65 |
| | 2008 | 43.92 | 7.78 | 36.14 | 19.35 | 43.97 |
| | 2009 | 46.43 | 8.20 | 38.23 | 20.10 | 46.48 |
| | 2010 | 48.31 | 9.14 | 39.17 | 20.53 | 48.35 |
| | 2011 | 48.86 | 9.58 | 39.28 | 20.55 | 48.90 |
| | 2012 | 49.51 | 10.04 | 39.46 | 20.79 | 49.54 |
| | 2013 | 50.03 | 10.78 | 39.24 | 20.35 | 50.06 |

주: 1. 연도 말 기준

2. 약국은 처방조제와 직접조제로 분류되고 있으며, 내원일수 총계 계산 시에는 직접조제만 고려하고 있음

3. 2008년 이후의 수가 인상률은 유형별 수가 인상률의 평균 추정치임

4. 소비자물가지수는 연도 말 기준임, 원출처: 소비자물가지조사(통계청)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2014), 『2014년 3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 p. 33,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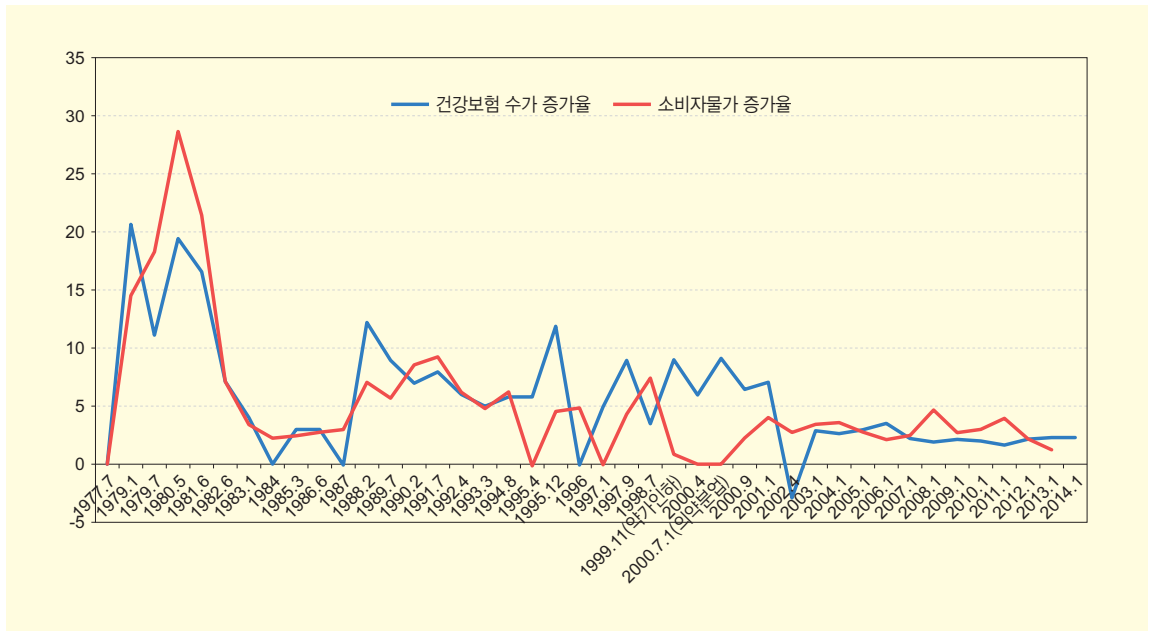
IV. 건강보험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와 공급 측면 요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의료이용이 늘어났거나, 의료이용 단가가 증가하여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료수가의 변화에 의해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2000년 이후에는 대

체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수준에서 인상되어 왔다.¹⁾ 즉,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의료이용 단가의 증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건강보험 대상자의 의료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건강보험 1인당 입내원일수는 2004년 약 15일에서 2013년 약 19일로 연평균 2.97%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 유형별로 볼 때 입원은 2004년 약 1.1일에서 2013년 약 2.5일로 증가한 반면, 외래이용은 약 14일에서 17일로 증가하여, 외래서비스 이용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그림 7] 건강보험 수가 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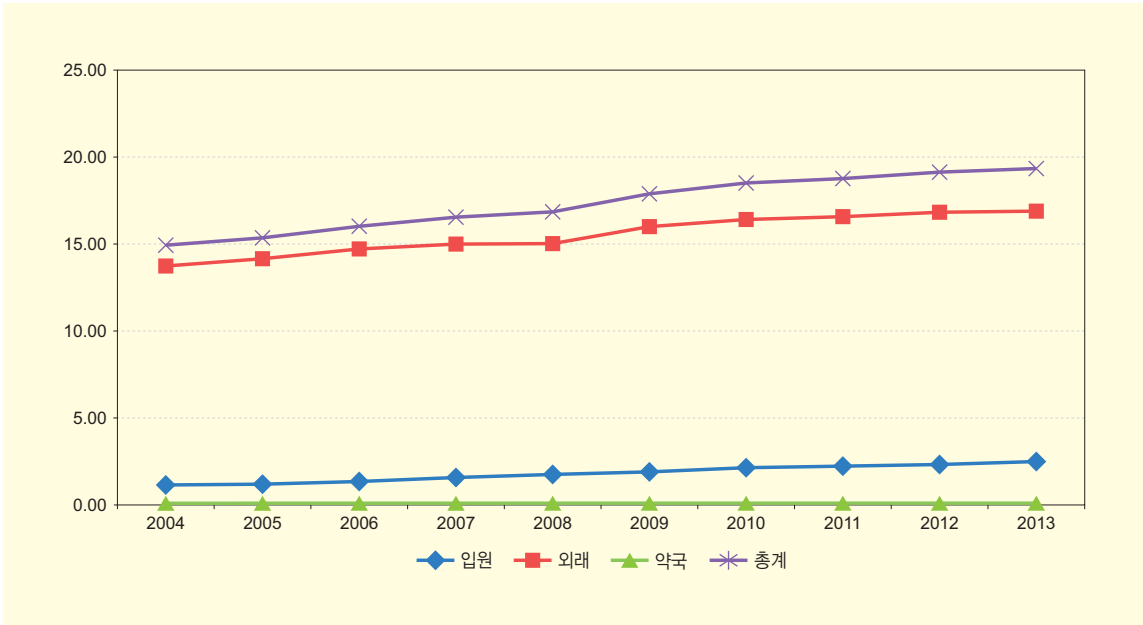


주: 1. 2008년 이후의 수가 인상률은 유형별 수가 인상률의 평균 추정치임
 2. 소비자물가 지수는 연도 말 기준임. 원출처: 소비자물가지조사(통계청)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14), 『2014년 3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 p. 33, 재구성

1) 2008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 책정을 위한 환산지수를 달리 적용하게 됨에 따라 의료기관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이 다르게 적용되게 되었다.
 2)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증가는 입내원일수와 진료건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나, 진료건수 자료가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내원일수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8]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평균 내원일수 추이

(단위: 일/명)



주: 1. 연도 말 기준

2. 약국은 처방조제와 직접조제로 분류되고 있으며, 내원일수 총계 계산 시에는 직접조제만 고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건강보험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 측면 요인으로는 병원 수, 병상 수, 의사 수 등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병원유형별로는 상급병원보다는 병원과 의원의 수가 급증하였고, 최근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요양병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병상 수는 입원실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의사와 환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질병과 같은 순수한 수요 측면의 요인 외에도 원활한 병원운영과 충분한 이윤창출을 위해 서뿐 아니라, 환자의 예산제약을 염두에 둔 공급자의 유인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 공급자의 유인수요는 수가나 지불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실손보험과 같이 보충형 민간보험의 여부에 따라 환자

의 본인부담을 낮추면서 공급자의 시설수용능력을 활용하려는 유인과 보다 관련이 있지만, 병원과 의원 수의 급증은 상대적으로 경증질환 대상 공급의 확대와 더 나아가서는 공급자 유인수요의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시사한다.

〈표 7〉 요양기관, 병상 수 및 의료인력 수 추이

(단위: 개소)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총기관 수 | 72,921 | 75,108 | 76,803 | 78,461 | 80,270 | 81,681 | 82,948 | 83,811 | 84,971 |
| 상급종합병원 | 42 | 43 | 43 | 43 | 44 | 44 | 44 | 44 | 43 |
| 종합병원 | 249 | 253 | 261 | 269 | 269 | 274 | 275 | 278 | 281 |
| 병원 | 909 | 961 | 1,048 | 1,193 | 1,262 | 1,315 | 1,375 | 1,421 | 1,451 |
| 요양병원 | 203 | 361 | 591 | 690 | 777 | 867 | 988 | 1,103 | 1,232 |
| 의원 | 25,166 | 25,789 | 26,141 | 26,528 | 27,027 | 27,469 | 27,837 | 28,033 | 28,328 |
| 치과병원 | 124 | 136 | 153 | 168 | 183 | 191 | 199 | 201 | 203 |
| 치과의원 | 12,548 | 13,002 | 13,339 | 13,750 | 14,242 | 14,681 | 15,058 | 15,365 | 15,727 |
| 한방병원 | 149 | 145 | 142 | 146 | 158 | 168 | 184 | 201 | 212 |
| 한방의원 | 9,761 | 10,297 | 10,859 | 11,334 | 11,782 | 12,061 | 12,401 | 12,705 | 13,100 |
| 조산원 | 52 | 51 | 51 | 51 | 49 | 46 | 40 | 33 | 34 |
| 보건기관 | 3,422 | 3,437 | 3,445 | 3,456 | 3,462 | 3,469 | 3,468 | 3,469 | 3,470 |
| 약국 | 20,296 | 20,633 | 20,730 | 20,833 | 21,015 | 21,096 | 21,079 | 20,958 | 20,890 |
| 병상 수 | 401,052 | 431,141 | 467,633 | 507,743 | 539,042 | 578,583 | 617,582 | 649,701 | 679,633 |

주: 1. 연도 말 기준

2. 2014년 수치는 잠정수치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15), 『2014 건강보험주요통계』, p. 37.

V. 결론: 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의 필요성

본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건강보험 재정의 근본적 위험요소인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요인을 살펴보았다. 건강보험 지출은 지속적 증가를 계속하였고, 1인당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우리나라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OECD 국가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은 11%의 노인 대상자가 약 35%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등 노인의료비가 매우 주요한 요소인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향후에도 건강보험 지출이 지속적인 증가를 거듭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는 보험료 증가와 국고 지원의 증가 등 국민부담률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수입의 확충을 위한 방안들 이전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 진료비 중 외래와 약제비 비중이 높은 점과 무관하지 않다. 경증질환의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률, 불필요한 검사료 및 약제비 남용 등은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 유인을 발생시키고 공급자 측면에서의 유인수요를 창출하는 제도적 요인 과도 연관이 있다. 지출 측면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은 지불제도, 본인부담금, 민간보험의 설계 등의 측면에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개선책이 강구되어 왔으나, 향후에도

“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해외국가들에서도
 건강보험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흡연의 건강위해도를 생각할 때
 담배부담금 재원을
 건강보험지출에 활용하는 것도
 적절한 연계로 볼 수 있다.**
 ”

지속적인 효율화 대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출 효율화 대책과 더불어 본고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개선, 건강보험 재정통계 공개 확대, 담배부담금의 건강보험 재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보험 지출의 부담주체라는 측면에서, 현행과 같은 피부양자 구조를 계속하여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가입자들의 피부양자 편입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현행의 피부양자 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통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누적수지가 상당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누적수지의 정확한 규모를 놓고서도 진위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가 늘어나고 있고, 누적수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해당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시비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5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매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건강보험 재정과 함께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에 연동된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도 파악이 힘든 사각지대에 놓여져 국가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장기요

양보험의 도입과 더불어 요양병원 등이 급증하는 등 장기요양보험부문의 지출 효율화 문제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의 건강보험 통계의 공개범위의 확대와 투명화가 필요하다.

셋째, 건강보험 재원으로서 담배부담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누적수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상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보다 최근에는 이 국고지원의 법적 만료가 도래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건강보험 누적수지의 증가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원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수입원으로서 최근 담배가격 인상으로 증가한 담배부담금 재원을 확대 편입할 필요가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해외국가들에서도 건강보험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흡연의 건강위해도를 생각할 때 담배부담금 재원을 건강보험지출에 활용하는 것도 적절한 연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투명화와 심의 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 수가, 보험료 등의 주요 사항들이 국회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해당사자 그룹 소수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거버넌스는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 서비스 공급자 간의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구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필요로 한다. 올초 연말정산 소득세환급액이 줄어들어 따라 야기된 사회적 저항에 비교하여 보면, 해마다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부가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은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건강보험 통계방식의 개선,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한 건강보험기금화 논의를 재조명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3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 2014.
- _____, 『건강보험통계』, 각년도.
- 국회예산정책처,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 2014.
- 박일수 외,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1.
- 박형수 외, 『장기재정전망』, 한국조세연구원, 2011.
- 현경래,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재정전망』, 세미나 자료, 2015.

2015 지방세제 개편(안)

- 2015년 지방세제 개편(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이동혁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과장
- 2015년 지방세제 개편안 평가
김현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5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정책담당자의 2015년 지방세제 개편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2015년 지방세제 개편(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이동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과장

I. 2015년 지방세법 개정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와 맞물려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우리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빠지게 되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농어민, 서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추경예산 편성, 예산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하에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안)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비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II. 2015년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경제 활성화

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35%)와 재산세(25%)가 감면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8년) 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취득하여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25%에서 50%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와 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지방세가 일부 감면된다.

나.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합병·분할 등을 통해 사업부문을 재편하여 과잉경쟁을 해소하고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정과 연계하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50%) 혜택이 신설된다. 더불어 기존 기업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되며,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분리되어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대해서도 취득세(100%)와 등록면허세(90%) 감면이 신설된다.

다. 일자리 창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기업의 고용 증가유인을 저해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월 급여 총액의 0.5%) 면세기준이 변경된다. 현재는 종업원 수를 기준(50명 이하)으로 면세하고 있으나 이는 50명 이하 기업의 고용 증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노동집약적 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에서 월 급여총액(1억 3,500만원 이하)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영농조합법인이나 운수업계 등은 면세로 전환되고 회계·법무법인 등 고소득 전문업종은 과세로 전환된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분 사회보험료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 공제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라.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현행 지방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부여된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며, 중소기업 간 통합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시 발생하는 취득세도 계속 전액 감면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도 현행 취득·재산세(50%) 등의 감면이 계속된다.

마. 지역경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의 감면 혜택 등이 지속적으로 부여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100% 취득세가 감면된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시행자 및 입점 상인에 대해서도 취득세 100%와 5년간 재산세 50%가 감면된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하여 선수촌 건설사업자 및 수분양자에 대한 감면이 신설된다.

바. 친환경산업 육성

전기자동차 산업발전과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혜택도 지속된다. 그리고

서민층과 영세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와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취득세도 전액 감면된다. 또한, 친환경건축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5~15%) 및 재산세(3~15%)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행 감면(취득세 5~15%)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2. 민생 안정



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취약계층 및 민생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도 지속 부여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계속될 예정이다.

나. 서민생활 안정

서민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40㎡ 이하, 1억원 미만의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계속 면제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전용면적 80㎡ 이하의 임대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25~100%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공공

성을 강화한 준공공임대주택의 대해서도 그 규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서울 3천 2백만원, 광역시 2천만원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다자녀가정이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금융소외 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다. 농·어업분야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계속된다. 우선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이 면제되며, 농·어업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가 일부 경감된다. 또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담보제공 농지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면제되며,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연안여객선박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주행분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된다.

라. 보건 및 안전 분야

올해 메르스 파동 등 보건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십자병원·보훈병원, 한국결핵협회, 건강관리협회 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된다. 또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해서 10~50%의 범위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부여된다.

3. 불합리한 세제 정상화

주택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되면서 주택 부속 토지와 관련된 취득세율이 주택 신축 전·후 시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점(신축 전 4%, 후 1~3%)을 악용하여 주택 신축 전에 취득하고도 신축 후에 취득한 것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주택을 신축한 이후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법인 합병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도 개선된다. 법인 간 합병으로 인한 취득 시 특례세율(4%→2%)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 간 합병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 후에 사업을 폐지하진,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등 합병 이후 법인의 실체가 변경되는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차량, 기계장비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체계도 개편된다. 부동산, 법인 등기의 경우 정률세율로 과세되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최소 행정비용에 해당하는 최저 정액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 정액세액이 부과(최저한세)된다. 앞으로는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에 대하여도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세율체계가 정비된다.

그 밖에도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중에서도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감면 등 그 목적이 달성된 일부 감면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종료된다. 그리고 체계적인 비과세·감면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어 감면액 100억원 이상의 신규감면은 감면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

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4.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징수제도 개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지방세 징수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개편된다. 우선 납세자들의 가산세 납부부담이 완화된다. 특별 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이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그리고 전액 감면을 받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정기준도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변경된다. 체납처분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고 체납처분 유예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지만 앞으로는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각 기업은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의 특별 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도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신청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에만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징수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우선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직접 규

정하지 않고 국세 법령을 준용함으로써 인해 해석 상 논란이 있던 규정들을 지방세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하여 지방세 징수 절차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체납액의 범위에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결손액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Ⅲ.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이처럼, 전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금년도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3.3조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재개 지원 등 5건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였다. 또한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불합리한 과세체제를 정상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로 개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하였다. 이러한 지방의 노력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관계법령은 8~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법안은 국회 법안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5년 지방세제 개편안 평가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지방세제 개편안 취지¹⁾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 예산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2015 지방세제 개편안」이 제시되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전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세 제도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도로 지원한 것에 해당한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3.3조원의 지방세 감면 부분을 일괄 연장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재개 지원 등을 위한 감면 등이 신설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면제도의 개편이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작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

화하고, 결국 세수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 지방세제 개편안」은 국세의 세제개편안과 마찬가지로 경기 활성화가 주 목적이며, 이를 위한 전면적인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이 핵심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서민 생활 안정 등의 민생안정 분야도 포함하고 있다. 제도 개편 내용에는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를 위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운용의 합리화 방안과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징수 제도 개선도 담겨 있다.

이 글의 제Ⅱ장에서는 우선 지방세제 개편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고, 제Ⅲ장에서는 개편안에 대한 기대효과와 문제점 및 정책방향의 개선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2015.8.21.

II. 지방세제 개편안 개요²⁾

2015년 8월 21일 발표된 지방세 3법 개편안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불합리한 세제정상화, 납세자 편의제고 및 징수제도 개선 등 총 4개 분야의 정책목표에 따라 분류하였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분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발전, 친환경산업육성 분야로 구분된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 35%와 재산세 25%가 감면되어 건축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8년) 임대주택(60~85㎡)을 100호 이상 취득하여 임대할 경우에도 취득세의 감면폭이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회사와 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하는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50%)와 재산세(0.1% 세율특례)의 감면혜택이 부여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와 사업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 즉,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 사업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과잉경쟁 해소 및 신시장 개척을 도모할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되어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대해서도 취득세 100%와 등록면허세 90%를 감면하는 내용도 신설되었다. 또

한, 기존 기업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일자리 창출분야는 현재 종업원 수를 기준(50명 이하)으로 면세하고 있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이 변경된다. 이 기준은 50명 이하 기업의 고용 증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담세력이 충분한 자본집약적 기업 대비 노동집약적 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 간 과세 불형평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종업원 수’ 기준의 면세기준을 ‘급여총액(과세표준, 1억 3,500만원 이하)’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증가와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 분야는 창업여건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현행 감면안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시 발생하는 취득세도 전액 감면이 지속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센터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도 현행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50% 감면이 계속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 중소기업 특허권 등 취득금액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이 공제된다.

지역경제 발전 지원은 지방 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지속된다. 특히 지방이전 법인의 등록면허세는 100% 면제된다. 지방이전 공

2) 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15.8.21.) 참고

공기관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 감면부분도 유지된다.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및 입점 상인에 대해서도 취득세 100%, 5년간 재산세 50% 감면부분도 유지된다. 또한, 평창동계 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하여 선수촌 건설 사업자의 취득세 100%와 수분양자(재산세 별장 중과 배제)에 대한 감면이 신설된다.

친환경 산업 육성 분야의 경우,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과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40만원 세액 공제 혜택도 지속된다. 동시에 서민층과 영세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경차 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부여된다. 또한, 친환경건축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5~15%) 및 재산세(3~15%)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행 감면(취득세 5~15%)을 연장한다.

본 지방세제 개편안의 두 번째 정책목표인 민생안전 분야 지원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서민 생활안정, 농·어업분야, 보건 및 안전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메르스 파동 등 특수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부여된다.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제지원이 부여된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서민주택(40㎡ 이하, 1억원 미만)의 취득세가 면제되고,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주택 재산세 면제, 60㎡ 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 60㎡ 초과 80㎡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25%가 경감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 최대 100%까지 감면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은 압류 금지 재산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서민층 교통수단이자 친환경 정책 지원을 위해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중고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 학생 실험·실습용 기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금융소외 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농어업 분야는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이 면제되며, 도서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연안 여객선박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주행분 전액 면제된다. 농·어업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농·어업법인의 법인 설립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 면제된다.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용 담보제공 농지 등에 대해 재산세가 면제된다.

보건 및 안전분야의 경우 적십자 병원·보훈 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민안전과 관련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해서는 10~50%의 범위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부여된다.

개편안의 세 번째 내용은 불합리한 세제 정상화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먼저, 주택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 적용이 개선된다. 주택 신축 후 관련된 취득세율이 주택 신축 전·후 시점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기에 동일 세율이 적용되도록 과세체계가 개편된다. 둘째, 법인 합병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를 개선하여 합병 후 실체가 변경되는 비적격 합병의 경우 낮은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넷째, 등록면허세 세율체계가 개편되는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에 대하여도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개선한다. 다섯째,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중에서도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그 목적이 달성된 일부 감면 대상은 원칙대로 종료한다. 여섯째,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신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감면 운영을 위해 '지방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된다. 감면액 100억원 이상의 신규 감면의 경우, 감면 필요성 및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마지막으로, 본 개편안은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징수개선을 위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

화한다. 그리고 체납처분 유예 요건 역시 완화하여 성실납부자 혹은 체납처분 유예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기존에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를 완화하였다. 지방소득세 납세절차 또한 간소화되어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 세액에 대한 환급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국세청과 자치단체에 각각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에만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징수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 징수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그간 해석상 논란이 있던 국세 관련 지방세 내용은 「지방세 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체납액 범위에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결손액을 포함시켜 체납 징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Ⅲ. 2015 지방세제 개편안 평가

가. 세수효과 및 정책 일관성

본 지방세제 개편안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행자부는 본 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향후 5년에 걸쳐 총 3.3조원 규모로 추정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내외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수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세수

〈표 1〉 2015 지방세제(감면제도) 개편안 주요내용

| 구분 | 내용 | 감면규모 추정액 |
|-------|--|------------|
| 감면 신설 | 2년 이상 방치 건축물 공사재개 취득·재산세 경감(취득세 35%, 재산세 25% 경감) | 120억원(3년) |
| | 평창올림픽 선수촌 사업자·분양자 취득·재산세 지원(취득세 면제, 재산세 종과배제) | 115억원(5년) |
| | 사업재면기업 등록면허세 경감(등록면허세 50% 경감) | 72억원(3년) |
| | 기업형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60~85㎡ 임대주택 취득세 50% 감면) | 484억원(3년) |
| | 수협은행 분리설립 취득·등록면허세 경감(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90% 경감) | 109억원(1년) |
| | 합계 | 900억원 |
| 감면 연장 | 농·임·어업용 석유류 자동차세 주행분 | 4천 300억원 |
| | 임대주택사업자취득·재산세 | 3천 500억원 |
| |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자동차세 | 2천 400억원 |
| | 경차취득세 | 1천 350억원 |
| | ... | |
| | (총 130여 건) | |
| | 합계 | 3조 3,000억원 |

주: 1. 감면 신설분은 2015년 지특법 개정안 기준이며, 각 추정기간이 다름
 2. 감면 연장분은 2014년 세수결산기준임
 출처: 행정자치부

규모를 감소하는 것으로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가 높을 수 있겠다. 감면 신설안의 경우, 평창올림픽 선수촌 시설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 일시적인 지원에 해당하여 향후 지방세원 잠식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2년 이상 방치 건축물 공사재개 세수경감의 경우, 건축물이 완성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주거 및 상업활동 등으로 지방세수가 확충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개편안의 감면 신설안에서 세수결손 효과는 향후 경기활성화 여부와 건축물 활용 여부에 따라 그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볼 때, 불과 작

년에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감면제도를 연장하도록 한 부분이다. 2014년도에 기존 비과세·감면제도를 일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몰연장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이미 기득권화 되어 있는 기존 비과세·감면 대상자들을 설득하여 일몰도래 시 원칙적으로 해당 비과세·감면을 종료하고, 감면 신설 시 PAYGO 원칙의 적용 등 강도 높은 비과세·감면 정비 로드맵을 추진 중에 있다.³⁾ 이는 지방세제 환경 및 인프라 개선작업으로서 세수 증가 효과 이상의 공평과세원칙 정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다.

3)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야 보고서』, 2014.

본 「201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는 총 130여 건에 이르는 감면연장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민생안정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생활지원 부분은 불가피하게 감면이 연장되었다. 비과세·감면의 수혜자가 정치적으로 설득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야는 경기 악화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하에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통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세 감면 연장을 통한 지원은 경기활성화 이유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도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감면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한 본 개편안은 기존 비과세·감면폭을 축소하여 추가재원을 확충하고, 과세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존의 정책기조와는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다.

본 개편안은 그간의 비과세·감면 축소기조 유지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활성화가 우선인 위기상황에서의 긴급조치라고 평가하고자 한다. 전 세계가 저성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규모 위축을 우려하기보다는 경기활성화가 더욱 절실하기에 국세 개편안 역시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개편안 노력이 경제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세수증대 효과로 이어지도록 전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대도시 지역의 세수감소 효과 추정 및 PAYGO 시스템 도입


본 개편안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조치가 골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인구분포 및 재정력 여건상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상의 지방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현상은 기존 대도시 지역에 해당하므로 이들 지역의 일반재원 감소현상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인구집중지역인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재정력이 크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보다 더 큰 사회복지수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이 지역들의 일반재원 감소 부분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향후 3~5년 동안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는 것은 향후 국가부채 증가 및 증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당장의 세수감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세수 인프라 차원에서 세원확보 시스템 자체가 취약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더욱 대도시 지역의 세원확보는 향후 급속하게 증가할 사회복지재정수요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한시적인 감면조치는 기간이 도래했을 때 일몰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일정부문의 감면 효과가 예상될 경우, PAYGO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요 국가정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세 감면시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지방세 과세권 약화

국회에서 「지방세법」 등의 제·개정을 통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세의 과표, 세율 및 비과세·감

면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세수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으로 귀속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법률적·제도적으로 사실상 국세처럼 결정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거시경제적 정책목표(경기 활성화, 민생 안정)를 수행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관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지방세의 첫 번째 역할은 지방세입 확보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를 유발하는 비과세·감면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인센티브를 갖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세입확충보다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가 높으므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려고 한다. 비록 중앙정부가 지방세제를 결정하더라도, 지방세로 설정된 세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세기반을 넓혀 지방세입 확충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재분배 정책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지방세제가 이러한 정책 목표를 위해 추가적으로 동원될 경우 순기능(경제 활성화, 민생안정)보다 역기능(세수 손실, 행정비용 증가, 세제 복잡화 등)이 더 클 수 있음을 정책당국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공정책포럼



■ 제42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혁신, 100년의 미래

개요

- 주 제 사람의 혁신, 100년의 미래
- 일 시 2015년 8월 28일(금),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A(별관 B1)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10 인사말씀
 송대희 좌장
- 08:10~09:00 주제 발표
 이근면 인사혁신처 처장
- 09:00~09:30 자유토론
- 09:30 폐회

* 본 원고는 2015년 8월 28일 서울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A(별관 B1)에서 『사람의 혁신, 100년의 미래』를 주제로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개최한 제42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말씀

송대희/좌장

1960~70년대에는 공공부문이 민간을 선도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민간의 역량이 광통신의 속도로 성장하여 공공부문이 민간에서 배울 부분이 많아졌다. 민간부문을 보고 배우면서 공공분야 성장이 필요한 시기이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공공기관의 인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고자 한다.



주제발표 요약

사람의 혁신, 100년의 미래

이근면/인사혁신처 처장

I. 대한민국, 어제와 오늘

1950년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9위였다. 그러나 1960년대 32위를 거쳐 1990년대에는 16위를 달성하였고 2014년에는 13위에 이르렀다. 이케다 가요코의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책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22명, 대학을 다니는 사람 7명,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 17명,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 13명, 바람과 비를 피할 처처가 없는 사람 23명이며 15명은 영양실조를, 1명은 굶어죽기 직전이다. 이

러한 100명의 마을에서 현재의 한국은 인구수로는 100명 중 한 명이며, 7번째로 부자이다. 그리고 3번째로 교육수준이 높다. 그렇다면 과연 미래의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II. 공직사회, 어제와 오늘

한강의 기적은 공무원의 선도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런데 한국을 빛낸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을 빛내는 위대한 공무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착안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을 선정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왜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해 알아보려면 빛과 그림자를 다 알아봐야 한다.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나온 생각이 ‘상을 주자’는 것이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직접 공무원 100인에게 상을 수여하셨다.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공무원의 노고를 인정해주기 위해서이다. 저는 이처럼 ‘상을 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 주위에 공무원 칭찬을 하자는 말을 자주 한다. 단 잡초는 뽑아야 한다. 잡초는 주위 잔디가 자라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좋은 잔디가 있어야 알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왜 이런 선입견이 생겨났는지 돌아보았다. 70~8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을 만드는 데에 공무원이 앞장섰다. 그 이후에 민간 기업은 생존을 위해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공무원의 관심은 한국에서 공무원 자신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단이다. 즉, 공무원은 그다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를 보았는데, 공무원은 국민을 얼마만큼 봤겠는가.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신분보장(31.3%), 안정된 경제생활(19.6%) 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약 과반에 이르는 수이다.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공무원은 부정부패, 갑질, 관피아, 복지 부동, 무사안일, 철밥통, 안정적 직장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공직사회 혁신 과제로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자상 확립(33.6%)’, ‘민간유착 등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타파(25.6%)’, ‘일하는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확립(18.2%)’, ‘공직의 전문성과 개방성 향상(14.2%)’,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양양(7.0%)’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혁신이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까지 과거에 머물고 있다. 공무원 9급은 국·영·수를 보고 기업은 직무능력을 보고 뽑는다. 국민들이 보는 공무원에게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없다. ‘인사혁신처’, 우리 부처의 공식명칭이 혁신이 들어간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개방성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1981년 국가공무원법, 1980년 공무원 윤리헌장, 1973년 공무원교육훈련법, 모두 공무원을 아직까지 교육훈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교육훈련과 인재개발은 수동과 능동의 차이이다. 아직까지 이런 체계이다.

Ⅲ.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제가 처음 삼성전자에 갔을 때 연구원 400명이 세계 11위였다. 17년 전 IMF가 있었을 때 망한 상황이었다. 그때부터 불과 15년 만에 세계 1~2위를 다투게 되었다. 삼성전자가 휴대폰 100개를 만들면 한국에는 3개를 팔고, 나머지 97개는 해외에 판매한다. 그렇다면 어떤 법으로 재단해야겠는가. 또 하나, 영원한 1위는 없다. 작년에 샤오미에 중국시장 1위를 빼기고 중국시장에서 4위권으로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급감하였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공직사회에도 혁신이 필

요하다.

공직사회에서 ‘미래’라는 단어는 자주 언급되지 않는다. 과거는 미래를 향한 지침서라고 매달렸다. 그러나 저는 지난 40여 년간 민간기업에 있을 때에는 뒤보다 앞을 봤다. 뒤를 볼 시간이 없었다. 예전에는 미래라는 단어가 익숙했었는데 공직사회에서는 거의 듣지 못했다. 세계라는 단어, 경쟁력 역시 마찬가지이다.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효율도 중요한 가치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경쟁력은 정부의 경쟁력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다음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발휘되는 능력이 없다면 논란의 여지가 많다.

Ⅳ.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공직사회 혁신방향

새로운 시대에 공직사회 인사혁신은 ‘미래를 대비하여 세계 어느 정부와 견주어도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인사혁신의 세 가지 과제로 ‘채용의 혁신’, ‘교육의 정상화’, ‘전문성 강화·성과형 인사관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채용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채용의 혁신을 위해 공직개방 확대, 스펙초월 채용, 공직가치 검증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직개방 확대를 위한 경력개방형 직위 도입, 민간인재 스카우트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스펙초월 채용을 위한 시도 중 하나가 국민추천제이다. 참여는 작은 목소리이다. 큰 목소리, 독창은 자주 듣는다. 작은 목소리가 모이지 않으면 합창이 되지 않는다. 이제 마음속으로 응원할 때가 아니다. 작은 목소리가 모여 퍼져나갈 때이다. 그리고 최근에 행정고시에 헌법과목이 없

어졌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직가치가 중요하다. 헌법을 추가하고, 공채시험에 한국사 가점, 공직가치 심층 검증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인사혁신으로 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 패러다임을 스스로 자기계발을 주도하는 인재개발로 전환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입공무원 교육개편을 통해 기본자세 함양을 위한 공직가치·합숙교육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공직가치 강화를 위해 국·과장급 리더십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글로벌 역량교육 확대를 위해 SW와 직무역량 및 국내외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와 성과형 인사관리 역시 중요하다.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무원 사회가 고쳐지지 않으면 피해는 전 국민에게 간다. 모든 공무원이 처음부터 훌륭하지는 않지만 훌륭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성과중심의 체계를 확립시켜야 한다. 싱가포르의 매년 20명의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 리더로 성장하게 한다. 우리 사회도 2트랙을 통해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임금체계와 성과중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공무원이라고 급여를 무조건 적게 받는 것이 아닌 일한만큼 주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안일·복지부동한 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저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부, 헌혈, 재능 나눔과 같은 대국민 봉사를 통해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여 3년에 걸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체 공무원은 108만명인데 이 108만명의 가족이나 주위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경우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생각, 배려가 생겨날 것이라 본다. 3년에 걸쳐 공무원 전원을 교육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교양을 갖추고 시대흐름을 아는 공무원을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읽어야 할 필독권장서 등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작은 것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생각의 혁신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칠겠다.

V.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무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작은 실행들

시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을 섬기고 존중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가치로 책임성과 청렴성, 전문성, 헌신성 등이 요구된다.

■ 질의응답

송대희/좌장

거의 한 시간 동안의 열강이었는데 함축적이고 흥미로워 10분으로 느껴졌다. 보기 드문 발표였다. 말씀 중에 공무원들은 자기 내부를 보고 있는데 결국 민간은 고객을 생각하면서 인사를 하고, 고객에 다가갈 수 있는 차원에서 전문가를 키웠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렇게 못했다. 공무원의 인재풀이 우수함에도 활용할 수 없는 아쉬움을 들을 수 있었다.

한정탁/한국수력원자력 관리본부장

처장님의 인사혁신 방향 잘 들었다. 한수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건의사항을 드린다.

한수원의 2직급 이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대상이다. 그리고 현재 한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어렵게 잠정합의를 하고 지금 투표 중이다. 1만명 이상의 초대형 공기업 중 처음 도입하는 것이라 노조설득도 어려웠으나 여러 노력을 통해 합의해서 진행 중이다. 그런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별도직무를 맡게 된다. 즉 1직급이든 2직급이든 계급장을 떼게 되는데 한수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3년간 원전 관련 기업에 재취업 제한이 되어 있다. 임금피크제 대상 기간 중에는 재산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본사 처장급의 30% 이상이 외부 출신이다. 저 역시 외부공모를 통해 입사하였으며, 외부출신 간부들에게 2~3년 안에 본인의 노하우를 한수원에 주고 나가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들어올 당시에는 재

취업금지가 없었다. 공공부문에 노하우 전수 이후에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으면 한다. 이러한 부분이 보장되어야 유능한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근면/인사혁신처 처장

의견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여 반영하겠다. 민간에서 공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비교적 완화하도록 되어 있다.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안기영/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공직사회를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다. 공무원들의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변화가 가능하며 변화되더라도 다시 무력화되기도 한다. 개방형 공모제 역시 제도로서 정착하려면 쉽지 않은 과정을 겪는다. 공공기관의 인력운용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공공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공공정책국과 협력하여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

이근면/인사혁신처 처장

개방형 직위가 생긴 지는 15년이 되었다. 15년 동안 실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각종 조항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지금 공무원제도는 우수하나 운영과 집행에 문제가 많다. 좋은 인재를 공직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와

야 한다.

공익은 대국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적영역에서의 가치이다. 공익에는 효율이나 비용을 따질 수 없으나 그 나머지는 효율이어야 한다. 효율과 공익은 구분이 가능하다.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영역은 공익의 부분이다.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이고 이에 맞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공공기관이 효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2배인데 공무원 수는 훨씬 적다. 임금 피크제는 혁신 자체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누구를 위한 공공기관인가를 유념해야 한다.

이원희/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직무능력 중심의 신규직원 선정을 실행하는 데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국민연금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통일비용이 큰 이슈이다. 통일이 될 경우 통일비용의 반 이상이 국민연금이 감당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조직원과 같이 공유하고 미래 대비를 하려다 보면 벽이 느껴진다. 모든 평가나 체계가 현재 중심으로 돌아가 미래 대비에 대한 것이 실제로 조직 안에서 공유·구현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인재를 양성하려는데 공직사회조차도 국제적 훈련이 제한되면서 공공분야는 더 제한되는 흐름이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물꼬를 터주셔서 투자적 성격의 다양한 연수, 학위과정 등을 더 빠른 속도로 추진하셨으면 한다. 공직사회보다 더 경직된 것이 공공분야이다. 공무원 외에도 공공기관처럼 국민 대상 서비스를 하는 기관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공단의 경우 여성 직원이 46% 이상이다. 물론 직급별로는 다른 비율이며 주로 하위직이 몰

려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에서 정원 산정 등이 지금처럼 되어서는 저출산 극복이나 기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이 100이라고 산정을 해준다면 여성직원에 따른 정원은 105~110을 줘야 성별 차이 없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이전까지 된 상황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

이근면/인사혁신처 처장

인사혁신처에 오고 난 이후 각계각층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며 저 역시 공공분야의 구조에 대한 고민이 많다. 다만 일단 글로벌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다. 공공은 제 업무를 설명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해외 글로벌 훈련과 관련해서는 예산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평소 국격에 맞는 국제기구에 진출해야 하는데 국제기구가 국가의 이익에서 중요하다. 공무원이 국제기구에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공공기관은 결국 세계를 봐야 한다. 공공기관의 효율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안다. 중앙정부 역시 46%가 여성이며,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크다는 점을 느꼈다. 인사혁신처는 채용에서 배치, 공급하는 부처인데 그 배치를 늘리고 있다. 그 정원에는 휴직이나 비근무자에는 정원으로 잡지 않는다. 휴직자를 제외하고 정원을 잡아야 한다. 현원을 고려한 정원 산정이 필요하다.

마무리말씀

송대희/좌장

오늘 처장님께서 좋은 사례를 많이 들어주셨다. 중국이 아직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데 세계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풍토 혁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포럼 발표와 참석 감사드린다. KIP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5-08

요약

- OECD는 OECD 회원국과 EU 회원국, 그리고 G20 회원국 및 주요 신흥국 등 56개국의 조세 행정 체계와 우수 행정사례에 대한 내용을 담은 *Tax Administration 2015* 보고서를 2015년 8월 11일자로 발표함
- OECD는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루는 Update on 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s: A Pathway to Tax Compliance 보고서를 2015년 8월 7일자로 발표함
 - 동 보고서에서는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에 대한 지침과 47개국의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에 대한 서베이 내용을 포함함
- 프랑스 국회는 프랑스의 탄소세(carbon tax)를 2020년까지 현재의 4배 가까이 상승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에너지대체법(energy transition law)」을 2015년 7월 22일에 입법함
 - 에너지대체법에 따르면 현재 미터톤(metric ton)당 14.5유로인 탄소세는 2020년까지 56유로로 상승하고 2030년에는 미터톤당 100유로까지 상승하게 됨
- 프랑스는 특정 기계설비장치에 대해 세무상 가

속상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성장과 경제 활동법(Law on Growth and Economic Activity)」을 2015년 8월 5일에 발표함

- 「성장과 경제활동법」에 따라 2015년 4월 15일부터 2016년 4월 14일의 기간 중 취득 또는 임차한 특정 기계설비장치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40%까지 가속상각을 인정함

- 이탈리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리아 과세관청과 사전합의(Advance ruling)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을 2015년 8월 6일자로 발표함

- 동 법령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크게 제고하고 일반적으로 더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외국인 투자관련 조세쟁송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탈리아는 R&D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지침을 담은 시행령(Ministerial Decree)을 2015년 7월 29일자로 발표함

- 시행령에 따르면, 2015-2019 과세연도 중, 직전 3개년의 평균 R&D 관련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고속권 중업원과 적격 위탁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의 50% 만큼 공제함

- 영국 정부는 정부재정의 흑자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5 하계 예산안을 7월 8일에 발표함

- 소득세, 상속세 등에 대하여 세율을 낮추거나, 공제를 확대하여 개인의 세부담을 낮추었음

- 법인세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율 인하, 세액공제 등의 감세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함
 -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조세회피, 탈세에 대하여 자료 제출의무 부여 등의 세무관리 행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함
- 오스트리아 의회는 2015년 7월 7일에 과세연도 2015/2016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킴
 -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2015년 5월 초안을 공개하고, 최종 개정안을 2015년 6월 의회에 제출하였음
 - 이번 개정의 주요한 내용은 소득세율의 구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 점이며, 전반적으로 과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짐
 - 벨기에 연방정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고 간접세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2015/2016 예산안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새로운 “투기과세”를 도입하고,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술, 담배 등에 대한 소비세는 인상함
 - 2014년 1월에 종료된 은닉자산에 대한 자발적 신고에 따른 조세사면제도를 추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힘
 - 그리스는 2015년 3월에 도입한 특정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 특정 비용에 대한 제재를 위해 26%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유럽위원회가 규정한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따라 폐지할 방침임
- 호주 재무부는 2015년 8월 4일 다국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보고와 강화된 가산세에 대한 법률안을 공개함
 - 이 법률안은 국가별 보고에 대한 새로운 OECD 기준을 도입하고, 조세회피나 세원잠식을 실행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행정적 가산세를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두 법안은 2015년 9월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별 보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가산세는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호주 의회 상원 경제위원회는 2015년 8월 4일 전자화폐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공개함
 - 전자화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잠재적 영향 및 위험을 고려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소비세에 있어서 전자화폐를 호주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간주하도록 입법하고, 자본소득세, 소득세, 부가급여세 측면에서는 추가 검토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1. OECD는 각국의 조세행정체제와 우수사례들을 비교하는 *Tax Administration 2015* 보고서를 발표함¹⁾

- 2015년 8월 11일 OECD는 OECD 회원국과 EU 회원국, 그리고 G20 회원국 및 주요 신흥국 등 56개국의 조세행정 체제와 우수행정사례에 대한 내용을 담은 *Tax Administration 2015* 보고서를 발표함
 -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각국 과세관청에 대한 설문조사(survey) 결과, 전략계획과 연간 성과보고서 등 각국 과세관청의 주요 보고서 및 기타 OECD 조세 간행물 등에 대한 조사로부터 수집한 것임
- 여러 국가들은 조세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 및 조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과세관청의 강화된 독립성, 직/간접세 행정의 통합(몰타), 일반조세와 관세행정의 통합(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일반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합하는 연구와 계획안의 수립(그리스, 리투아니아)
 - 관리계층의 간소화를 통한 조직구조 개선, 업무절차의 통합 및 강화된 관리체계의 집중화(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오피스 네트워크의 간소화(크로아티아, 그리스, 노르웨이, 루마니아),
 - 새로운 서비스센터 설립(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 조사대상국 85%의 과세관청에서는 대기업 납세자

를 전담관리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고액자산가(high net worth individual)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접근법을 취하는 국가의 수는 적음

- 많은 국가의 과세관청에서는 고액납세자(large taxpayers)들을 대상으로 ‘협조적 납세협력 모델 접근법(co-operative compliance model approach)’을 사용함
- 각국 과세관청의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에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파악됨
 - 전반적인 조세행정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세격차 예측 방법론(tax gap estimation methodologies)-특히 부가세 행정에 대해서-에 대한 의존도 증가
 - 조세행정 부문 외 전반적인 공공부문 성과 대비 조세공무원에 대한 업무 평가
 - 납세자의 자가운영(self-manage)을 위해 개발된 디지털 상품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 개발
- 각국의 과세관청은 직원 채용, 직무개발, 업무평가, 성과관리, 직원 노령화 등 인적자원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음
- 여러 국가의 과세관청은 행정비용 감소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조직축소(downsizing)를 요구받고 있음(호주, 영국, 미국)

1) "Tax Administration 2015," OECD, August 11, 2015. (<http://www.oecd.org/ctp/administration/tax-administration-23077727.htm>)

- 정보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기관에 행정 기능과 지원을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VAT 징수 성과는 최근 각국 과세관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성과관련 자료와 각종 지표 및 추세는 과세관청의 성과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음
 - 많은 국가의 과세관청에 있어서 조세환급 업무는 중대한 업무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OECD 회원국의 VAT 관련 업무에서 더욱 중대하게 작용함
 - 일부 관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존의 고비용 수단(예: 직접 질의응답)에서 보다 효율적인 수단(예: 온라인 서비스)으로 변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OECD 회원국의 2011~2013년의 기간 중 조세부채금액(쟁송중인 부채 포함)은 순징수세액(net revenue collections)의 22~24%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온라인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 향상을 위해 각국 과세관청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한 공통된 우선순위로는 온라인 신고, 새로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 사이트 강화, 납세자 통합 계정 등이 존재함
 - 95% 이상의 과세관청은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OECD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국가에서 전자신고(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납세자) 사용비율이 75%를 상회하였음
 - 개인소득세의 사전신고 및 자동납부 제도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임
 - 납세대리인(tax intermediaries)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40% 이상의 국가에서 납세대리인과 관련된 제도가 없는 것으로 응답함
 - 60% 이상의 국가에서 주요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납세대리인에 대한 정기적인 서베이가 이루어지지 않음
 - 40% 가까운 국가에서 납세대리인과의 공식적인 협의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2. OECD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Update on 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s* 보고서를 발표²⁾
- 2015년 8월 7일 OECD는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다룬 *Update on 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s: A Pathway to Tax Compliance* 보고서를 발표함
 - 본 보고서에서는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에 대한 지침과 47개국의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결과를 포함함

2) "Update on 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s: A Pathway to Tax Compliance," OECD, August 7, 2015. (<http://www.oecd.org/ctp/administration/update-on-voluntary-disclosure-programmes-a-pathwaypto-tax-compliance.htm>)



- 일반적으로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은 과세관청이 특정한 조건하에 과거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불성실에 대한 시정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여자, 성실 납세자,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음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의 교환(exchange of information)과 각국 정부의 해외 탈세 감지능력을 보완해주는 수단으로, 보다 확장된 납세순응 전략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의 설계원칙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처음부터 성실납부한 경우보다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하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추후 탈세가 적발되는 경우보다 낮은 처벌을 받게 해야 함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프로그램의 목적, 범위, 조건, 신고 서류 등 신고의무 확립과 추가적인 정보 획득 기회, 그리고 홍보와 참여 유도 등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이 있음
- 성공적인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을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음
 - 목적과 조건이 분명해야 함
 - 입증 가능하고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세수증가로 이어져야 함
 - 일반적인 납세순응 및 이행체계와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함
 - 탈세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어야 함
 - 탈세자의 성실납세신고의무 이행을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함
 -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즉각적인 결과를 장기적 납세순응 개선을 위한 제도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함
- 조사대상국의 자발적신고 프로그램 관련 서베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가 | 비자발적 신고의 경우 | | |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 | | | | |
|-------|-------------|----|-----|-----|-----------------|-------|-------|-------|----|-----|
| | 본세 | 이자 | 가산세 | 금고형 | 관련 프로그램 / 법령 유무 | 본세 면제 | 이자 면제 | 가산세면제 | | 금고형 |
| | | | | | | | | 전액 | 일부 | |
| 아르헨티나 | ○ | ○ | ○ | ○ | × | | | | | |
| 호주 | ○ | ○ | ○ | ○ | ○ | ×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 × | 가능 | ○ | | × |
| 칠레 | ○ | ○ | ○ | ○ | ○ | × | × | | ○ | ○ |
| 중국 | ○ | ○ | ○ | ○ | × | | | | | |
| 코스타리카 | ○ | ○ | ○ | ○ | ○ | × | × | | ○ | × |
| 크로아티아 | ○ | ○ | ○ | ○ | × | | | | | |
| 체코 | ○ | ○ | ○ | ○ | ○ |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 | | | | |

| 국가 | 비자발적 신고의 경우 | | |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 | | | | |
|--------|-------------|----|-----|-----|--------------------|----------|----------|-------|----|-----|
| | 본세 | 이자 | 가산세 | 금고형 | 관련 프로그램 / 법령 유무 | 본세 면제 | 이자 면제 | 가산세면제 | | 금고형 |
| | | | | | | | | 전액 | 일부 | |
| 핀란드 | ○ | ○ | ○ | ○ | ○ |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 | 일부 | × | × | × |
| 독일 | ○ | ○ | ○ | ○ | ○ |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 × | 일부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 | | | | |
| 인도 | ○ | ○ | ○ | ○ |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 | ○ | × | 일부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 × | × | | ○ | ○ |
| 일본 | ○ | ○ | ○ | ○ | ○ | × | × | ○ | ○ | ○ |
| 저지 | ○ | ○ | ○ | ○ | ○ | × | ○ | ○ | | × |
| 대한민국 | ○ | ○ | ○ | ○ | ○ | × | × | | ○ | ○ |
| 라트비아 | ○ | ○ | ○ | ○ | ○ | × | × | ○ | ○ | × |
| 리히텐슈타인 | ○ | ○ | ○ | ○ | ○ | × |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 ○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 | × | × | | | |
| 몰타 | ○ | ○ | ○ | ○ | ○ | × | 가능 | ○ | ○ | × |
| 멕시코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 × | 일부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 × | × | | ○ | × |
| 러시아 | ○ | ○ | ○ | ○ | ○ | × | × | ○ | ○ | × |
| 싱가포르 | ○ | × | ○ | ○ | ○ | ×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 × | × | ○ | | ○ |
| 남아공 | ○ | ○ | ○ | ○ | ○ | ×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 ×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 × | × | ○ | | × |
| 터키 | ○ | ○ | ○ | ○ | ○ | × | × | ○ | | × |
| 영국 | ○ | ○ | ○ | ○ | ○ | × | × | | ○ | × |
| 미국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3. 프랑스 정부는 탄소세 인상을 포함한 「에너지대체법」을 입법함³⁾

- 2015년 7월 22일 프랑스 국회는 프랑스의 탄소세(carbon tax)를 2020년까지 현재의 4배 가까이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대체법」(energy transition law)을 입법함
 - 「에너지대체법」에 따르면 현재 미터톤(metric ton)당 14.5유로인 탄소세는 2020년까지 56유로로 인상하고 2030년에는 미터톤당 100유로까지 인상하게 됨
-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대체법」의 효과로 에너지 소비 감소와 녹색일자리(green job)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프랑스는 입법효과로 향후 1만개의 새로운 녹색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 에너지 소비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5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2030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32%까지 증대시킬 계획
 - 2025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켜 현재 75%에 달하는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50%까지 낮출 계획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4. 프랑스 정부는 특정 투자설비에 대해 가속상각을 인정하는 「성장과 경제활동법」을 입법함⁴⁾

- 2015년 8월 5일 프랑스는 특정 기계설비장치에 대해 세무상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성장과 경제활동법」(Law on Growth and Economic Activity)을 발표함
 - 기업들은 이러한 특별 가속상각으로 대략으로 13.3~15.2%의 법인세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성장과 경제활동법」에 따라 2015년 4월 15일부터 2016년 4월 14일의 기간 중 취득 또는 임차한 특정 기계설비장치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40%까지 가속상각을 인정함
 - 특별 가속상각비는 세무 목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이며 프랑스 회계기준상 인정되는 것은 아님
 - 가속상각 대상 자산으로는 다음의 기계설비가 있음
 - 산업적 제조와 가공에 사용되는 설비와 도구
 - 하역설비
 - 수질 또는 공기 정화 관련 시설
 - 증기, 열, 또는 에너지 생산 시설
 - 과학기술 연구 목적 장비 등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3) Tax Notes International, August 3, 2015, p. 405.

4) EY Global Tax Alert Library, 2015,08,13.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French-reform-of-RSU-awards-regime-and-increased-depreciation-allowance—finally-enacted)

5. 이탈리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사전합의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을 발표함⁵⁾

- 2015년 8월 6일 이탈리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리아 과세관청과 사전합의(Advance ruling)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함
 - 이탈리아 정부는 동 법령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크게 제고하고 일반적으로 더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외국인 투자관련 조세쟁송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탈리아의 기존 사전합의제도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배당, 사용료 지급, 고정사업장 관련 문제들로 한정되었으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됨
 - 다국적기업이 세무상 거주지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업의 자산에 대한 세무상 가치 사전합의
 - 이탈리아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과 이탈리아 거주자의 해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의 배분에 대한 사전합의
 - 최소 3천만유로를 이탈리아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들에 대하여는 조세납용의 부재와 인수합병 관련 세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합의
 - 선택적 납세협력 프로그램(elective cooperative compliance program)에 참여하는 납세자의 세무

신고 전 세무처리에 대한 사전합의

- 이탈리아에서 블랙리스트된(blacklisted) 국가에 소재한 기업과의 구매거래에 따른 대가지급의 세무상 비용처리에 대한 사전합의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6. 이탈리아 정부는 R&D 활동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지침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함⁶⁾

- 2015년 7월 29일 이탈리아는 R&D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지침을 담은 시행령(Ministerial Decree)을 발표함
 - 시행령에 따르면, 2015-2019 과세연도 중, 직전 3개년의 평균 R&D관련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고숙련 종업원과 적격 위탁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의 50%만큼 공제됨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R&D 활동으로는 아래의 활동이 포함됨
 - 실험적이고 이론적인 활동(experimental and theoretical work)
 - 상품, 가공공정,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계획된 연구와 조사 활동
 - 새로운 상품, 공정, 서비스의 정의, 계획 및 설계 활동
 - 비상업적 목적의 상품, 공정, 서비스의 생산 및 실험 활동

5) Tax Notes International, August 17, 2015. pp. 586-587.

6) Italy - Tax credit for R&D activities - Ministerial Decree published (07 Aug, 2015), News IBFD.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R&D 활동 관련 비용항목은 아래와 같음
 - 적격 R&D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속런 중업원의 임금
 - 실험 설비의 감가상각비
 -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한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
 - 특허권, 노하우 등록 및 구입을 위한 대가
 - 회계처리 확인을 위해 발생한 비용(5천유로 한도)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7. 영국-2015 하계 예산안⁷⁾

가. 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2015/2016 과세기간의 인적공제액 10,600파운드에서 2016/2017 과세기간은 11,000파운드로 인상할 계획임
 - 영국 정부는 인적공제액을 계속적으로 인상하여 최소임금(12,500파운드) 수준에 맞추어 공제할 예정임
 - 고세율구간(High rate)을 적용받는 소득구간 금액을 2015/2016 과세기간의 42,385파운드에서 2016/2017 과세기간은 43,000파운드로, 2017/2018 과세기간은 43,600파운드로 인상하기로 함

〈표 1〉 영국의 소득세율(2015/2016)

(단위: 파운드)

| 세율 | 과세표준 ¹⁾ |
|----------------------------|--------------------|
| 기본 세율(Basic rate) 20% | 10,600~42,835 |
| 고세율(Higher rate) 40 | 42,836~150,000 |
| 최고 세율(Additional rate) 45% | 150,000~ |

주: 1) 과세표준은 인적공제액 10,600파운드를 포함하였음
출처: 영국국세청(<http://hmc.gov.uk>)

-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협의는 9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임
 - 은퇴 이후 노후를 위해 개인의 저축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며, 현재는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임
- 연금소득 이외 소득과 관련된 세액공제 및 배당유효세율 규정을 정비함
 - 주택을 임대하는 납세자가 수선이나 집기 대체 등을 할 경우 소요된 비용 대신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던 감모손실 공제(The Wear and Tear Allowance)는 2016년 4월부터 실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됨
 -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2016년 4월부터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1년에 5천파운드를 공제하는 소득공제를 도입함
 - 배당 유효세율(Effective dividend tax rate)은 7.5%씩 높여 6.7억파운드의 세수입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mmer-budget-2015/summer-budget-2015>

〈표 2〉 영국의 배당유효세율

(단위: %)

| 세율구간 | 현행 | 개정 |
|---------|-------|------|
| 기본세율구간 | 0 | 7.5 |
| 높은 세율구간 | 25 | 32.5 |
| 추가 세율구간 | 30.56 | 38.1 |

출처: SUMMER BUDGET 2015 재구성

- 영국 정부는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범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함
 - 영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세금 부과의 불공평함을 수정하여 공평과세를 이루고자 함
 - 가디언즈의 HSBC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축구 선수, 정치인, 기업인 등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도함⁸⁾
 - 이전 과세기간 20년 중 15년 이상 영국에 거주하는 자는 세금 목적에서 영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임
 - 영국에서 태어난 거주자의 자녀가 영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비거주자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임

나. 법인세

- 영국의 법인세율은 2017년 4월 1일 이후 개시 사업 연도는 19%, 2020년 4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18%로 인하할 예정임
 - 법인세율의 인하로 세수 감소는 2020/2021까지 6.5억파운드에 이를 것이라고 밝힘

-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함
 - 예술적 가치를 위해 오케스트라가 지출하는 적격 비용에 대하여 25%를 공제하는 규정을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
 - 2016년 1월 이후부터 플랜트나 기계의 모든 적격 투자에 대한 연간 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는 2만 5천파운드에서 20만파운드로 영구적용됨
 - 현행은 일시적으로 2014년 투자분에 대하여 2016년 이전까지 20만파운드이고 2016년부터는 다시 25,000파운드로 공제됨

- 영국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은행의 이익에 대하여 8%를 추가적으로 부가하는 과세하는 새로운 은행세(Bank levy)를 도입할 예정임
 - 소규모 은행과 건축조합을 제외하기 위해 매년 2,500만파운드를 공제하는 것을 포함함

다. 상속세

- 영국 정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영세율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현행 영국의 상속세는 면세구간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2018년 4월까지 적용하기로 한 현행 면세구간(nil-rate band) 325,000파운드를 2021년까지 계속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 추가적인 면세구간(additional nil-rate band)은 2017/2018 과세연도에 십만파운드, 2018/ 2019

8) <http://www.theguardian.com/uk-news/2015/jul/08/non-dom-tax-status-abolished-individuals-born-uk-budget-george-osborne>



과세연도에 125,000파운드, 2019/2020 과세연도에 150,000파운드, 2020/21 과세연도에 175,000파운드가 될 것이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이전 가능함

- 추가적인 면세구간은 2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의 2파운드당 1파운드씩 차감하여, 순자산이 2억 7,500만파운드 이상은 0이 됨

- 영국 정부는 거주자의 범위에 대한 개정에 맞추어 상속세도 개정함
 - 거주자로 간주되는 납세자에 대한 상속세는 2017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라. 기타

- 영국은 조세회피와 탈세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관리를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 영국 국세청은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정보제공 및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특정 감면혜택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함
 - 조세회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은닉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함
- 2015년 7월 27일부터 영국의 조세간소화국(Office of Tax Simplification, OTS)은 임시부서에서 영구부서로 운영되며 2016년 재정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
 - 2010년 설립되어 정부에 복잡한 조세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임시부서로 운영되었으

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재무부 산하의 영구부서로서 독립적인 과업을 수행하게 될 것임

- 이전에 소규모사업에 대한 조세 복잡성을 검토하며 확인한 국민보험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과 소득세에 적용하는 규정과 절차의 차이를 바탕으로 2016년에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 OTS는 2016년에 소기업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주요 요인을 확인하여 우선 간소화해야 하는 분야의 선정과 간소화로 다른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초안을 제출할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8. 오스트리아-2015/2016 세법개정안 의회 통과⁹⁾

가. 소득세

- 오스트리아는 소득세율의 소득구간을 조정하여 600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에게 약 60억유로의 세부담을 낮추는 한편, 최고 세율구간을 신설할 예정임
 - 현행 최고 소득세율 50%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금액을 6만유로에서 9만유로로 인상함
 - 연간 과세소득이 11,000유로인 경우에 적용되던 36.5%의 현행 소득세율은 25%로 낮게 개정됨
 - 최고 세율구간에 55%의 추가 최고 세율구간을 신설하여 소득이 100만유로 이상인 납세자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임
- 계열사나 회사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직원할인(Employee Discounts)은 1천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9) http://www.parliament.gv.at/PAKT/PR/JAHR_2015/PK0852/

한도 내에서 판매가액의 20%까지는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신설함

- 근로자는 판매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직원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의 자본이익에 대한 세율 인상, 공제 폐지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1.2~2.4배 정도 높아짐

- 이러한 조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춘 대신 자본이익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균형재정을 이루고자 함
- 실현된 부동산의 처분이익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은 25%에서 30%로 인상함
- 자본이익의 50% 한도로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매년 2%)분을 차감하는 규정을 폐지할 예정임
-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감가상각 한도는 현행 3%에서 금융이나 보험사에 적용하던 감가상각 한도와 동일하게 2.5%로 제한되며 이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부동산의 무상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액을 시가(Market Value)로 개정하고 누진세율을 새로 도입함

- 당초 세대간의 부동산 무상양도는 과세가액을 세 차례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물가상승분을 차감하게 되어 유리하게 규정된 측면을 개정을 통해 조정함
- 무상양도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5년 12월 3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됨

〈표 3〉 오스트리아의 양도소득세율

(단위: 유로)

| 세율 | 양도소득 |
|------|-----------------|
| 0.5% | 0~250,000 |
| 2% | 250,001~400,000 |
| 3.5% | 400,001~ |

출처: tax reform 2015/16-Finale in the Bundesrat 재구성

나. 법인세

■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소득계산시 CO₂ 배출기준을 도입하고 현행 소득부과 상한금액을 인상함

-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차량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역사적 원가에 1.5%를 매달 과세소득으로 산정함
 - 사적사용은 직원에게 제공한 법인차량으로 개인적인 일정(회사와 자택간의 운행을 포함함)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으로 처리함¹⁰⁾
 - 개인소득을 과세하며 월 평균 500km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과될 과세소득에 50%로 산정함
- 환경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CO₂ 배출기준(130g/km)에 따라 소득부과율을 차등적용하기로 함
 - CO₂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득부과율을 1.5%에서 2%로 인상됨
 - CO₂ 배출기준의 한도 이내의 자동차는 여전히 1.5%로 과세소득을 계산함
 - CO₂ 배출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소득 계산하지 아니함

10) the 2012 tax book(https://english.bmf.gv.at/services/publications/Tax_book_2012_En_fin.pdf?4vtpu3)



- 사적사용으로 계산되는 최대 과세 금액의 한도는 EUR 720에서 EUR 900으로 증가함
- 유보이익을 계속적으로 이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을 우선하는 규정을 마련함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영업이익의 배당과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지분의 상환을 선택할 수 없으며, 우선적으로 영업이익을 배당한 후에 지분을 상환하도록 규정함
- 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에서 27.5%로 인상되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계속하여 25%로 유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9. 벨기에-‘Tax Shift’ 방안 발표¹¹⁾

- 7월 23일 벨기에 연방정부는 사업자나 근로자의 세부담은 낮추고 간접세의 부담을 높이는 “조세대체(Tax Shift)”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벨기에 정부는 EU에서 요구하는 적자상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2.5%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금년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9.78억유로의 재정을 마련하기로 함
- 개인의 구매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2018년까지 72억유로의 조세대체를 시행하기 위한 세제의 개정을 시행함
- 벨기에 정부는 새로운 과세체계로 투기과세

(speculation tax)를 신설하여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현행 규정에 따르면, 투기나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개인의 자본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외에는 33%로 과세됨
- 정부는 자본이득과세의 형식으로 취득 후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상장주식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25~27%의 세율로 과세할 예정임
- 현행 규정에 따라 33%로 부과되던 소득에 대하여 투기과세 25%가 부과될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될 여지가 있음
-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에서 27%로 인상되되, 중소기업(SME)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15%를 적용함
- 일반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은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25%를 적용함
- 현금출자 후 3년내 SME의 비우선주에 대한 배당과세에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평균 직원 수 : 50명
 - 연간매출 (VAT 제외.) : 730만유로
 - 총자산 : 365만유로
- 저소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구간을 2006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
- 월 100유로의 세후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면세점은 대략 2,400유로 수준이 될 것임
- 추가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30%의 최고세율 구

11) 벨기에 연방정부의 프레스룸(http://www.presscenter.org/files/ipc/media/source6892/Declaration_gouvernementale_-_Regeringsverklaring.pdf), <http://www.ey.com/>

간을 폐지할 것을 재무장관이 제안하였으나, 이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금번 개정에서는 제외됨

- 중소기업(SME)의 장기적인 생산성 제고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및 가속상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13.5%(소기업에 대해서는 20.5%)의 일회성 투자공제를 허용함
 - 중소기업은 유·무형형 자산에 대하여 가속 감가상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술, 담배, 디젤, 음료 등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할 방침임
 - 술,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할 것임
 -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6%에서 21%로 인상할 것임
 - 특정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건강증진세(Health tax)」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조세사면을 2017년에 재개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제정함
 - 벨기에는 신고되지 않은 자본소득에 대한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절차를 이전에 시행하였으며 이는 2014년 1월 2일에 종료되었음
 - 조세사면을 다시 시행할 경우 소득의 원천(상속, 배당 등)이나, 소득의 규모에 따라 10~50%를 부

과할 수 있으며, 매년 2.5억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10. 그리스: 특정 비용에 대한 26%의 원천징수세는 폐지함

- 그리스는 특정비용에 대하여 26%로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2015년 3월 21일에 제정하였음¹²⁾
 - 일반적으로 소득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과 달리, 다국적기업의 비용 중 개인이나 법인에 지급된 특정 비용에 대하여 제재하기 위함임
 - 다음의 조건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급된 비용은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됨
 - 소득세법 제6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취인이 비협조적인¹³⁾ 지역에 있는 경우
 - 수령인이 조세특혜를 받는 거주자
 - 이전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납세자의 사실상 관련있는 회사 등
 - 다만, 조세회피나, 탈세가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지출임을 납세자가 증명한 경우 상기의 해당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공제됨
- 2015년 8월 3일 EU는 그리스의 특정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과규정이 원천징수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함¹⁴⁾
 - 불가리아, 아일랜드, 시프러스는 그리스의 26%

12) http://www.pwc.com/en_US/us/tax-services/publications/insights/assets/pwc-greece-subjects-corporate-expense-deductibility-potential-tax.pdf

13) 세무행정예 비협조적인 지역은 안도라 외 28개 지역으로 그리스 정부가 지정함

14) <http://taxinsights.ey.com/archive/archive-news/greece-cyprus-ireland-and-bulgaria-law-on-26-withholding-tax-abolished.aspx>



세율보다 50%만큼 적은 13%의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특혜를 주고 있음

- 불가리아는 그리스의 특정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과규정이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며, 8월 3일 유럽위원회는 불가리아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함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는 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와 거래시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것임
- 2015년 8월 14일 그리스는 불가리아, 아일랜드, 시프러스와 특정 비용에 대해 적용하는 26%의 원천징수세를 폐지하기로 함
 - 현재 원천징수세 폐지의 시행일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못하였으며 추후 결정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11. 호주-재무부의 다국적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국가별 보고 및 강화된 가산세에 대한 법률안 공개¹⁵⁾

- 호주 재무부는 2015년 8월 4일 다국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보고(country-by-country reporting)와 강화된 가산세에 대한 법률안을 공개함
 - 이 법률안은 국가별 보고에 대한 새로운 OECD 기준을 도입하고, 조세회피나 세원잠식을 실행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행정적 가산세를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두 법안은 2015년 9월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

를 거쳐 국가별 보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가산세는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국가별 보고와 강화된 가산세는 연간 전 세계 매출이 1억호주달러 이상인 기업들에 적용됨
 - 매출액의 산정은 호주 소득세법(subsections 177DA(5) to (7) of Pt IVA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에 따라 이루어짐
 - 매출액 산정에 대한 소득세법도 다른 법률 개정안(exposure draft of the Tax Laws Amendment (Tax Integrity Multinational Anti-Avoidance Law) Bill 2015)에 의해 입법되는 것으로 현재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연간 매출액이 1억호주달러 이상인 기업은 국가별 보고가 포함된 연차보고서(annual statement)를 호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이러한 보고서는 과세관청이 이전가격의 평가를 수행하는 데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임
 - 연차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별 정보, 마스터파일, 지역파일 등이 포함될 것임
 -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국가별 정보
 - 다국적기업의 대략적인 수준의 사업활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마스터파일
 - 호주 기업의 운영 및 특수관계자와의 국가 간 거래를 설명하는 지역파일

15) Australian Government-The Treasury(<http://www.treasury.gov.au/ConsultationsandReviews/Consultations/2015/Multinational-tax-avoidance>).

- 조세회피 또는 세원잠식을 실행하는 연간 매출액이 1억호주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기존 자산세의 두 배를 적용함
 - 따라서 최대 120%의 자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¹⁶⁾
 - 다만, 이러한 부과사유가 합리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다면(reasonably arguable) 제외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12. 호주-의회 상원 경제위원회의 전자화폐에 대한 검토보고서 공개¹⁷⁾

- 호주 의회 상원 경제위원회(Economics References Committee)는 2015년 8월 4일 전자화폐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는 보고서(Digital currency-game changer or bit player)를 공개함
 - 전자화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잠재적 영향 및 위험을 고려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전자화폐의 세무정책, 규제체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대응금융체계 등을 다루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소비세(Good and Service Tax)에 있어서 전자화폐를 호주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간주하도록 입법하고, 자본소득세, 소득세,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 측면에서는 추가 검토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 위원회는 소비세 측면에서 이전의 공개된 과세관청의 지침과 달리 전자화폐를 통화로 간주하여 비교

세되도록 법률의 개정을 권고함

- 2014년 8월 호주 과세관청(Australia Tax Office)은 전자화폐에 대한 예비적인 과세지침을 공개하였는데 여기서 전자화폐는 재화로 보고 다른 재화 등에 대한 이의 공급은 교환거래로 보아 소비세를 과세함¹⁸⁾
- 교환거래로 인한 이중과세 지침이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화폐의 공급에 대해 소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전자화폐의 공급을 비과세하기 위해 전자화폐에 대한 특별규정을 들 수 있으나, 보다 명확한 적용을 위해 전자의 방법인 통화에 전자화폐를 포함하고 이의 공급을 금융용역으로 보도록 법률의 개정을 권고함
- 위원회는 자본이득세 등의 측면에서는 결론은 내리지 않고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 이전 지침에서는 전자화폐를 자본소득세, 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음
 - 위원회는 소비세에 대한 의견일치와는 달리, 자본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 일부에서는 소비세와 같이 통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국가 간 공통된 견해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주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16) Ernst & Young, "Australia releases draft law implementing country-by-country reporting and increasing penalties for tax avoidance and transfer pricing," *Global Tax Alert*, 7 August 2015, p. 3.

17) The Senate: Economics References Committee, Digital currency-game changer or bit player,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5, August 2015(http://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Senate/Economics/Digital_currency/Report).

18) 『조세동향』(14-09) 참조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용커 유럽집행위원회 의장 등 5명의 대표¹⁾들이 유럽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강화 계획을 발표함(2015.6.22.)²⁾
 - (배경) 2014년 10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원활한 EMU 기능을 위한 경제 정책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경제 정책 공조, 결속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
 - (내용) 보고서(*Completing Europe's Economic and Monetary Union*)는 유럽 경제통화동맹 강화 및 완결을 위한 3단계 방안을 담고 있음

- (1단계-EMU 강화(2015.7.1~2017.6.30)) 기존 기구 및 조약을 활용하여 국가별·유로 지역 수준의 책임 있는 재정 정책 달성, 금융 동맹 완성, 민주적 책임성 강화, 경쟁력 및 구조적 수렴(convergence) 촉진
- (2단계-EMU 완결) 수렴을 위한 합의된 법적 벤치마크를 설정하는 등 구속력 있는 수렴 절차를 도입
- (3단계-최종(최장 2025년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진정한 EMU가 단일 통화를 공유하는 EU 회원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안정과 번영을 제공할 것
- (향후 절차) 1단계와 2단계 사이의 과도기를 준비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2017년 봄에 향후 절차의 개요를 담은 백서를 발표할 예정

〈표 1〉 유럽 경제통화동맹 완성을 위한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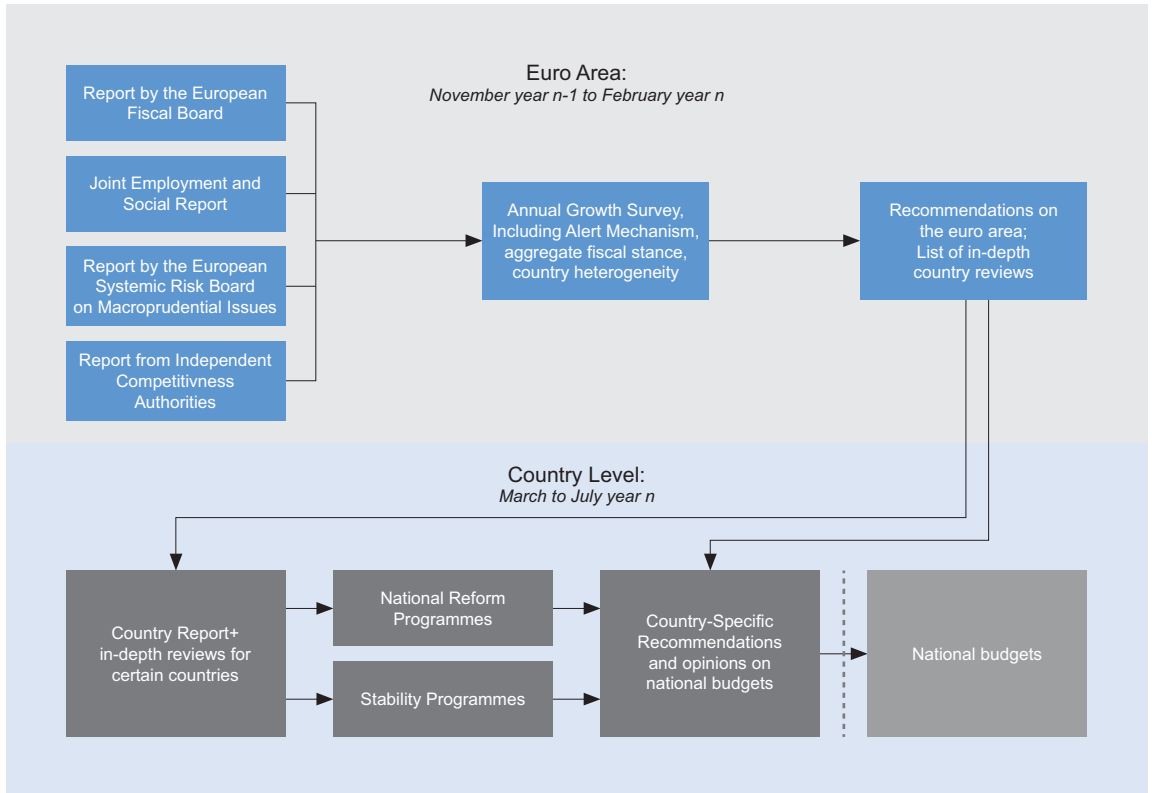
| 구분 | 내용 |
|---------------------------|--|
| 경제동맹 (Economic Union) | - 수렴, 고용, 성장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 지역 시스템의 Competitiveness Authorities 도입 • 거시경제불균형 절차 이행 강화 • 고용과 사회적 성과 강조 • 개편된 European Semester에서 경제 정책 공조 강화 |
| 금융동맹 (Financial Union) | - 은행동맹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동맹 도입 -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강화 |
| 재정동맹 (Fiscal Union) | - Advisory European Fiscal Bo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목표와 관련한 예산 운영 방식을 유럽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 EU 재정 프레임워크에서 권고 제공 |
| 민주적 책임, 합법성, 제도적 강화 | - European Semester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ropean Semester의 일환으로 의회 통제 강화 - 유럽 의회와 국가별 의회의 공조 강화 등 |

출처: European Commission, *Completing Europe's Economic and Monetary Union*, 2015.

1) Jean-Claude Juncker(유럽집행위원회 의장), Donald Tusk(유로존 정상회의 의장), Jeroen Dijsselbloem(유로그룹 의장), Mario Draghi(유럽중앙은행 총재), Martin Schulz(유럽 의회 의장)

2) 출처: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5240_en.htm?locale=en

[그림 1] 통합된 European Semester



출처: European Commission, *Completing Europe's Economic and Monetary Union*, 2015.

- 유로지역 정상, 그리스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 개시에 합의(2015.7.13.)³⁾
 - (경과) 그리스 금융지원 관련 논의를 위해 유로지역 정상회의 및 유로그룹 재무장관회의 개최
 - * 그리스 2차 구제금융 만료 이후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주요 논의 경과는 다음 표를 참고
 - (내용) 유럽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

anism: ESM)를 통한 그리스 금융지원 프로그램 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

- (규모) 구제금융에 요구되는 금액은 820억 ~860억유로로 추산됨
- (단기 자금 지원)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단기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브리지 파이낸싱(bridge financing)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

3) 출처: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news/2015/07/20150713_en.htm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pean-council/2015/07/12/>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group/2015/07/13/>



- ☞ 단기 자금 지원 규모는 7월 20일까지 70억 유로, 8월 중순까지 추가 50억유로로 추산됨
- ☞ 유로그룹은 임시 실무단을 구성해 브리지 파이낸싱 관련 가능한 옵션들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
- (조건) 약 350억유로 규모의 성장·고용 패키지가 수반된 엄격한 조건 적용
- 향후 일정
 - 그리스 등 각국 의회에서 지원프로그램 협상

- 착수를 위한 국가별 절차 개시
- * 국가별 절차가 완료되면 유로그룹이 새로운 양해각서에 대한 그리스와 의 협상 권한을 관련 기관에 부여
- 그리스는 7월 15일까지 유로지역 정상회의의 성명에서 발표된 첫 번째 조치⁴⁾들을 실행하고, 협상과 동시에 합의된 조치를 계속 이행해야 함
- ESM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공식 결정

〈표 2〉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EU의 주요 논의 경과

| 일자 | 구분 | 내용 |
|----------------|-----------------------------|---|
| 2015.7.5~7.6 | EU 집행위원회, 그리스 국민투표 관련 성명 발표 | - EU 집행위원회는 구제금융 관련 그리스 국민투표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힘 ¹⁾ - 그리스와 다른 유로 국가들의 간극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하며 그리스의 우선순위는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 회복,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신속한 개혁 이행임을 밝힘 ²⁾ |
| 2015.7.7 | 유로지역 정상회의 개최 | - 그리스의 ESM 지원 요청과 관련해, 정상들은 기존 의무와 공통 규정에 모두 부합하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임 ³⁾ - 7월 9일까지 그리스 정부가 구체적 개혁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로이카가 개혁안을 평가할 예정 - 용커 의장은 그래픽트 반대 의사를 표명 ⁴⁾ |
| 2015.7.8 | 그리스, ESM 지원 요청 | - 그리스는 유로그룹 의장과 ESM 위원장에게 3년 기한 용자(loan) 형식의 안정화 지원을 요청 ⁵⁾ |
| 2015.7.8 | EU 의회 논의 | - 그리스 사태 관련 치프라스 총리의 연설 및 EU 의회 논의 ⁶⁾ |
| 2015.7.12~7.13 | 유로지역 정상회의 개최 | - 그리스에 대한 ESM 금융지원 프로그램 협상을 개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 - 그리스에 대한 이행 요구 사항 등을 담은 성명 ⁷⁾ 발표 |
| 2015.7.11~7.13 | 유로그룹 회의 | - 유로그룹은 그리스가 요청한 ESM 금융 지원과 새로 제출한 개혁 아젠다에 대해 심층 논의함 - 금융지원 관련 협상 개시 합의에 대한 후속 논의 진행 |

주: 1)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EMENT-15-5310_en.htm
 2)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EMENT-15-5314_en.htm
 3) European Council,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summit/2015/07/07/>
 4)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news/2015/07/20150706_1_en.htm
 5) EU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assistance_eu_ms/greek_loan_facility/index_en.htm
 6) European Council,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5/07/08-tusk-concluding-remarks-european-parliament/>
 7) European Council,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5/07/12-euro-summit-statement-greece/>

출처: 2차 구제금융 만료일(2015.6.30)부터 현재(2015.7.15)까지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해 EU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을 표로 정리함

4) 유로 정상회의의 성명(2015.7.12)에서 그리스가 다음 조치들을 법안화할 것을 요구
 - (7월 15일 기한) 부가세 시스템 간소화, 과세기반 확대,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연금 시스템의 장기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조치, 통계청의 법적 독립성 확보, 협상 이전에 재정위원회 가동, 재정수지 흑자 목표 위반시 반자동 지출 삭감 도입 등
 - (7월 22일 기한) 사법 시스템 개선, 은행회생 및 정리지침(BRRD) 법제화

- EU 재무장관회의 개최, 경제통화동맹, 의장국 업무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2014.7.14.)⁵⁾
 - (경제통화동맹(EMU) 관련) 6월 발표된 경제통화 동맹 강화 계획과 관련해 단기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
 - (의장국의 업무 프로그램) 의장국인 룩셈부르크가 업무 프로그램을 발표
 - EU 투자 계획 이행, 자본시장 통합, 금융 서비스 관련 법안 협의, 탈세 방지 등에 우선순위를 둘 예정
 - (국가별 정책 권고) 회원국의 경제, 재정, 고용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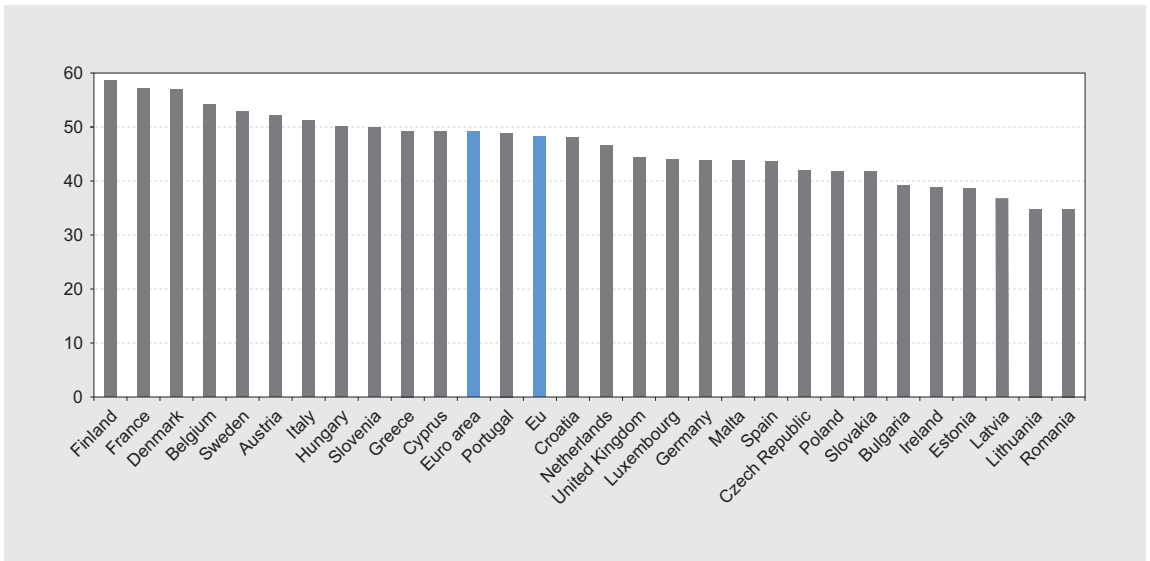
책 계획 관련 국가별 정책권고와 유로 지역 경제 정책에 대한 권고 발표

* 국가별 정책권고가 6월 EU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이후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공식 채택됨으로써 2015 European Semester의 정책 모니터 절차가 종료됨⁶⁾

- EU의 일반정부지출 통계 발표(2015.7.7.)⁷⁾
 - (규모) 2014년 EU지역의 일반정부 총지출은 6조 7천 10억유로로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48.1%를 차지
 - 유로지역 일반정부 총지출은 4조 9,610억유로

[그림 2] 2014년 EU 회원국의 일반정부 총지출

(단위: GDP 대비 %)



출처: Eurostat,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EU, 2015.7.7.

5) 출처: European Council: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cofin/2015/07/14/>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5/07/14-council-issues-recommendations-member-states/>

6)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국가별 정책권고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5년 상반기 재정동향』을 참고

7) 출처: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6899478/2-07072015-AP-EN.pdf/79714af9-c371-4631-8211-5dd0b321cb31>



로 GDP의 49.0%를 차지

- (국가별)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비율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2014년 일반정부 지출 비율은 리투아니아·루마니아(34.9%)가 가장 낮고 핀란드(58.7%), 프랑스(57.2%), 덴마크(57.0%)가 높은 편임
 - 전년에 비해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비율이 감소한 국가는 그리스(-10.7%p)와 슬로베니아(-9.9%p) 등이고 증가한 국가는 키프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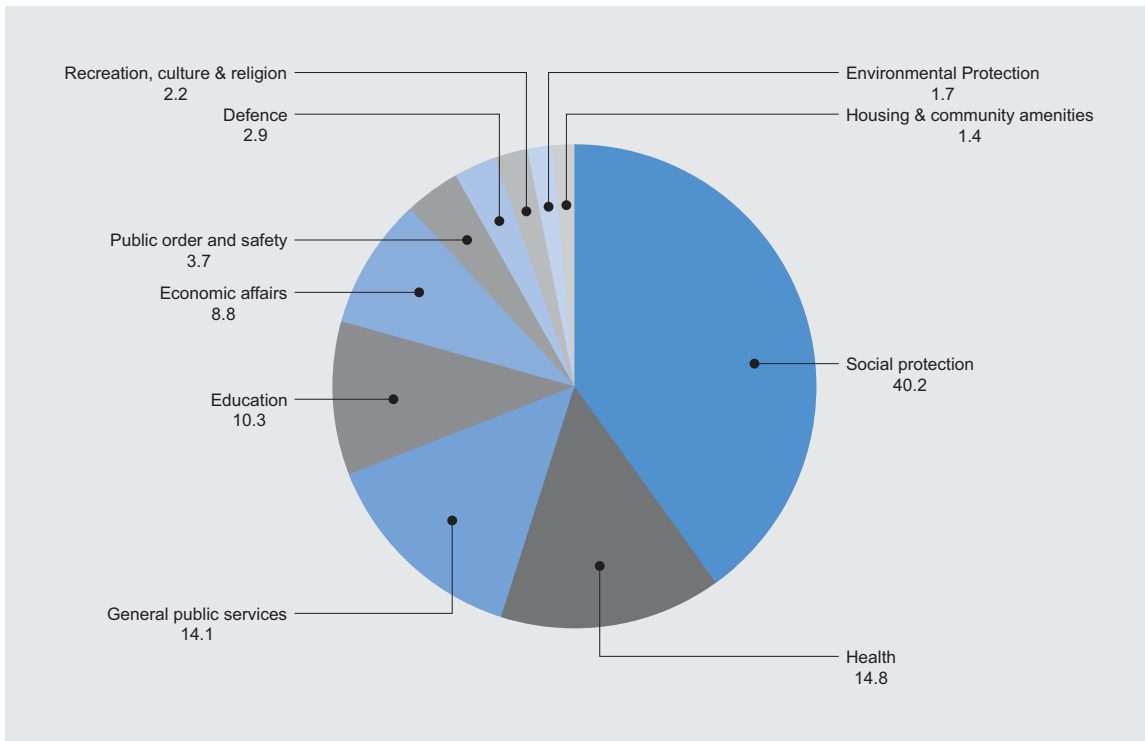
(+7.7%p), 몰타(+1.6%p), 오스트리아(+1.4%p) 등임

- (기능별)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관련 지출이 총지출의 4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건강(14.8%), 일반공공서비스(14.1%), 교육(10.3%) 등의 순서임(2013년 기준)⁸⁾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해란 연구원〉


[그림 3] 2013년 EU의 기능별 일반정부지출

(단위: %)



출처: Eurostat,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EU, 2015.7.7.*

8) 기능별 정부지출의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13년 기준임

 IMF

- IMF, 그리스 채무상환 불이행 공식 발표(2015.6.30.)⁹⁾
 - 게리 라이스(Gerry Rice) 대변인은 그리스가 12억 SDR(약 15억유로) 규모의 채무 상환에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
 - 그리스는 '채납국(arrears)'으로 규정되며, 현재의 채납액이 상환될 때까지 IMF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 현재 그리스 당국으로부터 상환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사회에서 이루어질 예정

- IMF, 그리스 13일 만기 채무상환 불이행 발표(2015.7.13.)¹⁰⁾
 - 게리 라이스(Gerry Rice) 대변인은 그리스가 13일 만기인 3억 6천만SDR(약 4억 5,600만유로) 규모의 채무 상환에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
 - 이에 따라 그리스의 총채납액은 현재 16억SDR(약 20억 유로)로 증가

- IMF, 『그리스 채무의 지속가능성 분석(DSA;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보고서 예비안 발표(2015.7.2.)¹¹⁾
 - (배경) 2014년 5월 경제조정프로그램 5차 검토에서 공공채무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 여름부터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 추가적인 채무 경감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
- 경제조정프로그램 5차 검토 결과 : GDP 대비 채무 비율이 2020년 128%, 2022년 117%로 전망
- 2014년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한 결과¹²⁾ : GDP 대비 채무 비율이 2020년 117%, 2022년 104%로 전망
- (구제금융 필요성 증가)
 - 2015년 초부터 정치상황이 변화하고 경제전망 급격히 악화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구제 금융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역전
 - ☞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하향 조정 : 2015년 3% → 1%, 2016년 4.5% → 2%
 - ☞ 민영화 진행 속도의 둔화 : 2014~22년 동안 230억유로 규모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지난 5년간 30억유로 규모만 진행
 - ☞ 경제성장률 둔화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유로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 실질 장기성장률을 1.5% 전망
 - ☞ 채납액 상환 문제 : 유럽중앙은행(ECB)에 70억유로를 20일까지 상환해야 하며, 다음 달 중순까지 추가로 50억유로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
 - ☞ 재정버퍼(buffers) 재구축과 단기차입금 상황
 - ☞ 금리인상에 따른 차입비용 증가 예상

9) 출처: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5/pr15310.htm>
 10) 출처: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5/pr15334.htm>
 11) 출처: <http://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3044.0>
 보고서: <http://www.imf.org/external/pubs/ft/scr/2015/cr15165.pdf>
 12) 2012년 11월 합의된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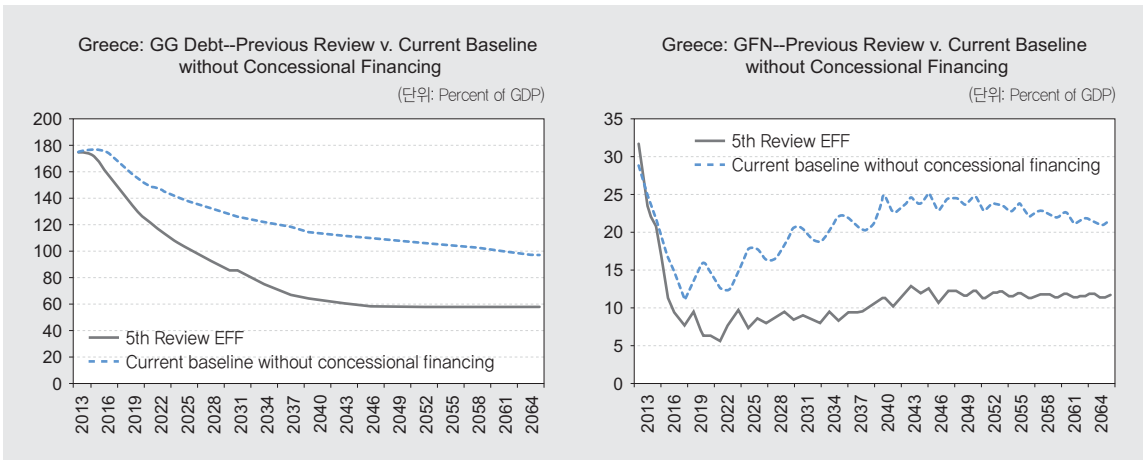


- (기준분석) 2015년 10월에서 2018년 말까지 500억유로의 신규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 중 360억유로는 유럽연합(EU) 채권단이 '양허적 조건'(concessional terms; AAA interest rates, long maturities, and grace period)으로 지원할 필요

- 양허적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조정 프로그램 5차 검토의 채무 전망과 갭을 좁힐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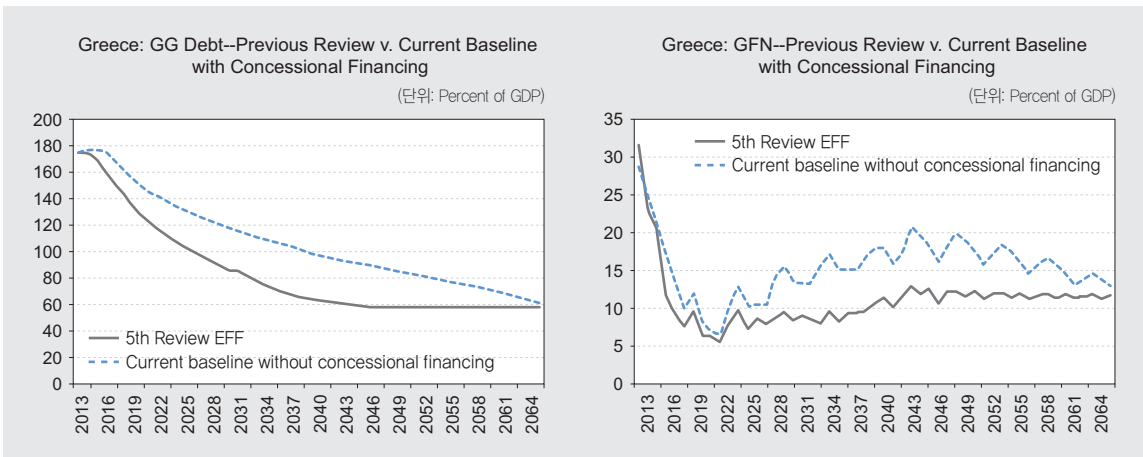
- ☞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리스의 채무비율은 2020년 150%, 2022년 140%로 높은 수준을

[그림 4] 양허적 자금 비지원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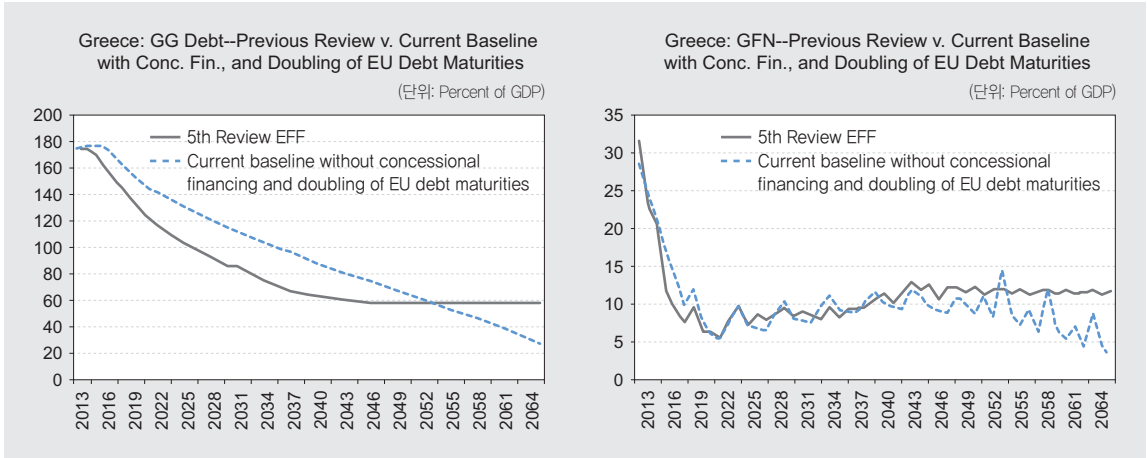


주: 일반정부 부채(GG: General Government Debt), 총필요자금(GFN: Gross Financing Needs)

[그림 5] 2015-18년 양허적 자금 지원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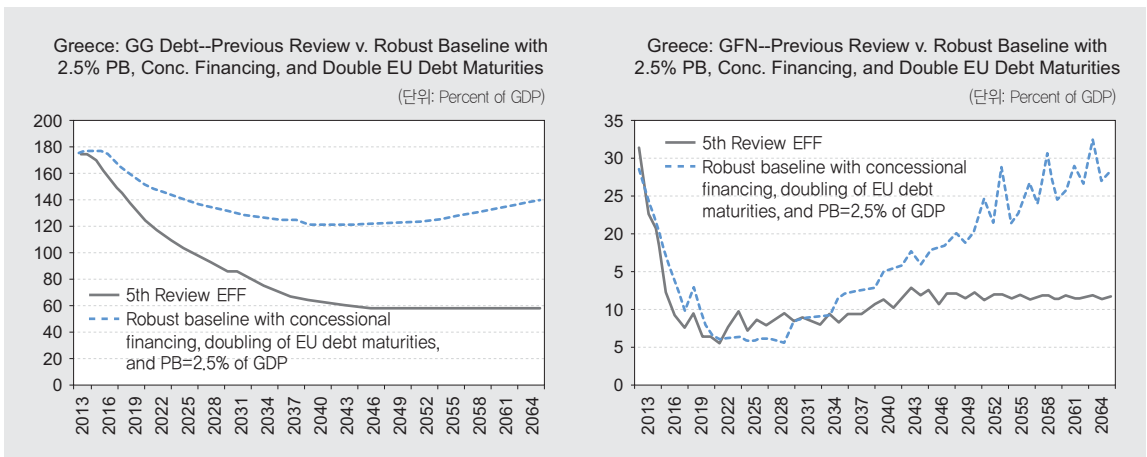
[그림 6] 2015-17년 양허적 자금 지원&만기연장 시



나타낼 전망
- 자금지원과 함께 기존 채무의 만기를 두 배로 (2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상환 유예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할 경우 채무지속가능성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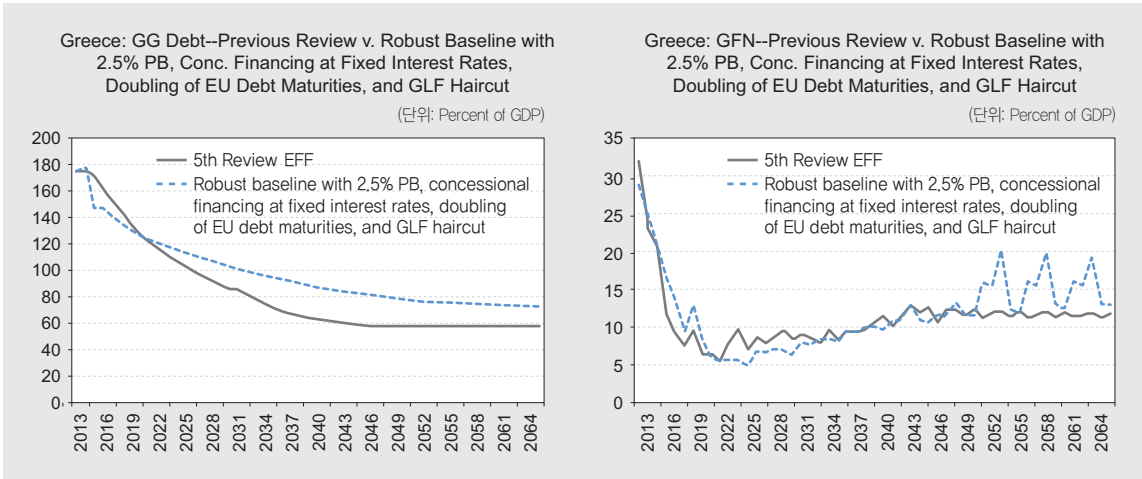
• (로버스트 기준분석) 그리스는 향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2.5% 이하, 실질GDP 성장률 1%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자금지원과 만기연장을 허용하더라도 채무가 지속가능하지 않음

[그림 7] 낮은 경제성장률 및 기초재정수지 가정 시





[그림 8] 채무탕감(haircut) 시행 시



주: Greek Loan Facility(GLF)

- (정책제안)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정 금리 조건의 양허적 자금지원 및 만기연장 뿐만 아니라 채무탕감(haircut) 조치가 필요
- IMF, '그리스 채무의 지속가능성 분석'(DSA;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수정 발표(2015.7.14.)¹³⁾
 - 채무전망 및 필요자금 금액을 수정하고 채무 상황이 '지속가능하지 않음'(unsustainable)을 재확인
 - 현재 GDP 대비 177%인 채무 수준이 2년 뒤에 20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채무전망을 기존 142%에서 170%로 상향 조정
 - 2018년 말까지 필요한 자금규모를 기존 500억 유로에서 850억 유로로 상향 조정
-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 Update 발표(2015.7.9.)¹⁴⁾
 - (경제전망) 2015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월 전망 대비 0.2%p 하향조정된 3.3%로, 북아메리카 지역의 저조한 1분기 실적이 하향조정된 주된 요인
 - (미국) 2015년 경제성장률은 1분기 저성장세로 인해 지난 전망치 대비 0.6%p 하락한 2.5%로 전망되나, 소비·투자 부문의 성장 요인이 여

13) 출처: <http://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3080.0>

보고서: <http://www.imf.org/external/pubs/ft/scr/2015/cr15186.pdf>

14) 출처: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update/02/index.htm>

보고서: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update/02/pdf/0715.pdf>

- 전히 건재
- (유로) 그리스를 제외한 유로지역의 경제는 내수 회복과 물가상승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2016년 각각 1.5%, 1.7%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일본) 자본투자 증가로 인해 1분기 예상외 성장을 이루었지만, 소비부진의 지속이 예상. 2015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전망 대비 0.2%p 하락한 0.8%
 - (신흥개도국) 낮은 상품가격과 대외 금융 여건 악화로 인해 2015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 대비 0.1%p 하향조정된 4.2%로 전망
 - (위험요인) 4월 전망과 유사하지만 하방위험이 강화
 - (단기) 금융시장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추가적인 미달러 강세
 - (중기) 선진국 및 신흥국의 낮은 중기 성장률, 상품가격의 추가적 하락 가능성, 중국의 성장률 둔화
 - (정책적 제언) 실질 및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진작 정책과 구조개혁을 적절히 병행
 - (선진국) 경기부양과 인플레이션 증가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인프라 투자 등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하는 한편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 지속
 - (신흥개도국) 수요확대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조세개혁 및 지출 우선순위 재설정 등을 통해 장기성장률 제고를 도모

〈표 3〉 세계경제전망

(단위: %)

| | | | 전망치 | | 4월 전망 대비 차이 | |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5 | 2016 |
| World Output ¹⁾ | 3.4 | 3.4 | 3.3 | 3.8 | -0.2 | 0.0 |
| Advanced Economies | 1.4 | 1.8 | 2.1 | 2.4 | -0.3 | 0.0 |
| United States | 2.2 | 2.4 | 2.5 | 3.0 | -0.6 | -0.1 |
| Euro Area | -0.4 | 0.8 | 1.5 | 1.7 | 0.0 | 0.1 |
| Germany | 0.2 | 1.6 | 1.6 | 1.7 | 0.0 | 0.0 |
| France | 0.7 | 0.2 | 1.2 | 1.5 | 0.0 | 0.0 |
| Italy | -1.7 | -0.4 | 0.7 | 1.2 | 0.2 | 0.1 |
| Spain | -1.2 | 1.4 | 3.1 | 2.5 | 0.6 | 0.5 |
| Japan | 1.6 | -0.1 | 0.8 | 1.2 | -0.2 | 0.0 |
| United Kingdom | 1.7 | 2.9 | 2.4 | 2.2 | -0.3 | -0.1 |
| Canada | 2.0 | 2.4 | 1.5 | 2.1 | -0.7 | 0.1 |
| Other Advanced Economies | 2.2 | 2.8 | 2.7 | 3.1 | -0.1 | 0.0 |
|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¹⁾ | 5.0 | 4.6 | 4.2 | 4.7 | -0.1 | 0.0 |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2.2 | 1.0 | -2.2 | 1.2 | 0.4 | 0.9 |
| Russia | 1.3 | 0.6 | -3.4 | 0.2 | 0.4 | 1.3 |
| Excluding Russia | 4.2 | 1.9 | 0.7 | 3.3 | 0.3 | 0.1 |



〈표 3〉의 계속

(단위: %)

| | | | 전망치 | | 4월 전망 대비 차이 | |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5 | 2016 |
| Emerging and Developing Asia | 7.0 | 6.8 | 6.6 | 6.4 | 0.0 | 0.0 |
| China | 7.7 | 7.4 | 6.8 | 6.3 | 0.0 | 0.0 |
| India ²⁾ | 6.9 | 7.3 | 7.5 | 7.5 | 0.0 | 0.0 |
| ASEAN-5 ³⁾ | 5.1 | 4.6 | 4.7 | 5.1 | -0.5 | -0.2 |
| Emerging and Developing Europe | 2.9 | 2.8 | 2.9 | 2.9 | 0 | -0.3 |
|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2.9 | 1.3 | 0.5 | 1.7 | -0.4 | -0.3 |
| Brazil | 2.7 | 0.1 | -1.5 | 0.7 | -0.5 | -0.3 |
| Mexico | 1.4 | 2.1 | 2.4 | 3.0 | -0.6 | -0.3 |
| Middle East, North Africa, Afghanistan and Pakistan | 2.4 | 2.7 | 2.6 | 3.8 | -0.3 | 0.0 |
| Sub-Saharan Africa | 5.2 | 5.0 | 4.4 | 5.1 | -0.1 | 0.0 |
|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 6.1 | 6.0 | 5.1 | 6.2 | -0.4 | 0.2 |
| World Growth Based on Market Exchange Rates | 2.5 | 2.7 | 2.6 | 3.2 | -0.3 | 0.0 |
| World Trade Volume (goods and services) | 3.3 | 3.2 | 4.1 | 4.4 | 0.4 | -0.3 |
| Imports | | | | | | |
| Advanced Economies | 2.1 | 3.3 | 4.5 | 4.5 | 1.2 | 0.2 |
|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 5.2 | 3.4 | 3.6 | 4.7 | 0.1 | -0.8 |
| Commodity Prices (U.S. dollars) | | | | | | |
| Oil ⁴⁾ | -0.9 | -7.5 | -38.8 | 9.1 | 0.8 | -3.8 |
| Nonfuel | -1.2 | -4.0 | -15.6 | -1.7 | -1.5 | -0.7 |
| Consumer Prices | | | | | | |
| Advanced Economies | 1.4 | 1.4 | 0.0 | 1.2 | -0.4 | -0.2 |
|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¹⁾ | 5.9 | 5.1 | 5.5 | 4.8 | 0.1 | 0.0 |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percent) | | | | | | |
| On U.S. Dollar Deposits(6 month) | 0.4 | 0.3 | 0.4 | 1.2 | -0.3 | -0.7 |
| On Euro Deposits(3 month) | 0.2 | 0.2 | 0.0 | 0.0 | 0.0 | 0.0 |
| On Japanese Yen Deposits(6 month) | 0.2 | 0.2 | 0.1 | 0.1 | 0.0 | -0.1 |

주: 1) 분기별 추정치와 전망치는 세계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비중의 90%를 설명하고 신흥개발도상국의 약 80%를 설명

2) 인도의 실적치, 전망치 데이터는 회계 연도 기준이며 생산 증가율은 시장 가격의 GDP 기준

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4)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Dubai), 미 서부텍사스의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14년 원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96.26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14년 56.73달러, 2015년은 63.88달러

참고: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경제규모에 근거하여 정렬되었으며 집계된 자료는 계절 조정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15, Table 1.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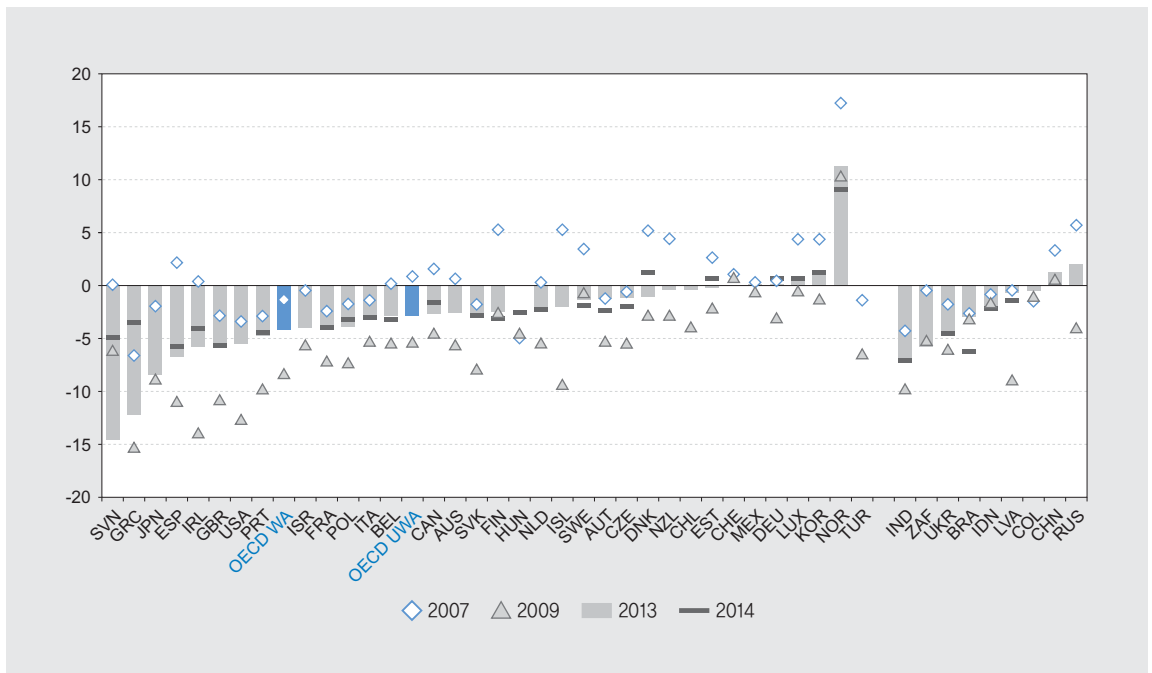


- OECD, *Government at Glance 2015* 보고서 발표 (2015.7.6.)¹⁵⁾
 - 한눈에 보는 정부 2015년 보고서는 OECD 국가의 거버넌스 혁신성과를 비교, 분석 및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이후 격년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포괄적 정부, 공공재정 및 경제, 공공부문 고용, 제도, 예산운영 및 절차 등 12개의 분야를 평가

- (공공재정 및 경제) OECD 회원국의 2013년 평균 재정수지는 GDP 대비 -4.2%로 2009년 저점 (GDP 대비 -8.4%) 이후 개선되었으며, 정부 총 지출 대비 투자지출 비중은 2009년 이후 저조한 모습을 보임
 -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슬로베니아 14.6%, 그리스 12.3%, 일본 8.5% 순이며, 한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 6개국만 재정흑자를 기록
 - 2013년 OECD 평균 일반정부 채무는 GDP 대

[그림 9]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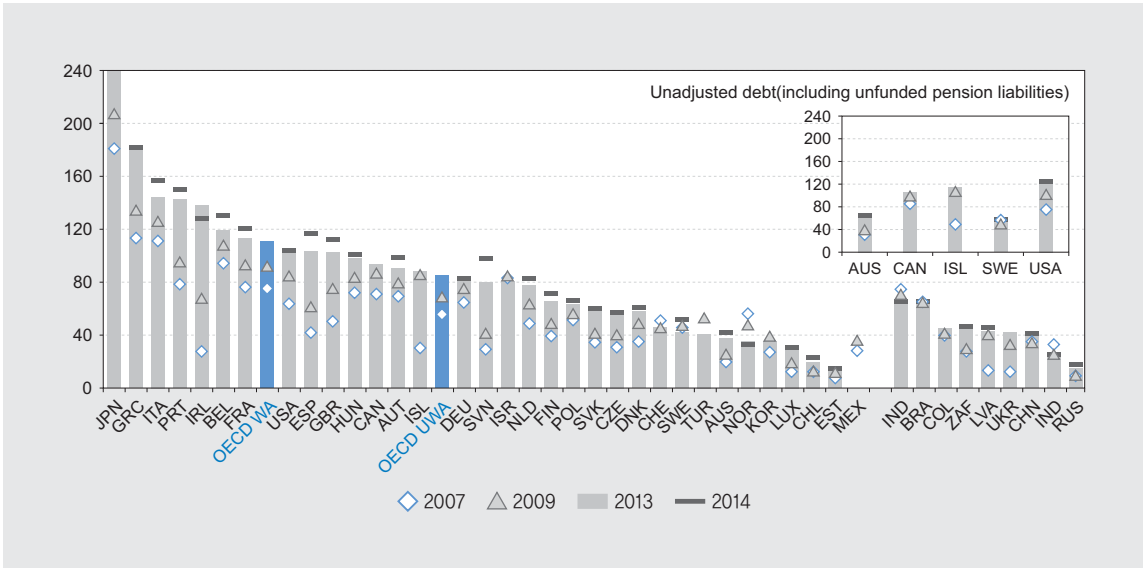
주: UWA(Unweighted average), WA(Weighted average)
출처: OECD, *Government at Glance 2015*, table 2.1.

15) 출처: <http://www.oecd.org/governance/govatag glance.htm>



[그림 10]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단위: %)



주: UWA(Unweighted average), WA(Weighted average)
출처: OECD, *Government at Glance 2015*, table 2.8.

- 비 109.3%이며, 2007년 이후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의 채무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
- 2013년 OECD 회원국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 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부문이 GDP 대비 32.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보건, 교육, 일반 행정서비스 부문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10% 이상의 지출비중을 차지
- 2013년 OECD 국가의 총지출 대비 투자지출 비중은 7.8%(GDP 대비 투자지출은 3.3% 수준)이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OECD 국가의 투자지출이 평균적으로 1.3%p 감소
 - ☞ 한국의 투자지출 비중이 17.2%로 가장 높고, 아일랜드는 4% 미만으로 가장 낮음

〈표 4〉 기능별 일반정부지출 구조(COFOG, 201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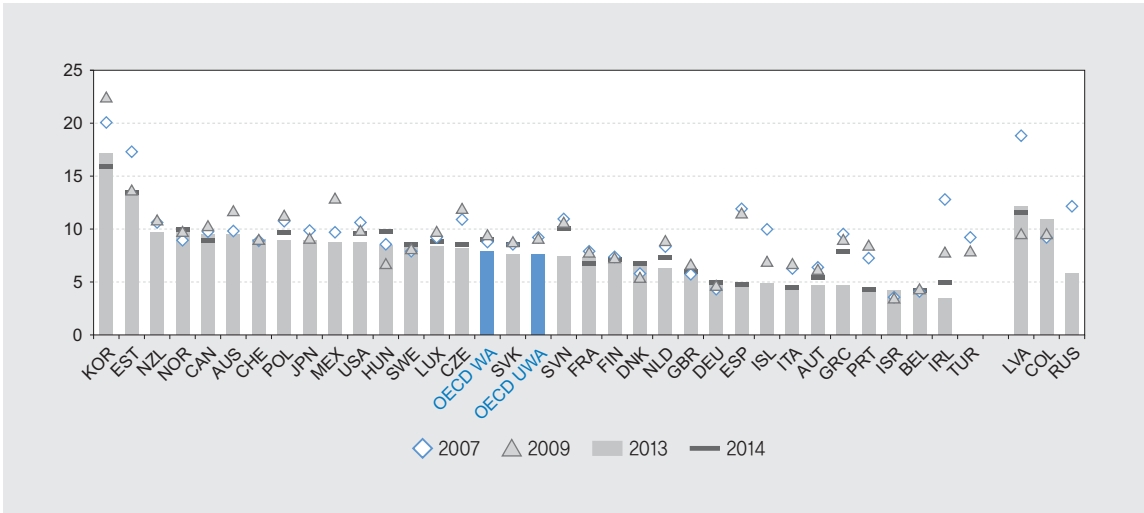
| | General public service | Defence | Public order and safety | Economic affairs | Environmental protection |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 health |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 Education | Social protection |
|-----------------|------------------------|---------|-------------------------|------------------|--------------------------|---------------------------------|--------|---------------------------------|-----------|-------------------|
| Australia | 12.9 | 3.9 | 4.7 | 11.1 | 2.9 | 1.7 | 18.8 | 2.0 | 14.4 | 27.7 |
| Austria | 14.2 | 1.2 | 2.6 | 11.1 | 1.0 | 0.7 | 15.6 | 1.9 | 9.8 | 41.9 |
| Belgium | 15.5 | 1.7 | 3.4 | 12.2 | 1.8 | 0.6 | 14.6 | 2.4 | 11.8 | 36.1 |
| Czech Republic | 11.1 | 1.8 | 4.2 | 14.3 | 2.5 | 2.0 | 17.4 | 2.7 | 12.3 | 31.7 |
| Denmark | 13.6 | 2.3 | 1.8 | 6.3 | 0.7 | 0.5 | 15.3 | 3.2 | 12.3 | 43.9 |
| Estonia | 10.3 | 4.7 | 4.9 | 12.5 | 1.7 | 1.4 | 13.0 | 5.4 | 15.4 | 30.7 |
| Finland | 14.4 | 2.6 | 2.4 | 8.2 | 0.4 | 0.7 | 14.5 | 2.5 | 11.2 | 43.1 |
| France | 11.9 | 3.1 | 2.9 | 8.7 | 1.8 | 2.4 | 14.2 | 2.6 | 9.6 | 42.9 |
| Germany | 14.3 | 2.4 | 3.5 | 7.5 | 1.3 | 0.9 | 15.8 | 1.9 | 9.7 | 42.6 |
| Greece | 16.3 | 3.6 | 3.1 | 25.5 | 1.4 | 0.5 | 8.6 | 1.1 | 7.6 | 32.4 |
| Hungary | 20.9 | 1.0 | 4.2 | 13.7 | 1.8 | 1.6 | 10.4 | 3.7 | 9.5 | 33.3 |
| Iceland | 19.2 | 0.0 | 3.1 | 10.4 | 1.3 | 2.4 | 16.3 | 6.9 | 16.9 | 23.6 |
| Ireland | 16.5 | 1.0 | 3.9 | 7.5 | 1.6 | 1.6 | 17.4 | 1.8 | 10.2 | 38.6 |
| Israel | 13.5 | 14.4 | 3.9 | 6.8 | 1.5 | 1.1 | 12.2 | 3.7 | 16.3 | 26.6 |
| Italy | 17.5 | 2.3 | 3.8 | 8.2 | 1.8 | 1.4 | 14.1 | 1.4 | 8.0 | 41.3 |
| Japan | 10.6 | 2.1 | 3.1 | 10.3 | 2.8 | 1.8 | 17.5 | 0.9 | 8.5 | 42.4 |
| Korea | 17.1 | 7.8 | 4.0 | 16.8 | 2.4 | 3.0 | 12.1 | 2.2 | 16.3 | 18.4 |
| Luxembourg | 11.5 | 0.8 | 2.3 | 9.5 | 2.6 | 1.6 | 11.9 | 2.6 | 12.7 | 44.4 |
| Netherlands | 11.0 | 2.5 | 4.2 | 8.2 | 3.2 | 1.1 | 17.7 | 3.4 | 11.8 | 36.7 |
| Norway | 9.7 | 3.1 | 2.3 | 10.6 | 1.9 | 1.6 | 17.0 | 3.1 | 11.1 | 39.7 |
| Poland | 13.5 | 3.9 | 5.3 | 9.6 | 1.8 | 1.7 | 10.9 | 2.5 | 12.5 | 38.3 |
| Portugal | 17.9 | 2.1 | 4.4 | 6.7 | 0.8 | 1.4 | 13.3 | 2.0 | 13.5 | 37.8 |
| Slovak Republic | 13.4 | 3.1 | 8.0 | 7.9 | 2.2 | 1.7 | 18.3 | 3.1 | 12.2 | 30.1 |
| Slovenia | 11.3 | 1.6 | 3.6 | 24.2 | 1.2 | 1.2 | 11.6 | 3.0 | 10.9 | 31.4 |
| Spain | 15.5 | 2.1 | 4.5 | 10.0 | 1.9 | 1.0 | 13.6 | 2.6 | 9.1 | 39.7 |
| Sweden | 14.6 | 2.8 | 2.6 | 8.1 | 0.6 | 1.4 | 13.1 | 2.0 | 12.4 | 42.3 |
| Switzerland | 11.7 | 3.0 | 4.9 | 12.3 | 2.2 | 0.6 | 6.5 | 2.5 | 17.8 | 38.6 |
| United Kingdom | 12.5 | 5.0 | 4.8 | 6.8 | 1.8 | 1.5 | 16.7 | 1.7 | 12.0 | 37.2 |
| United States | 14.3 | 9.8 | 5.6 | 9.2 | 0.0 | 1.5 | 22.3 | 0.7 | 16.0 | 20.7 |
| OECD WA | 13.8 | 5.5 | 4.4 | 9.5 | 1.2 | 1.5 | 17.7 | 1.5 | 12.5 | 32.4 |
| OECD UWA | 14.0 | 3.3 | 3.9 | 10.8 | 1.7 | 1.4 | 14.5 | 2.6 | 12.1 | 35.7 |
| Latvia | 13.2 | 2.4 | 5.2 | 13.0 | 1.8 | 3.3 | 10.0 | 4.2 | 15.7 | 31.2 |

출처: OECD, Government at Glance 2015, table 2.31.



[그림 11] 총정부지출 대비 투자지출

(단위: %)



주: 일반정부 투자지출은 인프라, 수송 인프라,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한 총고정자본형성(gross capital formation and acquisitions)등을 포함하며, 비금융자산 투자를 제함

출처: OECD, Government at Glance 2015, table 2.46.

- (공공부문 고용) 지출 감소를 위한 대다수 국가의 공공부문 개혁에도 불구하고, 2009-2013년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 고용의 OECD 평균은 19% 수준을 유지
 - 예외적으로 스페인의 공공부문 고용은 2009년 13.2%에서 2013년 12.7%, 그리스는 2009년 19.9%에서 2013년 17.5%로 감소
 - 북유럽 국가(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전체 노동력 중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30% 이상인 반면, 일본, 칠레, 멕시코의 공공부문 고용은 8~10% 수준
- (예산운영 및 절차) 대다수 OECD 회원국에서 최고감사기구(SAI)¹⁶⁾의 역할은 전통적 기능인 재무

- 감사에서 성과감사 또는 적격성 감사(VFM)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OECD 26개국 중 성과 또는 적격성 감사를 'Always' 수행하는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영국 6개국이 해당
 - 성과 또는 적격성 감사를 'Often' 수행하는 국가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한국,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네덜란드 9개국이 해당
 - 예외적으로 칠레, 체코, 스페인의 3개국은 성과 감사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응답

16) 최고감사기구(supreme audit institutions)는 한 국가 내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최고지위의 기관



〈표 5〉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최고감사기구(SAI)

(단위: %)

| | Audit financial information of public bodies | Conduct "performance audit" or "VFM audits" | Audit achievement of performance objectives | Assess the quality of performance information | Assess the quality of the "programme logic models" being used | Assess the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and may recommend reforms |
|-----------------|--|---|---|---|---|---|
| Australia | ● | ● | ▲ | ▶ | ▶ | ▲ |
| Austria | ● | ● | ◆ | ◆ | ◆ | ◆ |
| Belgium | ▲ | ▲ | ▲ | ◆ | ◆ | ■ |
| Czech Republic | ◆ | ■ | ■ | ■ | ■ | ■ |
| Chile | ● | ■ | ■ | ■ | ■ | ■ |
| Estonia | ▲ | ◆ | ◆ | ◆ | ● | ● |
| Finland | ● | ◆ | ● | ◆ | ◆ | ◆ |
| France | ● | ◆ | ■ | ● | ▲ | ▲ |
| Hungary | ● | ◆ | ■ | ◆ | ■ | ▲ |
| Iceland | ◆ | ▲ | ■ | ■ | ■ | ■ |
| Ireland | ● | ▲ | ■ | ■ | ■ | ■ |
| Italy | ● | ▶ | ▶ | ■ | ■ | ■ |
| Japan | ● | ● | ◆ | ◆ | ▲ | ▲ |
| Korea | ● | ◆ | ● | ● | ● | ◆ |
| Mexico | ● | ● | ● | ● | ● | ◆ |
| New Zealand | ● | ◆ | ◆ | ◆ | ■ | ▶ |
| Norway | ● | ● | ● | ◆ | ▲ | ▲ |
| Poland | ● | ▲ | ▶ | ▲ | ▲ | ▲ |
| Slovenia | ● | ◆ | ▲ | ▲ | ▲ | ▶ |
| Spain | ● | ■ | ■ | ■ | ■ | ■ |
| Sweden | ● | ◆ | ▲ | ◆ | ◆ | ▶ |
| Switzerland | ◆ | ▲ | ▶ | ■ | ▶ | ■ |
| The Netherlands | ● | ◆ | ◆ | ◆ | ▲ | ▲ |
| Turkey | ● | ▲ | ◆ | ◆ | ■ | ▲ |
| United States | ◆ | ▲ | ▶ | ▶ | ▶ | ▶ |
| United Kingdom | ● | ● | ● | ● | ▲ | ● |
| OECD Total | | | | | | |
| ● Always | 20 | 6 | 5 | 3 | 4 | 2 |
| ◆ Often | 4 | 9 | 5 | 11 | 4 | 4 |
| ▲ Sometimes | 2 | 7 | 5 | 3 | 6 | 8 |
| ▶ Seldom | 0 | 1 | 4 | 2 | 3 | 4 |
| ■ Never | 0 | 3 | 7 | 7 | 9 | 8 |

주: VFM(Value for Money)는 정부실행단위과 비교하여 민간투자 대인의 적격성, 투자기치성 여부를 조사
출처: OECD, *Government at Glance 2016*, table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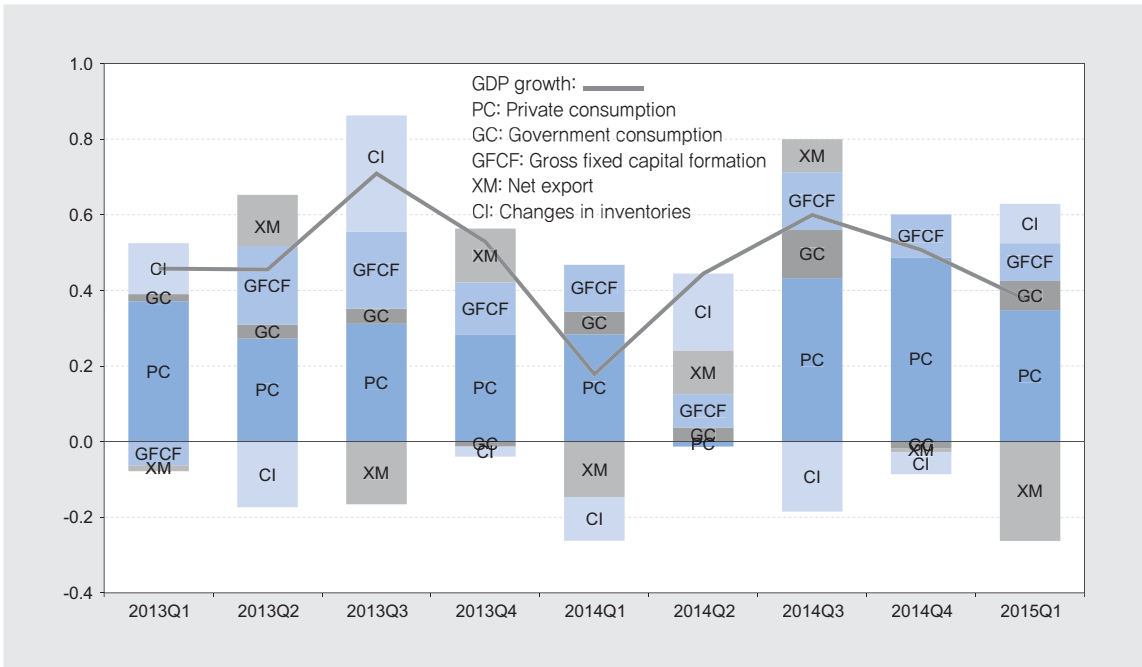


- OECD, 2015년 1분기 OECD국가 GDP 성장률의 기여도 발표(2015.7.6.)¹⁷⁾
 - OECD 회원국의 2015년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p 하락한 0.4%이며, 민간소비가 GDP 성장의 주요한 기여요인임
 - GDP 성장률 기여도는 민간소비가 0.3%p로 가장 높고, 정부 소비, 투자, 재고비축이 각각 0.1%p 성장에 기여한 반면, 순수출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0.3%p
 - 대부분의 G7 국가는 민간소비가 성장의 주요 동인이나, 일부 국가(일본, 프랑스)의 경우 재

고비축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는 투자 부진으로 인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0.1%)을 보임

[그림 12] OECD 실질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p)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17) <http://www.oecd.org/std/na/QNA-GDPContributions-Q12015-Eng.pdf>

〈표 6〉 G7 국가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p)

| | | 민간소비 | 정부소비 | 투자 ¹⁾ | 순수출 | 재고비축 ²⁾ | GDP 성장률(%) |
|-----------------------|-------|------|------|------------------|------|--------------------|------------|
| OECD 전체 ³⁾ | Q4 14 | 0.5 | 0.0 | 0.1 | 0.0 | -0.1 | 0.5 |
| | Q1 15 | 0.3 | 0.1 | 0.1 | -0.3 | 0.1 | 0.4 |
| 캐나다 | Q4 14 | 0.3 | 0.1 | 0.1 | -0.3 | 0.5 | 0.6 |
| | Q1 15 | 0.1 | 0.0 | -0.4 | 0.0 | 0.2 | -0.1 |
| 프랑스 | Q4 14 | 0.1 | 0.1 | -0.1 | 0.2 | -0.3 | 0.1 |
| | Q1 15 | 0.5 | 0.1 | 0.0 | -0.5 | 0.5 | 0.6 |
| 독일 | Q4 14 | 0.4 | 0.1 | 0.2 | -0.3 | 0.4 | 0.7 |
| | Q1 15 | 0.3 | 0.1 | 0.3 | -0.2 | -0.3 | 0.3 |
| 이탈리아 | Q4 14 | 0.1 | 0.1 | 0.0 | 0.4 | -0.6 | 0.0 |
| | Q1 15 | -0.1 | 0.0 | 0.3 | -0.4 | 0.5 | 0.3 |
| 일본 | Q4 14 | 0.2 | 0.1 | 0.0 | 0.3 | -0.2 | 0.3 |
| | Q1 15 | 0.2 | 0.0 | 0.3 | -0.2 | 0.6 | 1.0 |
| 영국 | Q4 14 | 0.3 | 0.0 | 0.0 | 0.8 | -0.3 | 0.8 |
| | Q1 15 | 0.6 | 0.2 | 0.3 | -0.6 | -0.1 | 0.4 |
| 미국 | Q4 14 | 0.7 | -0.1 | 0.2 | -0.3 | 0.0 | 0.5 |
| | Q1 15 | 0.4 | 0.0 | -0.1 | -0.5 | 0.1 | 0.0 |

주: 1)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2) Changes in inventories
 3) Contributions may not sum to GDP growth due to rounding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 OECD, “The Employment Outlook 2015”¹⁸⁾ 발표 (2015.7.9)¹⁹⁾
 - “고용전망 2015”는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회복세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전반적 노동시장 조건이 2016년까지 천천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14년 4분기 OECD 평균 실업률은 경제위기 이전보다 1.6%p 높은 7.1%이며, 2016년까지 6.6%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 예외적으로 그리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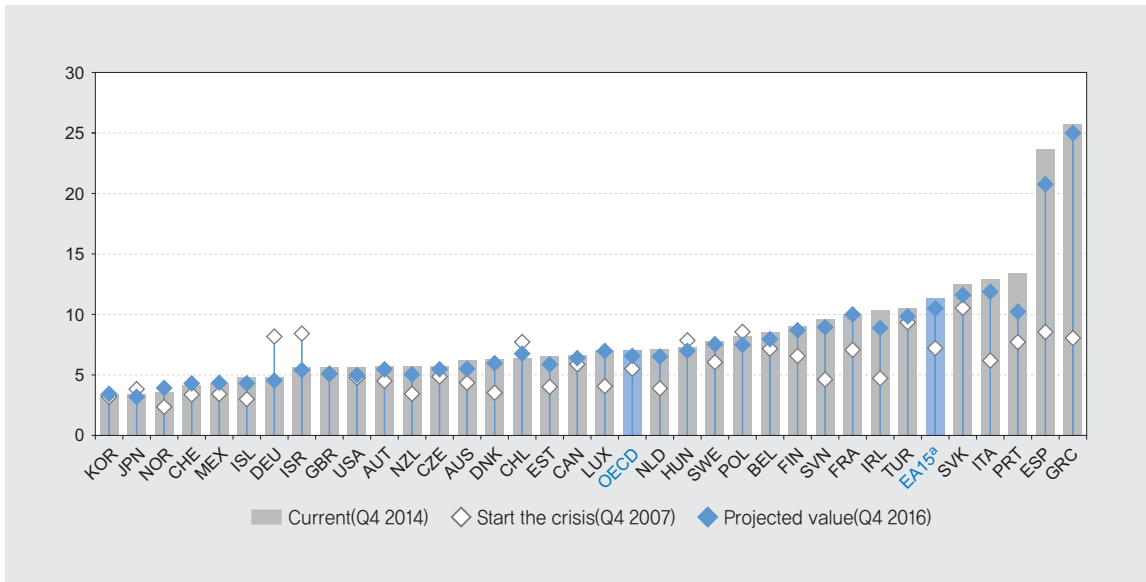
- 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OECD 평균적으로 실업자의 약 3분의 1이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에 속하며, 장기 실업자 수는 2007년 4분기 이후 약 77.2% 증가
 - 대다수 국가에서 청년실업률은 니트족(NEETs)의 증가로 인해 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을 전망
 - 2009년 이후 실질임금 성장이 둔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특히 유로지역에서 두드러짐

18) OECD는 매년 1회 회원국의 노동시장 현황 및 정책을 비교·분석하는 고용전망보고서 발간
 19) http://www.oecd-ilibrary.org/employment/oecd-employment-outlook-2015_empl_outlook-2015-en



[그림 13] OECD 회원국 실업률 비교

(단위: %)



출처: OECD, "The Employment Outlook 2015," Figure 1.3.

-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최저임금제도와 조세지원정책의 긴밀한 정책조화가 요구되며, 포용적(inclusive) 노동시장을 위한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ies) 필요
 - 2015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독일을 포함하여 OECD 34개국 중 26개국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너무 높은 최저 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실직 또는 소득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의 상승이 실소득(take-home pay)으로 이어지기 위해 조세지원정책(tax-benefit policies)과 조화 필요
 - 경제위기 이후 회복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 정책이 필요하며, 동기부여(Motivation),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 일자리 기회제공(Opportunities)의 세 가지 요소 이행이 성공적인 활성화 정책의 중점 요소
 - ☞ 동기부여(Motivation): 구직자의 구직활동 독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감소시킬 수 있음)
 - ☞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고용서비스 제공, 직업능력 개발 등 고용가능성 제고
 - ☞ 일자리 기회제공(Opportunities): 일자리 수, 다양성을 늘려 일자리 창출
- 소득 불평등이 장기적 불평등으로 전환되는 것은 '소득이동성'(earning mobility) 정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
 -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소득이동성(소득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일자리 구직과 퇴직 이동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OECD 24개국의 단기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동성이 높아지면 소득 불평등을 근로생애(working life)에 걸쳐 약 4분의 1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만성적 실업, 부실한 인지적 역량(weak cognitive skills), 비정형적 근로계약형태(atypical work arrangements), 기업 저생산성이 저소득 장기화의 주된 결정 요인임
- 최저임금이 소득불평등성을 완화시키는 영향은 장기적 측면에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호주

1. 기타

- 호주 통계청(ABS), 6월 실업률 발표(2015.7.9.)²⁰⁾
 - 호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호주 실업률(계절조정)은 전월 대비 0.1%p 상승한 6%를 나타냄
 - 6월 총실업자는 5월 대비 1만 2,800명 증가한 75만 6,100명, 경제활동참가율(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은 64.8%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20) 출처: 호주 통계청.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mediareleasesbyCatalogue/46DFE12FCDB783D9CA256B740082AA6C?Opendocument>

21) 통계청, <http://www.insee.fr/en/themes/info-rapide.asp?id=40&date=20150630>

〈표 7〉 6월 실업률 관련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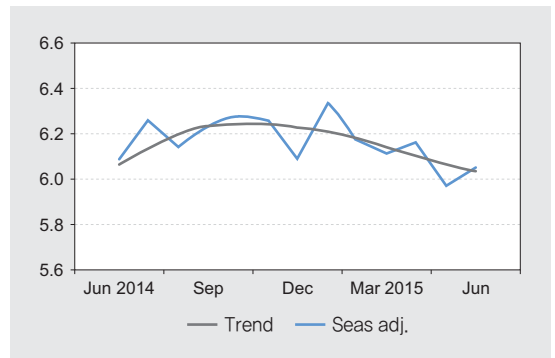
(단위: 천명, %)

| | 2015.5(A) | 2015.6(B) | (B)-(A) |
|---------|-----------|-----------|---------|
| 취업자 | 11,761.2 | 11,768.6 | 7.3 |
| 실업자 | 743.4 | 756.1 | 12.8 |
| 실업률 | 5.9 | 6.0 | 0.1%p |
| 경제활동참가율 | 64.7 | 64.8 | 0.0%p |

출처: 호주 통계청, Labour Force, Australia, Jun 2015, 2015.7.9.

〔그림 14〕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전문연구원)

프랑스

1. 기타

- 통계청, 2015년 1분기 일반정부 채무 발표(2015.6.30.)²¹⁾
 -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2015년 1분기 말 일반정부 채무는 2조 894억유로로 2014년 4분기 말 대비 516억유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사회보장 기금 채무가 전분기 대비 각각 371억유로, 158억유로 증가
-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2014년 4분기 95.6%에서 97.5%로 1.9%p 증가

- 부모 소득공제액 등의 인상으로 50억유로의 조세경감(tax relief) 제공
- 지방정부에 대한 난민관련 비용 지원
- 2016~19년 동안 총 83억유로 규모의 ODA 지출을 계획, 동 지출을 매년 총국민소득(GNI)의 0.4%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예산규모는 2019년 3,331억유로까지 서서히 증가할 계획이나, 국가부채는 2016년 초까지 GDP 대비 70% 이내 수준을 달성할 전망
- 금번 예산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 균형예산으로 편성, 2019년까지도 균형예산을 목표로 하여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

〈표 8〉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일반정부 채무

(단위: 십억유로)

| | 2014 Q1 | 2014 Q2 | 2014 Q3 | 2014 Q4 | 2015 Q1 |
|----------|---------|---------|---------|---------|---------|
| 일반정부 채무 | 1,998.9 | 2,027.6 | 2,035.4 | 2,037.8 | 2,089.4 |
| GDP 대비 % | 94.0 | 95.2 | 95.3 | 95.6 | 97.5 |

출처: 프랑스 통계청, 2015.6.30.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더 연구원)

독일

1. 예산·결산 등

- 연방내각, FY2016 예산안 및 FY2015-2019 중기재정계획안 채택(2015.7.1.)²²⁾
 - FY2016 예산안은 3,016억유로 규모의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으로 편성
 - (재정수입)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111억유로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7억유로 감소 예상
 - (재정지출) 교통 인프라 등의 투자지출, 자녀면세액 기준 인상 등의 조세경감, 지방정부 지원, ODA 지출에 중점을 둔 것이 주요 특징
 - 교통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효율화, 기후보호, 도시개발 등의 투자지출에 중점
 - 자녀면세액 기준, 자녀수당, 자녀추가수당, 한

〈표 9〉 FY2015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 기본수치

(단위: 억유로, %)

| | 2015 | 2016 | 중기재정계획안 기본수치 | | |
|----------------|----------------|----------------|----------------|----------------|----------------|
| | | | 2017 | 2018 | 2019 |
| 재정지출 | 3,016 (2.1) | 3,120 (3.4) | 3,188 (2.2) | 3,263 (2.4) | 3,331 (2.1) |
| 투자(EMS 기여분 제외) | 301 | 304 | 312 | 318 | 305 |
| 재정수입 | 3,016 | 3,120 | 3,188 | 3,263 | 3,331 |
| 조세수입 | 2,789 | 2,900 | 2,991 | 3,122 | 3,238 |
| 세외수입 | 227 | 220 | 197 | 141 | 93 |
| 신규차입 | 0 | 0 | 0 | 0 | 0 |
|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 0.0 | 0.0 | 0.0 | 0.0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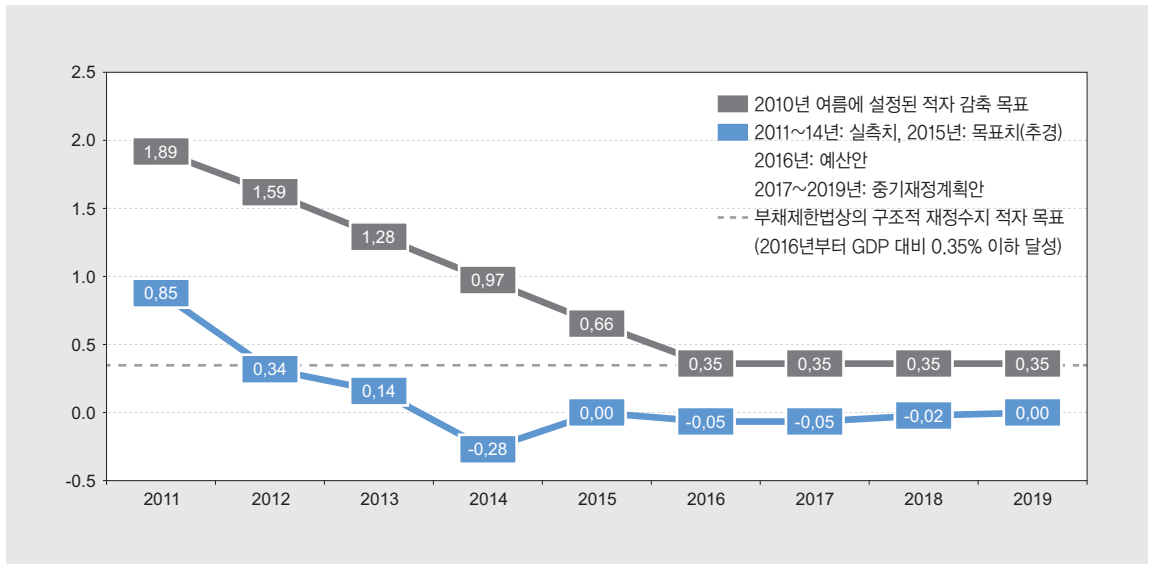
주: () 안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이며,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
출처: 재무부, Bundeshaushalt 2016 und den Finanzplan 2015 bis 2019.

22) 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5.7.1.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5/07/2015-07-01-PM23.html>

[그림 15]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추이 및 목표

(단위: GDP 대비 %)



출처: 재무부, Service, Mediathek, Infografiken, 2015.7.1.

2. 기타

- 규제비용총량제(Eins rein, eins raus)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2015.7.1, 7.10.)^{23) 24)}
 - (배경) 독일은 행정부담 감축을 위해 2006년 국가 규범통제위원회²⁵⁾를 설립하여 규제이행비용 등에 관한 관리를 해왔고, 2014년 규제비용총량제의 입법화를 추진
 - (도입) 소위 “One in, one out”으로 불리는 규제비용총량제는 중소기업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

입, 2015.7월부터 발효

- (개요) 새로운 규제도입으로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1년 내에 동일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
 - (제외) EU 규정 및 국제조약의 경우, 상당한 위험의 방지를 위한 경우, 최대 1년의 임시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모니터링) 통계청에서 이행비용 변화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6개월마다 행정비용절감 위원회²⁶⁾에 진행상황과 계획된 폐지조치에 대한

23) 연방정부, Aktuelles, Artikel, 2015.7.1.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Buerokratieabbau/2015/2015-07-01-buerokratiebremse.html;jsessionid=86148AD245FD2C0C3212D66C5E349D5FD.s112>

24) 연방정부, Aktuelles, Artikel, 2015.7.10.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5/07/2015-07-03-buerokratieentlastungsgesetz.html>

25) Nationalen Normenkontrollrat

26) Staatssekretärsausschuss Bürokratieabbau



어려움에 대해 보고

- 기본소득면세액 기준, 자녀면세액 기준, 자녀수당, 자녀추가수당, 한부모소득공제액²⁷⁾에 대한 인상법안 의회 최종통과(2015.7.10.)²⁸⁾
 - 2015.3월 동 법안이 하원에 상정된 이후 수정 및 보완 과정²⁹⁾을 거쳐 7월 최종적으로 상원을 통과
 - 기본소득면세액 기준은 종전 8,354유로에서 2016년까지 8,652유로로, 자녀면세액 기준은 7,008유로에서 7,248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
 - 자녀수당 및 자녀추가수당은 2015년부터 4유로씩, 2016년부터 2유로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자녀추가수당*은 20유로 인상되어 2016.7월부터 매달 최대 160유로 지급
 - * 한부모 가정이나 형편이 어려운 취약가정에서 별도로 받는 수당
 - 한부모 소득공제액은 종전 대비 600유로 인상

하여 2015년부터 1,908유로로 적용하고(자녀 1명 기준), 자녀 1명 추가 시 240유로씩 증액

- 금번 인상은 가파른 누진소득세율(Kalte Progression)* 완화와 연방정부의 가족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 임금이 인상되고 소득이 늘어나 소득세율이 오르게 되는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음으로서 소득이 증가했다라도 실제소득에는 변화가 없고 소득세만 인상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차가운 누진세(Cold progression)"로 불리기도 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연구원)

〈표 10〉 기본소득면세액 기준 등의 인상¹⁾

(단위: 유로, %)

| | 기본소득면세액 | 자녀면세액 | 자녀수당 ²⁾ | 자녀추가수당 | 한부모소득공제액 |
|------|-------------|-------------|-------------------------------|--------|-----------------------------|
| 종전 | 8,354 | 7,008 | 184/ 190/ 215 | 최대 140 | 1,308 |
| 2015 | 8,472 (1.4) | 7,152 (2.1) | 188/ 194/ 219 (2.2/ 2.1/ 1.9) | | 최대 160 ³⁾ (14.3) |
| 2016 | 8,652 (2.1) | 7,248 (1.3) | 190/ 196/ 221 (1.1/ 1.0/ 0.9) | | |

주: 1) () 안 수치는 증감률
 2) 해당되는 각 수치는 첫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이상 자녀의 경우를 의미
 3) 2016.7.1.일부터 적용
 4) 1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자녀 1명 추가 시 240유로씩 증액
 출처: 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5.7.10.

27) Grundfreibetrag, Kinderfreibetrag, Kindergeld, Kinderzuschlag, Entlastungsbetrag
 28) 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5.7.10.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5/07/2015-07-10-PM26.html>
 2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15.4 No.1』, 2015.4 및 『2015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5.7 참고

이탈리아

1. 예산 · 결산 등

- 경제재정부(MEF), 2014년 종합결산보고서³⁰⁾ (Relazione sul rendiconto generale dello stato) 의회 제출(2015.6.25.)
 - 순차입(Indebitamento netto)은 지난 4년 동안 줄어들다가 2014년에 다시 증가하여 491억유로 (GDP 대비 3%)를 기록
 - 순차입이 16억유로 증가하고 자본수지 적자가 28억유로 증가하였으나, 이자지출이 28억유로 감소하며 부정적 효과를 일부 상쇄함
 - 이자지출 감소로 인해 채무상환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부채수준은 2010년보다 여전히 60억 유로 높은 수준임
 - GDP 대비 부채규모는 전년 대비 3.6%p 증가하여 132.1%(2014년 12월 31일 기준)를 기록

〈표 11〉 2014년 결산법안

(단위: 백만유로, GDP 대비 %)

| | 2011 | 2012 | 2013 | 2014 |
|---------------------------|---------|---------|---------|---------|
| Spese(지출) | 804,935 | 820,041 | 819,934 | 826,262 |
| | 49.1 | 50.8 | 50.9 | 51.1 |
| Entrate(수입) | 747,781 | 771,731 | 772,479 | 777,206 |
| | 45.6 | 47.8 | 48.0 | 48.1 |
| 기초재정수지 (Saldo primario) | 19,262 | 35,776 | 30,487 | 26,126 |
| | 1.2 | 2.2 | 1.9 | 1.6 |
| Indebitamento netto (순차입) | 57,154 | 48,310 | 47,455 | 49,056 |
| | 3.5 | 3.0 | 2.9 | 3.0 |

출처: Corte Dei Conti, Relazione sul Rendiconto generale dello Stato per l'esercizio finanziario 2014 Sezioni riunite in sede di controllo, Tavola 1. 재구성

〈표 12〉 2014년 자산운영 결산

(단위: 유로)

| 구분 | 내역 | 금액 |
|----------------|--|----------------------|
| ATTIVITA'(자산) | Attività finanziarie (금융성 자산) | 669,041,069,902.56 |
| | Attività non finanziarie (비금융성 생산성 자산) | 295,228,481,393.91 |
| | Attività non finanziarie non prodotte (비금융성 비생산성 자산) | 4,296,240,771.34 |
| | 합계(Totale) | 968,565,792,067.81 |
| PASSIVITA'(부채) | Passività finanziarie (재정부채) | 2,660,141,362,111.27 |
| | Eccedenza passiva al 31 dicembre 2014(2014년 12월 31일 기준 부채잔고) | 1,691,575,570,043.46 |
| | Peggioramento patrimoniale dell'esercizio 2014(전년 대비 부채잔고 증가액) | 129,582,972,853.19 |

출처: Corte Dei Conti, Relazione sul Rendiconto generale dello Stato per l'esercizio finanziario 2014-Decisione sulla Relazione sul Rendiconto generale dello Stato 재구성

〈표 13〉 2014년 미션별 집행률

(단위: 백만유로, %)

| 미션(Missione) | 2014 | 집행률 |
|-----------------|---------|------|
| 자치권 지역과의 재정관계 | 130,168 | 21.6 |
| 사회보장 정책 | 92,998 | 37.0 |
| 공공채무 | 81,080 | 50.5 |
| 예산에 관한 경제 재정 정책 | 79,413 | 63.6 |
| 교육기관 | 42,304 | 70.6 |
| 사회 및 가족정책, 사회규율 | 33,343 | 76.2 |
| 유럽 및 세계 속의 이탈리아 | 25,795 | 80.4 |
| 국방 및 영토보호 | 20,771 | 83.9 |
| 이동권 | 12,461 | 86.0 |
| 치안 및 공공질서 | 10,800 | 87.7 |
| 노동 정책 | 10,066 | 89.4 |

30) Corte Dei Conti, Relazione sul Rendiconto generale dello Stato per l'esercizio finanziario 2014 Sezioni riunite in sede di controllo, http://www.corteconti.it/attivita/controllo/finanza_pubblica/bilanci_manovra_leggi/rendiconto_generale_2014/?id=5



〈표 13〉의 계속

(단위: 백만유로, %)

| 미션(Missione) | 2014 | 집행률 |
|-------------------------------|---------|-------|
| 토지 균형 및 발전 | 5,388 | 90.3 |
| 정의 | 7,857 | 91.6 |
| 대학 기관 | 7,847 | 92.9 |
| 기술개발 및 경쟁력 | 11,815 | 94.9 |
| 시민사회 구호 | 5,041 | 95.7 |
| 공공 인프라 | 5,087 | 96.6 |
| 연구 및 기술혁신 | 3,121 | 97.1 |
| 헌법관련기관 | 2,778 | 97.5 |
| 공공행정 및 서비스기관 | 1,637 | 97.8 |
| 이민, 주거정책 및 권리보장 | 2,384 | 98.2 |
| 복지 및 문화여가활동 | 1,567 | 98.5 |
| 분배기금 | 2,181 | 98.8 |
| 농업 및 농수산 정책 | 931 | 99.0 |
| 커뮤니케이션 | 1,414 | 99.2 |
| 건강 보호 | 1,039 | 99.4 |
| 지속가능 성장 및 환경, 영토보호 | 989 | 99.5 |
| 청년 및 체육 | 698 | 99.7 |
| 주거 및 도시 균형 | 830 | 99.8 |
| 행정운영 및 영토에 관련한 국가 및 지방정부 대표지원 | 547 | 99.9 |
| 국제시장과 생산 시스템의 국제화 | 162 | 99.9 |
| 시장조정 | 27 | 99.9 |
| 관광 | 199 | 100.0 |
| 에너지 및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 287 | 100.0 |
| 합계 | 603,025 | |

출처: Corte Dei Conti, Relazione sul Rendiconto generale dello Stato per l'esercizio finanziario 2014 Sezioni riunite in sede di controllo, Tavola 8.

2. 기타

- 이탈리아 통계청, 2015년 1분기 일반정부 비금융계정 발표³¹⁾(2015.7.1.)
 - 2015년 1분기 GDP 대비 순차입은 전년 동기 대비 0.4%p 감소한 5.6%이고,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0.2%p 증가한 3.0% 수준
 -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하여 GDP 대비 48.5%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경상지출이 0.3% 감소하고 자본지출이 7.4% 감소
 -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GDP 대비 42.7% 수준이며, 경상수입이 0.2% 증가
 - 조세부담률은 38.7%로 전년 동기와 동일

〈표 14〉 2015년 1분기 일반정부 비금융계정

(단위: 백만유로, %)

| | 2014- I | 2015- I | 전년 동기 대비 |
|-----------|---------|---------|----------|
| 지출 | | | |
| 경상지출 | 179,278 | 178,820 | -0.3 |
| 자본지출 | 11,769 | 10,901 | -7.4 |
| 총지출 | 191,047 | 189,721 | -0.7 |
| 수익 | | | |
| 경상수입 | 166,876 | 167,242 | 0.2 |
| 자본수입 | 587 | 688 | 17.2 |
| 총수입 | 167,463 | 167,930 | 0.3 |
| 경상수지 | -12,402 | -11,578 | |
| GDP 대비 | -3.2 | -3.0 | |
| 순차입 | 23,584 | 21,791 | |
| GDP 대비 | 6.0 | 5.6 | |

출처: 이탈리아 통계청, Conto economico trimestrale delle amministrazioni pubbliche

31) 이탈리아 통계청, Conto economico trimestrale delle Amministrazioni pubbliche, <http://www.istat.it/it/archivio/163350>

〈표 15〉 공공재정 분기별 지표

(단위: %)

| | 총수입/GDP | 총지출/GDP | 총지출 (이자 제외)/GDP | 차입/GDP | 경상수지/GDP | 기초재정수지/ GDP | 조세부담 |
|----------|---------|---------|--------------------|--------|----------|----------------|------|
| 2012-I | 42.7 | 48.7 | 43.8 | -6.0 | -3.0 | -1.1 | 38.8 |
| 2012-II | 46.5 | 48.9 | 43.1 | -2.4 | 1.4 | 3.4 | 42.1 |
| 2012-III | 45.9 | 47.7 | 43.0 | -1.8 | 1.7 | 2.9 | 42.3 |
| 2012-IV | 55.5 | 57.4 | 52.0 | -1.9 | 2.2 | 3.5 | 50.5 |
| 2013-I | 43.5 | 50.1 | 45.6 | -6.6 | -3.4 | -2.1 | 39.2 |
| 2013-II | 48.7 | 49.3 | 43.9 | -0.6 | 2.3 | 4.7 | 43.4 |
| 2013-III | 44.4 | 48.0 | 43.4 | -3.6 | 0.0 | 1.0 | 40.3 |
| 2013-IV | 54.8 | 56.1 | 51.2 | -1.2 | 1.2 | 3.6 | 50.2 |
| 2014-I | 42.9 | 49.0 | 44.6 | -6.0 | -3.2 | -1.7 | 38.7 |
| 2014-II | 48.7 | 49.6 | 44.3 | -1.0 | 2.7 | 4.4 | 43.2 |
| 2014-III | 45.0 | 47.9 | 43.7 | -2.9 | 0.4 | 1.3 | 41.1 |
| 2014-IV | 55.3 | 57.6 | 52.9 | -2.3 | 0.5 | 2.3 | 50.2 |
| 2015-I | 42.9 | 48.5 | 44.8 | -5.6 | -3.0 | -1.8 | 38.7 |

출처: 이탈리아 통계청, Conto economico trimestrale delle amministrazioni pubbliche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 일본

1. 예산 · 결산 등

- FY2015년도 예산집행조사 결과발표(2015.6.30.)³²⁾
 - 2015년도 예산집행조사는 총 56건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를 완료한 45건의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각 부처에 2016년도 개산요구 및 향후 예산집행에 반영하도록 요청
 - 45건의 대상사업은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 측

면에서 검토

- 이번 공표하는 조사사안 중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를 요구
 - ☞ [1] NPO(비영리기관) 등의 운영능력 강화를 통한 부흥지원사업 (부흥청³³⁾ · 내각부) (전부)
 - ☞ [17] 지역스포츠 선순환 추진 프로젝트 (문부과학성) (전부)
 - ☞ [15] 국립대학 개혁강화 촉진사업 (문부과학성) (일부)
 - ☞ [24] 학교급식용 우유 등 공급 추진 사업 (농

32) 재무성, 「平成 27 年度予算執行調査の調査結果の概要」

출처: http://www.mof.go.jp/budget/topics/budget_execution_audit/ty2015/sy2706/2706c.pdf

33) 부흥청은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부흥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관



림수산성) (일부)

☞ [25] 농업 농촌 정비 사업 (조사관련 비용)
(농림수산성) (일부)

☞ [36] 주택·건축물 석면 개수 사업 (국토교통성) (일부)

•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

☞ [7] 감옥에서의 의료관련 경비 (법무성)

☞ [18] 수도 사업 (운영 상황 등) (후생노동성)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각각 4.2%, 2.8%, 1.4%, 0.3%로 목표

- 2018년까지 GDP 대비 중앙정부 적자는 0.2%, 사회보장 적자는 0.1%까지 감소시킬 계획이며 자치지역과 지방정부는 2018년 균형재정이 목표

- GDP 대비 공공채무는 2015~2018년 각각 98.9%, 98.5%, 96.5%, 93.2%로 목표

• 2016년 비금융지출 한도는 1,233.9억유로로 2015년 한도보다 4.4% 감소

• 하원에서 7월 15일 승인되었고 상원에서 16일 논의될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스페인

1. 기타

■ 내각, 2016~2018 안정화 목표와 2016년 비금융 지출 상한 설정(2015.7.10.)³⁴⁾

• 스페인 경제의 강한 회복세를 반영해 경제전망을 상향 조정

- (경제성장률)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증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전망을 2015년 3.1%, 2016년 3.0%로 안정화보고서(2015년 4월)보다 각각 0.4%p, 0.1%p 상향 조정

- (고용) 2015년 중 안정화보고서의 50만개보다 증가한 60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 (실업) 2015년 실업률 역시 안정화보고서의 22.1%에서 개선된 21.1%로 전망

• 재정수지 목표는 안정화보고서 원안대로 설정

-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15~2018년

영국

1. 예산·결산 등

■ 재무부, 2015예산안(Summer Budget 2015) 발표^{35) 36)}(2015.7.8.)

• (경제전망) 2015년 GDP 성장률은 2.4%, 2016년 2.3%로 전망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15년 실업률은 5.4%, 고용자수는 3,1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6년 실업률은 5.1%로 감소 후 2019~20년에 5.4%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2015년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0.1%로 목표치 이하일 것으로 전망되고 2020년에 목표치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34) 출처: 총리실, <http://www.lamoncloa.gob.es/lang/en/gobierno/councilministers/Paginas/2015/20150710-councilministers.aspx>

35) 출처: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topical-events/budget-july-2015>

36) 보수당이 총선(5.7)에서 승리한 후 선거공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올해 두 번째 예산안 발표

• (재정전망) 재정건전화를 통해 FY2019-20에 재정흑자 달성을 목표로 370억파운드를 절감할 계획이며 복지개혁(120억파운드), 조세시스템 개선(50억파운드)으로 구성

* 나머지 200억파운드의 재정건전화 조치는 가을보고서에서 발표될 예정

-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은 FY2015-16에 GDP 대비 3.7%로 전망되고 매년 감소하여 FY2019-20에 마이너스(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14-15에 최고점(80.8%)을 기록한 후 FY2015-16에 80.3%로 예상되고, 이후 매년 감소하여 FY2020-21에 68.5%로 전망

• 예산안의 주요 정책방향은 근로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기업 및 생산성 개선을 장려하며 국내 경제 회복 강화하는 것에 중점

- 납세자 간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보다 많은 보수, 낮은 세금, 적은 복지(Higher pay, lower taxes and lower welfare)에 기초한 경제구축을 강조

☞ 2016년 4월부터 새로운 최저생활임금을 도입하여 25세 이상 근로자의 시간당 보수를 7.2파운드로 인상하고 2020년에 9파운드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

☞ 향후 4년 동안 Working-age benefit³⁷⁾ 및 지방주택공제(Local housing allowance)

〈표 16〉 영국 경제전망 및 공공부문 재정전망

(단위: %, 백만명, GDP 대비 %)

| | 실적치 | 전망치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경제전망 | | | | | | | |
| GDP 성장률(%) | 3.0 | 2.4 | 2.3 | 2.4 | 2.4 | 2.4 | 2.4 |
| 실업률 ¹⁾ (%) | 6.2 | 5.4 | 5.1 | 5.2 | 5.3 | 5.4 | 5.4 |
| 고용자 수(백만명) | 30.7 | 31.2 | 31.5 | 31.6 | 31.7 | 31.9 | 32.1 |
| 소비자물가(CPI) | 1.5 | 0.1 | 1.1 | 1.6 | 1.8 | 1.9 | 2.0 |
| 재정전망(GDP 대비 %) | | | | | | | |
| 공공부문 순차입 | 4.9 | 3.7 | 2.2 | 1.2 | 0.3 | -0.4 | -0.5 |
| 경기조정 경상적자 | 2.4 | 1.7 | 0.5 | -0.3 | -1.1 | -1.8 | -1.9 |
| 공공부문 순채무 | 80.8 | 80.3 | 79.1 | 77.2 | 74.7 | 71.5 | 68.5 |
| 일반정부 적자 | 5.1 | 4.0 | 2.3 | 1.4 | 0.5 | -0.3 | -0.4 |
| 일반정부 채무를 | 88.5 | 87.6 | 86.8 | 85.2 | 82.8 | 79.8 | 76.4 |

주: 1) Labour force survey estimates(LFS)

37) 포함: Jobseekers' Allowance,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Income Support, Child Benefit, applicable amounts for Housing Benefit, Local Housing Allowance rates/

불포함: Maternity Allowance, Statutory Sick Pay, Statutory Maternity Pay, Statutory Paternity Pay, Statutory Shared Parental Pay, Statutory Adoption Pay, disability



〈표 17〉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단위: 백만파운드)

| | 2015-16 | 2016-17 | 2017-18 | 2018-19 | 2019-20 | 2020-21 |
|------------------------|---------|---------|---------|---------|---------|---------|
| 자원 DEL ¹⁾ | 337.9 | 341.4 | 339.7 | 339.7 | 344.3 | 369.6 |
| 자원 AME | 337.9 | 344.3 | 358.6 | 371.8 | 384.2 | 395.2 |
| 공공부문 경상지출 | 675.2 | 658.7 | 698.4 | 711.4 | 728.5 | 764.8 |
| 자본 DEL | 24.7 | 26.0 | 26.3 | 24.3 | 25.1 | 26.8 |
| 자본 AME | 42.4 | 42.6 | 43.3 | 48.5 | 50.9 | 52.8 |
| 공공부문 총투자 ²⁾ | 67.1 | 68.6 | 69.6 | 72.9 | 75.9 | 79.7 |
| 총관리지출(TME) | 742.3 | 754.3 | 768.0 | 784.3 | 804.4 | 844.5 |
| GDP 대비 % | 39.6 | 38.7 | 37.8 | 37.0 | 36.3 | 36.3 |
| 3월 예산안 대비 | -0.3 | +14.0 | +24.1 | +25.1 | +7.1 | - |

주: 1) including depreciation

2) the government's current assumption is that PSGI will be constant in real terms in 2016-17 and 2017-18 and will grow in line with GDP from 2018-19.

동결, 사회주택 임차료 1% 인하, **38)** 복지상
한 감축 등의 복지개혁 예정

- 법인세를 인하하고 투자 및 일자리창출 관련 공제 증액
 - ☞ 법인세 인하(2017년에 19%, 2020년에 18%로 인하)
 - ☞ 연간투자공제를 2016년 1월부터 20만파운드 증액하고 고용공제의 경우 2016년 4월부터 1천파운드에서 3천파운드로 증액
 - ☞ 대학 및 SOC 투자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
- 국내 경제회복을 위해서 지역투자 증가, 민간 주도 성장 장려, 추가적인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펀더멘탈 재균형(Fundamental rebalanci

ng) 정책시행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미국

1. 기타

- 세금 정책센터³⁹⁾(Tax Policy Center), 탄소세의 도입이 연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보고서 발표⁴⁰⁾(2015.6.25.)
 - * 2013년 말에 CBO와 미 의회 상·하원 합동조사위원회(JCT)가 1톤당 25달러(탄소사회비용)를 초기 값으로 하여 인플레이션보다 2% 빠르게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분석 실시
- 향후 10년(2016~2025) 동안 1.6조달러의 총세입이 예상되나, 급여세⁴¹⁾를 포함하여 세금으로 인

38) 사회복지지 부문의 임차료가 2010-11년부터 3년 동안 20% 증가함에 따라 건물주의 이익을 낮춤

39) 세금정책센터는 브루킹스 연구소와 도시연구소가 2002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독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

40) <http://www.taxpolicycenter.org/publications/url.cfm?ID=2000274>

41) payroll tax=social security, medicare, unemployment insurance 등을 포함

한 개인소득, 법인세 및 등의 감소로 인해 순세입은 1.2조달러로 추정

- 향후 10년 동안 탄소세로 인해 전체 연방세입은 3% 증가 전망(GDP의 18.2% → 18.7%로 증가)
- 탄소세의 순 세입규모는 가솔린 · 담배 · 주류 등을 합친 소비세입(1.1조달러)보다 클 것으로 전망

〈표 18〉 2016~2025 탄소세입과 현 세입항목 추정규모 비교

| | 조달러 | % of GDP |
|---------------------------------------|-------------|-------------|
| CBO가 분석한 탄소세 추정규모 | | |
| Carbon Tax Receipts | 1.6 | 0.7 |
| Lower Income and Payroll Tax Receipts | -0.4 | -0.2 |
| Net Carbon Tax Revenues | 1.2 | 0.5 |
| 현 세입항목 추정규모(Existing Taxes) | | |
| Individual Income | 21.0 | 9.2 |
| Payroll | 13.2 | 5.8 |
| Corporate Income | 4.6 | 2.0 |
| Excise | 1.1 | 0.5 |
| Other | 1.8 | 0.8 |
| Total | 41.7 | 18.2 |

출처: "Taxing carbon: What, Why, and How," Tax Policy Center, 2015.6.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연구원)

부록 1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주요 협상 경과

| 시기 | 사건 | 주요내용 |
|-----------|---|--|
| 1.25 | 시리자 정부 집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공약) 긴축정책 철회 및 금융지원 재협상 요구 • (4대 쟁점) 부가가치세율, 연금, 노동관계법, 민영화 |
| 2.20 |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시한 4개월 연장(6/30) 합의 - 6월 말까지 유럽재정안정기금 펀드 이용 가능 |
| 4.2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단 측은 연금, 조세개혁, 노동개혁 등에서 그리스 구조개혁안 거부 |
| 5.1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 결렬, IMF 채무 7억 5000만유로 상환 • (독일) 그리스 개혁안 관련 국민투표 제안 |
| 6.14 |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간의 구제금융 협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 공공요금 인상 및 연금 삭감 거부 • 2차 구제금융 6월 말 종료 확인 |
| 6.22 | 긴급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자체 개혁안 채권단에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 정부의 새로운 개혁안에 낙관적인 협상 타결 기대 -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증세, 조기퇴직제도 폐지, 법인세 인상 등 |
| 6.25 ~ 26 |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및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제금융 종료 시한 5개월 연장 제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IMF) 그리스의 새 개혁안에 재정지출 감축보다 재정수입 증대에 중점을 둔 개혁안이라 평가 절하 • (채권단) 신규 긴축정책안 역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국민자연금 상위 20% 폐지, 은퇴연령 67세 즉시 시행 - (부가가치세 단일화) 호텔 및 외식업 소비세 경감세율 13% → 표준세율 23% 상향 조정 - (법인세) 26% → 28% 인상요구 |
| 6.27 |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 정부) 구제금융 연장 거부 및 채권단의 구제금융안을 국민투표 회부 선언 |
| 6.29 | 국민투표 실시안 의결 ECB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 현 수준 유지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 예금인출 제한조치 및 주식시장 중단 발표 • (유럽중앙은행)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 증액 거부 발표 |



| 시기 | 사건 | 주요내용 |
|------------------|---|---|
| 6.30 ~ 7.1 |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IMF 15억유로 채무상환 실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판 협상 결렬, 구제금융 연장 거부 • (IMF) 기술적 디폴트 선고 |
| 7.5 | 채권단 안의 국민투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25일 유로그룹회의에서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방안 찬반 국민투표 결과, 유권자 61% 압도적 반대(반대 61.5%, 찬성 38.5%) |
| 7.9 | 그리스 개혁 수정안 발표: 535억유로 3차 구제금융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및 연금 등 채권단 제안 (6/25) 일부 수용 • (그리스 의회) 채권단에 제출한 수정안 압도적 찬성으로 의회 통과 |
| 7.12 ~ 13 |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및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860억유로 3차 구제금융 조건부 합의안 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채권단, 7월 15일내 부가세 단일화, 세입기반 확대, 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민영화, 등 입법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M 자금상환) 500억유로의 국유자산 매각 프로그램 (그리스 관리하의 독립기금)으로 유럽안정화기구(ESM) 부채 상환 - 독일의 반대로 그리스 부채 탕감 제외 • (그리스 협상 성과) 채무 재조정, 은행 붕괴 방지, 공공자산 해외매각 저지, 유동성 확보 • IMF 5억유로 상환 실패 |
| 7.14 | 그리스, 개혁 법률안 의회 상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안) 부가세 단일화, 연금개혁 재정지출 자동 삭감 등 • 일본 사무라이 본드 8천 500만유로 상환 |
| 7.16 | 그리스, 개혁 법률안 의회 통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 (228) 반대 (64) 기권 (6) 불참 (1) |

출처: 유로그룹 및 언론 발표자료 종합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연구원>

정책흐름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 2015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2016년 국세 세입예산(안)
-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 본 자료는 2015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에서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국세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9.11(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I. '15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의의

■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의 일관성·예측가능성 제고

- 「국세기본법」 개정(14.1.1)에 따라 향후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국회제출*

* 2014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이어 두 번째 국회제출

- 기본적으로 '14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보완하여 조세정책의 일관성·예측가능성 제고

*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 지난해 이후 달라진 경제·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완 및 추진과제 추가

- '14년 중장기 추진과제 중 그간 세법개정 등에 반영되어 완료된 내용 이외에 신규 추진과제는 추가 반영

■ 전문가 등 의견수렴,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분석 강화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정·복지·인구구조·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조세전문가 외 인구구조·통일·환경 전문가 등도 포함
- 금년부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작업반'을 구성하여 조세정책여건, 중기 세수, 세목별 조세정책방향 등 분석 강화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기반하여 단년도 세법개정 추진

- '15년 세법개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따라 마련
 - 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방향하에
 -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활성화 등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재산형성,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 등 민생안정 뒷받침
 - ② '과세형평성 제고와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방향으로

- 세원투명성 제고 등 공평과세를 추진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따라 추진된
세법개정 주요내용

|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 '14~'15년 세법개정(안) 내용 |
|-------------|---------------------|--|
| 소득·금융 과세 | 비과세소득 과세전환 | 주식양도소득 과세강화, 사행산업 과세강화, 조합 등 출자금 과세합리화 |
|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 |
| |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14), 퇴직소득 과세강화('14) |
| 법인과세 | 창업·성장·퇴출 등 생애주기별 지원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확대, 창업자금 과세이연 확대, 사업재편·구조조정 세제지원 |
| | 투자·R&D·일자리창출 세제지원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취업자 세제지원 확대 |
| | 기업·개인 소득의 선순환구조 유도 |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도입('14) |
| 재산과세 | 양도소득세 과세·감면 합리화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 |
| |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 정착 |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범위 명확화 |
| 소비과세 |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외 |
| | 에너지원 간 과세형평성 제고 | 발전용 유연탄 탄력세율 조정 |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 가전제품, 향수 등 개소세 폐지 |
| 국제조세 | 역외탈세 제재 강화 | 역외탈세 가산세·제척기간 강화('14) |
|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합리화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합리화('14) |
| | OECD BEPS제도 반영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정보 확대 |
| 관세·FTA | 관세 감면 및 환급제도 합리화 | 관세 환급방법 개선, 과다환급 가산금 신설 |
| | 통관제도 개선 | 목록통관 한도 상향 |

II.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1 경제·재정여건

■ **(경제성장)** 투자부진 등에 따라 '90년 이후 성장률 둔화*

* 실질성장률(%) : ('90년대) 7.1, ('00년대) 4.7, ('10년대) 3.7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물적자본 증가 둔화 등으로 잠재성장률도 하락 전망*

* 잠재성장률 전망(GDP 기준, '13년 KDI, %): ('11년~'20년) 3.6 ('21년~'30년) 2.7

■ **(인구구조)** 출산율* 하락, 수명증가 등으로 '90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합계출산율(명) : ('90) 1.57, ('00) 1.47, ('10) 1.23, ('14) 1.21

** 65세 이상 인구 비중(%) : ('90) 5.1, ('00) 7.2, ('10) 11.0, ('14) 12.7

•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4년 73.1%를 정점으로 지속하락하고, 인구부양 부담이 증가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 비중(%, '11 통계청) ('10) 72.8, ('14) 73.1, ('20) 71.1, ('30) 63.1

■ **(사회보장지출)** 복지제도의 확대로 사회보장지출이 빠르게 증가

* 사회보장지출(GDP 대비 %) : ('90) 2.8, ('00) 4.8, ('10) 9.0, ('13) 9.8

• 인구고령화로 복지제도가 현행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사회보장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사회보장지출(GDP 대비 %, '14 보건사회연구원): ('20) 12.6, ('30) 16.7

■ **(통일)** 통일 이후 북한 인프라 구축, 남북한 소득

격차 해소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전망

* '90년 통독과정에서 국민부담률이 2%p 내외 증가: ('90) 34.8% → ('92) 36.9%

☞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구조 구축 필요

2 조세정책 상황

- **(세수신장성)** 내수의 성장기여도 하락*, 추가 과표양성화 한계**,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5 → 11%) 등으로 세수신장성 하락

* 내수의 성장기여도: ('06~'11년 평균) 3.3% → ('12~'13년 평균) 1.1%

** 민간소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05) 45.2, ('09) 68.8, ('13) 85.0

- 경상성장률 하락과 세수신장성의 약화로 조세부담률('14년 잠정, 18.0%)은 상승폭이 축소

* ('90) 16.6% → ('00) 17.9% → ('10) 17.9% → ('14) 18.0%

- **(소득종류별 과세)** 소득포착률과 공제감면 차이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간 과세불형평* 상존

* 이자·배당 소득 중 비과세·저율과세되는 소득 비중 : 35.9%('13년)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추정('10 조세연, %) : 17.1('08년)

- **(비과세·감면 제도)** 한번 도입된 비과세·감면은 이해관계가 발생하여 정비가 쉽지 않고*, 새로운 세제지원 건의도 증가 추세**

* 일몰도래 조세특례의 정비율(%): ('11) 26, ('12) 23, ('13) 77, ('14) 26, ('15e) 31

** 경제단체 및 정부부처 건의 건수: ('11) 920건, ('13) 885건, ('15) 1,139건

- **(조세정책 분석 등)**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세수효과, 세부담 귀착 등에 대한 정교한 분석 요구
 -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예측가능성 저하, 세법적응 비용 증가

☞ 감면 정비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성 제고 필요

☞ 치밀한 조세분석에 기반한 안정적 조세정책 운영으로 세제합리화

3 중기 조세부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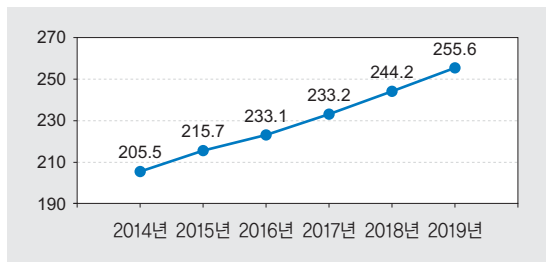
- **(중기 국세수입)** 현행 세제가 유지('15년 세법개정 안까지 반영)될 경우 국세수입은 연평균 4.3%씩 증가하여 '19년 255.6조원이 될 전망

중기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연평균 |
|-------|-------|-------|-------|-------|-------|-------|
| 국세수입 | 215.7 | 223.1 | 233.2 | 244.2 | 255.6 | |
| (증가율) | (5.0) | (3.4) | (4.5) | (4.7) | (4.7) | (4.3) |

(단위: 조원)



- **(중기 조세부담률)** 중기 조세부담률은 누진세 체계에도 불구하고 세수신장성 약화 등으로 18% 내외에서 유지

중기 조세부담률 전망

(단위: %)

|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 조세부담률 | 18.1 | 18.0 | 18.0 | 17.9 | 17.8 |

Ⅲ.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

(1)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 **(고용친화적 세제구축)** 일자리 창출 및 투자-고용의 연계 강화, 청년·장애인·비정규직 등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 **(투자·창업 활성화 등)** 창업-성장-퇴출 등 기업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업구조조정 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2) 과세형평성 제고

- **(소득종류별 과세형평성 제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 간 과세형평성 제고
- **(적정 세부담 구조 전환 등)**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 전환하고, 소득탈루 및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3)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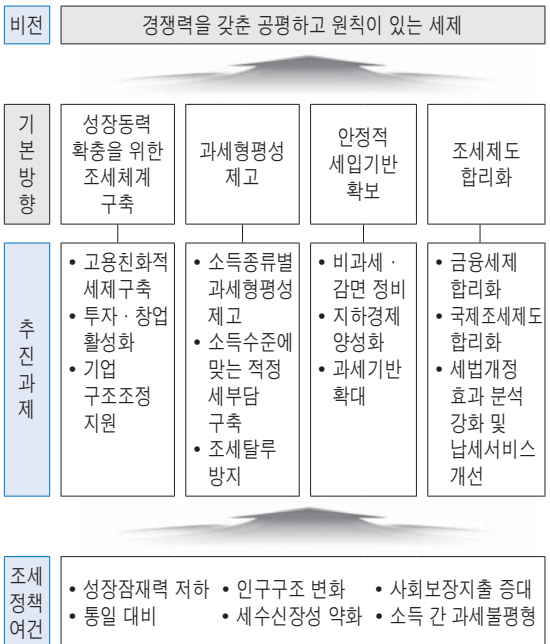
- **(비과세·감면 정비)** 예비타당성조사·성과평가 등을 통해 관행적인 일몰연장 및 조세지출 신설 지양
- **(지하경제 양성화)** 제도개선 및 세정노력 강화를 통해 자영업자 세원양성화, 역외소득 양성화 등 추진

- **(과세기반 확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탄력세율 정상화, 고액자산가 과세강화 등 세목별로 다양한 과세기반 확대 추진

(4) 조세제도 합리화

- **(금융세제 합리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유형별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금융소득 과세방식 합리화
-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국제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국내외의 소득간 과세형평성,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
- **(납세서비스 개선 등)** 조세법령을 쉽게 다시 쓰고,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며, 세법개정 효과 분석 강화

참고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체계



IV. 세목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1 소득·금융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소득세율은 6~38%이며, 소득세 세수비중은 총조세 대비 21.8%, GDP 대비 3.7% 수준('13년)
 - 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35.9%, '14년) 보다 다소 높지만, 총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음
 - * (OECD 평균 소득세 비중, '12년) 총조세 대비 34.4%, GDP대비 8.6%
-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상승
 - * ('09) 40% → ('11) 36% → ('13) 32% → ('14) 48%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13년, 4천만원 → 2천만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16년 시행) 등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
 - 다만,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중은 35.9%('13년)에 달함

(2) 중장기 정책방향

- 소득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비과세소득 및 각종 공제제도 정비,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 정착
- 자영업자의 소득과와 등 세원투명성 강화 및 과세사각지대 해소
- 연금세제 지속 정비 등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및 금융세제 합리적 개편

(3) 세부추진 과제

- 소득세 과세기반 확충
 - 일몰도래 주요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점차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제도 등 개선
-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
 -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 제도개선(예: 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등)
 -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세제상 지원 강화, 성실신고 확인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 국민 재산형성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세제보완
 -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도입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16년 이후)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일시금 대신에 연금수령 방식을 장려하도록 연금세제 보완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상장주식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적 개편
 -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단계적으로 정비

2 법인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법인세율은 10~22%이며, 법인세 세수비중은 총 조세 대비 19.8%, GDP 대비 3.4% 수준('13년)
 -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23.0%, '14년) 보다 다소 낮지만, 총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음
 - * (OECD 평균 법인세 비중, '12년) 총조세 대비 12.0%, GDP 대비 2.9%
- 법인세 과표구간은 기존 2단계 누진세율 체계에서 '12년부터 3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운영 중
 - * 과표구간별 세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 * OECD 국가 법인세율 구조: (단일세율) 독일, 영국, 호주 등 24개국, (2단계)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 7개국, (3단계 이상) 한국, 미국, 벨기에 3개국

- 실효세율은 '12년 이후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대기업 위주로 상승 추세
 - *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신고연도 기준)
 - 중소기업: ('11) 13.4% → ('12) 13.5% → ('13) 12.5% → ('14) 12.6%
 - 일반기업: ('11) 18.5% → ('12) 19.1% → ('13) 18.6% → ('14) 18.9%

(2) 중장기 정책방향

- 구조조정 지원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 구축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 공평과세를 위해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3) 세부추진 과제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 구축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등 자발적·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세제지원
 -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합병·주식인수 시 세제지원 확대
 - 청년고용 증진을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청년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영인정 기준 지속 정비
 - 기업이 특정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공제제도 보완
 - 국제적인 추세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과세체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 지속 검토
-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비영리법인 과세특례 개선
 - 영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합법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3 재산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양도소득에 대해 6~38%를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한편, 각종 비과세·감면* 및 중과제도**를 운용 중
 - *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 ** 단기양도(40·50%)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기본세율+10%p) 등

- 양도소득세의 중과·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서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
 - *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 고령화 진전으로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富)의 이전이 필요

(2) 중장기 정책방향

- 부동산 세제 관련 과세 정상화 및 형평성 제고
 -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를 정비하고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 현행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
- 국제적 추세에 맞게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
-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는 한편, 세대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 보완
- 공익법인·기부금단체에 대한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

(3) 세부추진 과제

-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위한 과세체계 정비
 -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를 정비
 -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정비*
 -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을 조정 등
 -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 비과세제

도를 공제·감면 제도로 개편 검토

-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 전환
-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
 - 국제비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세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상속세 세율체계, 공제제도 등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
-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증여세제 합리화
 - 사업기회 제공 등 변칙적 증여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증여세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녀 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 제도 개선
 - 기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
- 공익법인·기부금단체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공시 확대 등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4 소비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부가가치세 세수비중은 총조세 대비 24.2%, GDP 대비 4.1% 수준('13년)
 - 부가가치세율은 OECD 평균(19.1%, '14년)의 절반수준이며, 총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음
 - * (OECD 평균 일반소비세 비중, '12년) 총조세 대비 28.1%, GDP 대비 6.8%
 - 부가가치세 면세* 및 비과세·감면제도**를 비교적 넓게 운영
 - * 미가공식품,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의료보건용역, 도

서·신문 등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각종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유 등

- 개별소비세 세수의 총조세 대비 비중(16.7%, '13년)은 OECD 평균(14.9%, '12년)보다 높음
 -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에너지원(예: 유류)에 대한 세부담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 * 수송용 에너지 실효세율(달러/Mcal, '12년): (한국) 49.55, (OECD 평균) 54.31산업·난방용 에너지 실효세율(달러/Mcal, '12년): (한국) 2.22, (OECD 평균) 4.01

(2) 중장기 정책방향

-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및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범위 지속 확대
- 조세탈루 방지,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납세편의 제고방안 지속 추진
- 에너지세제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친환경 에너지세제로 개편하고,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 상승에 맞추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

(3) 세부추진 과제

-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지속 확대
 -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정책 목적이 달성된 비과세·감면 정비
 - 새로운 거래유형(예: 전자적 용역 거래)에 대응하여 과세제도 보완
- 조세탈루 방지 및 세원투명성 강화
 - 세금탈루 소지가 많은 물품의 거래(예: 철스크랩 등)를 중심으로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

- * 사업자 간 거래 시 매입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금융계좌를 통해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
- 납세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간이과세제도 개선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 합리화
 -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절차 개선방안 추진
 -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
- 에너지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에너지원 간 세율체계를 점진적으로 조정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
 - 물가·소득수준 상승, 소비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품목·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5 국제조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국가 간 자본과 인력 이동 등 국제거래가 확대되는 추세
 - * 외국인투자(신고기준, 억달러) : ('00) 153 ('05) 116 ('10) 131 ('14) 190
 - **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 억달러) : ('00) 62 ('05) 98 ('10) 344 ('14) 350
- 이에 따라 국가간 세법 차이 또는 과세정보 부족 등을 이용한국제적 조세회피 증가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 내국인의 해외소득 정보*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신중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지속 요구

* 해외계좌 신고 현황(조원): ('12) 18.6 → ('13) 22.8 → ('14) 24.3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CRS) 합의('14)

• 국제거래 확대 · 자본자유화 등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맞는 국제조세제도 정비 필요

■ 현재 85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 · 시행 중이며, 해외투자 증가 등에 따라 조세조약 제 · 개정 수요가 지속 확대

* 조세조약 체결국가수: 미국 67개, 독일 94개, 일본 64개

(2) 중장기 정책방향

■ OECD BEPS* 프로젝트 추진 등 역외탈세 방지 강화

*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 국제거래 확대 추세에 맞춰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합리화 및 내 · 외국인간 과세형평성 제고

■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국제세원 관리 강화

■ 국제기준, 투자규모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조세조약 제 · 개정 추진

(3) 세부추진 과제

■ BEPS 방지 제도의 도입 ·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화 추진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강화,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이중 비과세 방지 등 국제적 기준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

•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과세정보를 교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조세조약모델을 개정하여 향후 조세조약 협상 시 반영

■ 국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 국내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국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세액공제방식에서 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 검토

• 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적용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소득구분 · 과세방법 등 과세기준 정비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해외사례, 조세인센티브 실효성 및 내 · 외국인 간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 정비

■ 역외과세정보 획득 강화

• 미신고 역외소득 · 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 자진신고시 가산세 · 과태료 · 명단 공개 면제와 형사관용 조치

• 국가 간 과세정보교환 관련 이행규정 등 법령을 정비하고 주요국과 과세정보교환 조기 실시

■ 조세조약 제 · 개정 추진

• 제정 이후 20~30년이 경과된 조세조약을 그간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 기업들의 아프리카, 중남미등 신흥시장진출에 따른 이중과세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조약 체결 추진

6 관세 · FTA 분야

(1) 현황 및 평가

■ 중국의 기술추격, 선진국의 제조업 혁신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전자상거래 · 특송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증가*

* 전자상거래 수입신고(천건): ('10) 3,579 → ('11) 5,602 → ('12) 7,944 → ('13) 11,159 → ('14) 15,530

• 관세제도를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개편할 필요

- FTA 확대에 따른 무관세품목 증가 등으로 관세는 감소* 추세

* 관세 세수(조원) : ('11) 11.0, ('12) 9.8, ('13) 10.6, ('14) 8.7
 관세/국세 비중(%) : ('11) 5.7, ('12) 4.8, ('13) 5.2, ('14) 4.2

- 개별 FTA* 외에 한중일 FTA 등 Mega FTA 협상과 WTO 협상(DDA, 정보통신협정, 환경상품협정)이 진행 중

* '04.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현재 11개 권역 49개국과의 FTA 발효

- 품목선정, 관세철폐기간 등 협상시 국내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2) 중장기 정책방향

-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법령, 통관 등 관세제도를 선진화
- 자원배분 왜곡 방지, 산업경쟁력 강화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관세율을 합리적으로 운용
- 관세지원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및 감면제도 정비
- 국내산업 이익 극대화 등을 위해 Mega FTA 협상 및 주요 관세협상에 적극 대응

(3) 세부추진 과제

- 관세제도 선진화
 - 관세환경 변화 등에 따른 관세법령 및 품목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국민안전,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통관·원산지제도 개선
 - 신속한 통관 등을 위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세 환급절차 간소화 등 납세협력비

용 감축방안 마련

- 관세율 정책의 합리적 운용

-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력관세의 적극적인 활용
- 무역환경 변화 및 다자간 협정 등에 따른 실행관세율을 반영하여 기본관세율 조정

- 관세지원제도 정비

- 관세 환급제도 합리화 및 불요불급한 관세감면제도 정비

- 주요 관세협상에 적극 대응

- WTO DDA·정보통신협정(ITA) 확대·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참여하여 국내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
- 한중일 FTA, RCEP*, TPP** 등 Mega FTA 협상 및 한·EU FTA 등 기존 FTA 협정 재협상에 적극 대응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과 다자간 FTA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린,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등 12개국과 다자간 FTA

7 납세협력 등 기타 분야

(1) 현황 및 평가

- '11년부터 조세법령을 수요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게 알기 쉽도록 새로 쓰는(rewrite) 사업을 추진 중
- 새로쓰기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을 36년 만에 전부 개정('13.7월 시행)
- 소득세법·법인세법도 전부 개정안을 '13년 말에 국회 제출

- 지자체별 지방소득세 독자부과로 인하여 납세자는 신고·납부·조사 등 납세협력과정에서 납세자 부담 증가

(2) 중장기 정책방향 및 세부추진 과제

-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해 상속·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대해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정비안 마련
-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등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 신고절차 간소화, 자료제출 축소, 전자기장·전자신고 확대 등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 축소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주요 세법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세수효과, 세부담 귀착 등 분석 강화(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도입 등)
 - *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특정 조세정책이 세수, 세부담 귀착,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을 포함한 분석 시스템
- 세법개정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세법 적응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

V. 비과세·감면제도 운용 방향

1 현황 및 평가

- '15년(추정) 국세감면액은 35.7조원, 국세감면율은 14.2%로서 국세감면한도*(14.7%) 이내로 운영 중
 -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
- 그간 대기업*·고소득층** 위주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
 - * 과표 1천억원 초과 최저한세율 인상[14%→16%(‘12개정)→17%(‘13개정)],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 폐지(‘14개정) 등
 -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13개정) 등
- 한번 도입된 비과세·감면은 이해관계가 발생하여 제도정비가 어려움
 - 각종 감면의 효과에 대한 심층분석이 없을 경우 정비가 쉽지 않으며 새로운 감면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
- 청년 고용절벽 우려 등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 세제 지원 방향을 조정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

2 중장기 운용방향

- 조세지출 성과평가 등을 통해 비과세·감면 지속 정비
 -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소관 부처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 중소기업, 서민·중산층 관련 세제지원은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현행 유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정비

- 물적투자 위주에서 고용창출 위주의 지원으로 조정
 - 고용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기타 세제지원에도 고용연계 조건을 강화

2015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본 자료는 2015년 9월 8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5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지난 8.6일 '15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8.7~8.26) 및 부처협의(8.10~8.20)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법률안(15건):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상기 15개 법률안들은 2015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9.1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별첨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추가사항

1. 생산성 향상 시설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기 보완 (조특법 §24, §25의 2)

| 당초안 | 수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 시설 및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조정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10% → 1%, 3%, 6% • 적용시기: '16.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좌 등) - 다만, '16.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기존 공제율 적용 |

<수정 이유> 이미 투자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 지속 지원

2. 외부세무조정제도 근거 보완(소득세법 §70⑥, 법인세법 §60⑨, §76의 17④)

| 당초안 | 수정안 |
|------|---|
|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세무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

<수정 이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보완

3.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대상 추가확대(조특법 §91의 17)

| 당초안 | 수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주식형펀드 비과세 요건 • 대상 -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 <추가> • (가입기간) '16.1.1.~'17.12.31. • (세제혜택 기간) 가입일부터 10년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대상 펀드 추가 확대 - (좌 등) -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기존 펀드에 전용계좌를 통해 신규 투자하는 경우 포함 • (좌 등) • (좌 등) |

<수정 이유>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의 실효성 제고

4.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조정(조 특법 §106①)

| 당초안 | 수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18.12.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17.12.31. |

<수정 이유> 목재펠릿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2016년 국세 세입예산(안)

* 본 자료는 2015년 9월 4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에서 발표한 「2016년 국세 세입예산(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6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23,1조원으로 전망
- '15년 추경예산(215.7조원) 대비 7.4조원(3.4%) 증가
 - ※ '15년 국세수입은 추경예산 수준 달성 전망
 - 일반회계는 216.2조원으로 '15년 추경예산 대비 7.4조원(3.6%) 증가
 - 특별회계는 6.9조원으로 '15년 추경예산 대비 $\Delta 0.04$ 조원($\Delta 0.5\%$) 감소

(단위: 조원)

| | '14년 실적 | '15년 | | '16년 예산(안) | '15년 추경 대비 | |
|--------------|---------|-------|-------|------------|---------------|--------------|
| | | 본예산 | 추경 | | 증감 | % |
| 총국세 | 205.5 | 221.1 | 215.7 | 223.1 | 7.4 | 3.4 |
| [일반회계] | 199.3 | 213.9 | 208.8 | 216.2 | 7.4 | 3.6 |
| • 소득세 | 53.3 | 57.3 | 58.8 | 60.9 | 2.1 | 3.5 |
| • 법인세 | 42.7 | 46.0 | 44.1 | 46.0 | 1.9 | 4.4 |
| • 부가가치세 | 57.1 | 58.9 | 55.4 | 58.1 | 2.7 | 4.8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3.4 | 13.5 | 13.9 | 14.2 | 0.2 | 1.7 |
| • 관세 | 8.7 | 9.9 | 8.6 | 8.7 | 0.2 | 1.8 |
| • 기타 | 24.1 | 28.3 | 27.9 | 28.3 | 0.4 | 1.3 |
| [특별회계] | 6.2 | 7.3 | 7.0 | 6.9 | $\Delta 0.04$ | $\Delta 0.5$ |
| • 주세 | 2.9 | 3.3 | 3.3 | 3.3 | 0.04 | 1.2 |
| • 농특세 | 3.3 | 4.0 | 3.7 | 3.6 | $\Delta 0.08$ | $\Delta 2.1$ |

- 주요 세목별 예산(안)
 - 소득세 : '15년 추경예산 대비 2.1조원(3.5%) 증가
 -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증가, 명목임금 상승·고용확대 등에 따라 증가
 - 법인세 : '15년 추경예산 대비 1.9조원(4.4%) 증가
 - 법인 영업실적 개선,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증가
 - 부가가치세 : '15년 추경예산 대비 2.7조원(4.8%) 증가
 - 민간소비 및 수입액 증가 등으로 증가
 - 교통·에너지·환경세 : '15년 추경예산 대비 0.2조원(1.7%) 증가
 - 유류소비량 증가 등으로 증가
 - 관세 : '15년 추경예산 대비 0.2조원(1.8%) 증가
 - 수입액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

참고 '16년 세목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 | '14년 실적 | '15년 | | '16년 예산(안) | '15년 예산 대비 | |
|--------------|-----------|-----------|-----------|------------|------------|-------|
| | | 본예산 | 추경 | | 증감 | % |
| 총국세 | 2,055,198 | 2,211,421 | 2,157,346 | 2,231,383 | 74,037 | 3.4 |
| [일반회계] | 1,993,354 | 2,138,657 | 2,087,803 | 2,162,214 | 74,411 | 3.6 |
| ◇ 내국세 | 1,712,601 | 1,844,907 | 1,798,410 | 1,870,968 | 72,558 | 4.0 |
| • 소득세 | 533,255 | 573,310 | 588,439 | 609,259 | 20,820 | 3.5 |
| • 법인세 | 426,503 | 460,466 | 440,760 | 459,958 | 19,198 | 4.4 |
| • 상증세 | 46,252 | 51,582 | 51,582 | 52,326 | 744 | 1.4 |
| • 부가가치세 | 571,388 | 588,568 | 554,410 | 581,213 | 26,803 | 4.8 |
| • 개별소비세 | 56,241 | 76,971 | 78,226 | 86,644 | 8,418 | 10.8 |
| • 증권거래세 | 31,210 | 36,946 | 38,883 | 37,955 | △928 | △2.4 |
| • 인지세 | 7,263 | 7,208 | 9,833 | 8,327 | △1,506 | △15.3 |
| • 과년도 수입 | 40,489 | 49,856 | 36,277 | 35,286 | △991 | △2.7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34,403 | 134,658 | 139,209 | 141,612 | 2,403 | 1.7 |
| ◇ 관세 | 87,210 | 98,818 | 85,526 | 87,078 | 1,552 | 1.8 |
| ◇ 교육세 | 46,068 | 47,463 | 51,847 | 49,780 | △2,067 | △4.0 |
| ◇ 종합부동산세 | 13,072 | 12,811 | 12,811 | 12,776 | △35 | △0.3 |
| [특별회계] | 61,844 | 72,764 | 69,543 | 69,169 | △374 | △0.5 |
| ◇ 주세 | 28,520 | 32,523 | 32,523 | 32,926 | 403 | 1.2 |
| ◇ 농어촌특별세 | 33,324 | 40,241 | 37,020 | 36,243 | △777 | △2.1 |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본 자료는 2015년 9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 위한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9.8.(화) 국무회의를 거쳐 9.11.(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2016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 편성
 - 총지출은 전년 대비 3.0%(+11,3조원) 증가한 387조원
 -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경제성장 → 세입확충'의 선순환과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
 -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키우고 세대간 및 기업과 협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각화하고 벤처·창업·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지속 창출
 -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생활 안전과 국방력 강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도 차분히 준비

-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수립

I. 2016년 예산안 주요 내용

1 기본 방향

- ◇ 저성장이 지속되고, 중국경제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 ↳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융합 기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경제 재도약과 민생안정 지원

- 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의 역할을 지속
 -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 흐름을 극복하고 '15년 추경 등으로 조성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확산

-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4대 구조개혁 이행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뒷받침

2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

- **(청년희망)** 취·창업 역량 제고, 세대간 상생 및 기업과 상생 협력, 전달체계 개선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 **(경제혁신)** 벤처·창업 활성화,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지속 창출
- **(문화융성)** 자생적 창작 생태계 조성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민생안정)**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 국민안심 생활 여건 조성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 투자 강화

3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 재정사업 원점재검토, 사업수 총량관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편 등 재정운용방식 및 제도 개선
- 국가채무 증가요인을 엄격히 관리하고 재정준칙 도입 추진

2 2016년도 예산안 모습

- ◇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여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 ◇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등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 총수입은 전년 대비 2.4%, 총지출은 3.0% 증가
 - 경기회복 지연으로 총수입은 2.4% 증가 전망
 -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재정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총지출은 3.0% 증가

■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나 점차 회복 전망

-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Delta 0.2\%p$ 악화(GDP 대비 $\Delta 2.1 \rightarrow \Delta 2.3$)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1% 전망*

* 세수결손 누적, '15년 추경,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주택채 발행 확대 등의 영향-부동산 거래 증가로 강제소화 방식의 주택채 발행물량 증가

- '지출확대 → 경제성장 → 세입기반 확충'의 선순환과 지출 증가율 관리, 원점 재검토 등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단위: 조원, %, %p)

| | '15예산(A) | '16안(B) | 증감(B-A) | % |
|----------|----------------------|------------------|---------------------|-----|
| ◇ 총수입 | 382.4 | 391.5 | 9.1 | 2.4 |
| ◇ 총지출 | 375.4 | 386.7 | 11.3 | 3.0 |
| ◇ 재정수지 | $\Delta 33.4$ | $\Delta 37.0$ | $\Delta 3.6$ | |
| (GDP 대비) | ($\Delta 2.1$) | ($\Delta 2.3$) | ($\Delta 0.2\%p$) | |
| ◇ 국가채무 | 595.11 ¹⁾ | 645.2 | 50.1 | |
| (GDP 대비) | (38.5) | (40.1) | (1.6%p) | |

주: '14년 결산(주택채+지방채+지방교육채 6.2조원), '15년 추경, 주택채 물량확대 등 포함

참고 분야별 자원배분

- ◇ 사회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 확대
- ◇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역량 위주 지원

(단위: 조원)

| 구분 | '15년 예산 (A) | '16예산안 (B) | 증감 (B-A) | % |
|----------------|-------------|------------|----------|------|
| ◆ 총지출 | 375.4 | 386.7 | 11.3 | 3.0 |
| 1. 보건·복지·노동 | 115.7 | 122.9 | 7.2 | 6.2 |
| ※ 일자리 | 14.0 | 15.8 | 1.8 | 12.8 |
| 2. 교육 | 52.9 | 53.2 | 0.3 | 0.5 |
| ※ 지방교육교부금 | 39.4 | 41.3 | 1.9 | 4.7 |
| 3. 문화·체육·관광 | 6.1 | 6.6 | 0.5 | 7.5 |
| 4. 환경 | 6.8 | 6.8 | - | 0.4 |
| 5. R&D | 18.9 | 18.9 | - | 0.2 |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6.4 | 16.1 | △0.3 | △2.0 |
| 7. SOC | 24.8 | 23.3 | △1.5 | △6.0 |
| 8. 농림·수산·식품 | 19.3 | 19.3 | - | 0.1 |
| 9. 국방 | 37.5 | 39.0 | 1.5 | 4.0 |
| 10. 외교·통일 | 4.5 | 4.7 | 0.2 | 3.9 |
| 11. 공공질서·안전 | 16.9 | 17.5 | 0.5 | 3.0 |
| ※ 안전투자 | 14.7 | 14.8 | 0.1 | 1.1 |
| 12. 일반·지방행정 | 58.0 | 60.9 | 2.9 | 4.9 |
| ※ 지방교부세 | 34.9 | 36.2 | 1.3 | 3.7 |

3 투자의 중점

(1) 일할 능력을 키우고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 ① 양질의 직업훈련을 통한 청년의 취업역량 제고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1만명, 418억원),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3.5→7.7만명) 등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험과 역량 확대

* 대기업 등이 직접 직무교육 실시 → 직접고용 또는 협력업체 채용 유도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9→40개교), 일학습 병행제(3,300→6,300개社) 확대로 현장실무형 인재 양성

② 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으로 창업·취업 지원 강화

- 창업선도대학(28→34개), 창업사관학교에서 청년 창업자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밀착지원하여 준비된 CEO로 육성

- 세대간 상생고용*(1만명), 중견기업 인턴제(3만명) 등을 통해 민간의 청년일자리 확대를 뒷받침

* 임금피크제 도입+청년 신규채용 기업에 1인당 年 1,080만원 지원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노사정 합의 전제) 등 고용안전망 확충

*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수급기간 30일 확대 등

③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청년-기업을 연결하고 원스톱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zone)을 신설하여 일학습 병행 등 핵심 일자리 서비스 제공
- 스피크초월 멘토스쿨 등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통폐합

(2) 경제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① 미래 먹거리 마련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거점화* 및 제2판교 창조밸리 조기조성, TIPS 지원***(365→425억원) 등 벤처·창업 활성화

* 접수 → 선정 → 협약체결 등 사업지원 수단계를 원스톱 지원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유망 창업팀 선발 → 엔젤투자·마케팅 연계지원

- ICT 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사물인터넷 (IoT) · 드론(신규 60억원) · 5G 이동통신 등 유망 먹거리 중점 지원
- 기초연구 확대(1.5 → 1.6조원) 및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장기계속사업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R&D 지원체계 혁신

② 기술경쟁력 제고, 수출 촉진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중소 · 중견기업 R&D 바우처(0.4조원) 지원과 ‘한국형 프라운호퍼’ 도입을 통한 출연연의 기업 연구소 역할 강화
- 할랄시장 진출 지원(신규 95억원) 등 수출품목 · 지역다각화 및 FTA · 경제외교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신시장 개척 지원

* 차이나 하이웨이(중국진출 기업 경영전략 수립 등 지원) : (15)50 → (16안)150억원

- 창업 2~5년차 ‘죽음의 계곡*’ 극복을 지원하고, 환경개선펀드 조성 확대(270 → 600억원), 노후공단 근무여건 개선 등 산업단지 혁신

* 창업 후 상용화, 판로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창업기업 생존율이 크게 낮아지는 시기

③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을 신설(0.2조원)하여 소상공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성장기반을 강화
-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신규 128억원), 시장별 특성화 지원 등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시장으로 변화 유도

(3) 문화창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① 자생적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

- **(기획)** 아이디어 구체화를 지원하는 문화창조융합센터 신규 지원(5억원)
 - **(제작)** 콘텐츠 제작기업 입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문화창조벤처단지 프로그램 운영(15년 말 개소)
 - **(구현)** K-Culture valley(17년), K-Experience(복합문화 허브, 17년), 국내 최초 대형 아레나 공연장* 등 랜드마크 조성
- * K-POP 상시공연이 가능하도록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
- **(재투자)** 인재양성 · 기술개발을 위한 문화창조 아카데미 개원(16.3월)

② 의료 · 관광 ·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 전용 콜센터, 통역 · 교통 종합안내서비스(중동센터 운영) 등 해외환자 유치 가속화
 - 자연생태를 보존하면서 지역고유 볼거리 · 즐길거리 · 먹거리를 복합 제공하는 관광자원 개발
- * 한강 관광자원화(188억원), 동계올림픽 관광특구 개발(70 → 150억원)
- 킬러 콘텐츠 개발, 한류 융 · 복합 프로젝트(신규 25억원) 등 한류의 해외 확산 촉진

③ 생활속 문화향유 기회 확산과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

- 지역순회 공연(180 → 350억원), 문화가 있는 날(90 → 150억원) 등 생활 주변에서 문화 · 예술 향유기회를 적극 확대

- 경제적 애로를 겪는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3,500 → 4,000명) 및 예술인 심리상담(270 → 500명) 등 확대

(4) 맞춤형 복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등 「민생 든든 예산」

①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강화

- **(저소득층)** 개별급여 정착(8.8 → 9.6조원) 및 일을 통한 빈곤 탈출
 - * 희망키움통장 (기초수급자 3 → 5천가구), 내일키움통장 신설(자활근로자, 1.5만가구)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5.8 → 6.1만명) 등 일상생활 지원
- **(여성)** 직장어린이집(620 → 757개소), 보육체계 개편, 보조·대체교사 확대
- **(노인)** 노인일자리(33.7 → 38.7만개), 기초연금 확대(464 → 480만명)
- **(중장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뉴스테이, 1.0 → 1.5만호) 등

② 감염병 예방,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 국민안전 제고

- 항바이러스제 비축(30%), 국립보건연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장비 확충, 109 감염병 콜센터 상시화 등 감염병 대응 강화
- 구조정·구조헬기 확충 등 대형·특수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활치안 서비스 확충 및 피해자 발생시 지원* 강화
 - * 신변보호를 위한 위치확인장치·임시대피처 제공(3 → 8억원)

③ 북한 리스크 대비 방위력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 국방예산을 총지출(3%)보다 높은 4% 증액(37.5

→ 39.0조원)

- DMZ 접적지역 전투력 증강, 對잠수함·지뢰 대응 전력 보강 및 Kill-chain·KAMD 등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병 봉급(15%), GP/GOP수당(50%) 인상 및 전방부대 잡무 외부위탁 등 장병복지 증진
- 경원선 복원 1단계 착공(32 → 630억원), 이산가족 상봉 및 영유아 백신 인도적 지원 등으로 교류협력 증진

4 재정개혁

① 유사중복 통폐합

- 부처 간·부처 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낭비요인 제거
- '15년 예산 370개, '16년 예산안 300여 개 사업 통폐합을 통해 600개 사업 통폐합 조기 달성('17년 → '16년)

② 재정사업 원점재검토

- 사업평가, 외부지적,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및 성과가 낮은 80여 개 사업의 예산을 50% 이상 삭감 또는 폐지
- 특히,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

③ 사업수 총량 관리

- 보조사업수를 10% 감축(1,818 → 1,523개)하고, 非보조사업수를 '15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사업 신설 차단
 - * 기존사업 폐지에 한해 신규사업 추진 허용(one-out, one-in)

⇒ 강도 높은 재정사업 효율화 노력을 통해 연 2조원 수준 절감하고 일자리, 문화 융성, 서민 생활 지원 등에 재투자

유사중복 통폐합 사례

- 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국토부(주거급여), 복지부(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에서 중복 운영(벽지·장판 교체 후 보일러 수리 등으로 인해 벽지·장판을 재교체해야 하는 경우 발생)
 - ⇒ 국토부 주거급여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공사 및 중복 지원을 예방하여 효율성을 제고
- ②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산업부(석박사급)·미래부(퇴직과학기술자)·중기청(학사 이하)에서 각각 운영
- ③ 산업인력 양성을 총괄하는 산업부로 집행체계를 일원화하여 사업 효율성 및 국민 편의 제고
- ④ 한국학 관련 ‘해외대학 내 한국학 교수 파견’ 및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외교부와 교육부에서 중복 운영
 - ⇒ 부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수 파견은 외교부로, 학술연구 지원은 교육부로 통합하여 기능별로 특화
- ⑤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기청과 국토부에서 각각 운영
 - ⇒ 중소기업 지원 전담 부처인 중기청으로 통합하여 R&D지원과 판로확보를 효과적으로 연계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사례

- ① 해외자원개발용자(산업부, '15년 1,438억원): 성공불 용자 방식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대기업 위주 지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 '16년 예산안은 전액 감액
- ② 자활장려금(복지부, '15년 150억원):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세제 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자활장려금 사업 폐지(내일키움통장을 신규 도입하여 사각지대 보완)
- ③ 모태펀드출자(중기청·특허청, '15년 1,770억원): 추가적인 정부출연 없이 회수재원만으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신규약정 및 투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16년 예산안은 전액 감액

II.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1 '15~'19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 금번 '15~'19 국가재정운용계획은 '14~'1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이후 대내외 경제 및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
 - 분야별 민간전문가 작업반(15.2~), 국가재정전략회의(15.5), 공개토론회(15.6), 재정정책자문회의(15.9) 등을 거쳐 마련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
 - 대내외 여건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수정·보완함으로써 변화된 정책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2 기본방향

- ①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
 - 경기 회복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 지속
 -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지원

- ②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 강화**
 -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 추진
 - 재정지출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여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

- ③ **재정누수 방지 및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 가속화**
 - 보조금 등의 부정·불법 수급 근절,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낭비·비효율 해소 등 재정개혁 지속 추진
 - 사회복지 수요 증가, 학생 수 감소 등 지자체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 효율화 노력 강화
 - 민간의 창의와 유동성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의 역할을 보완

3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① **(재정수입)** '15~'19년 중 연평균 4.0% 증가('14~'18: 5.1%)
- ② **(재정지출)** '15~'19년 중 연평균 2.6% 증가('14~'18: 4.5%)

중기 재정수입·지출전망

(단위: 조원, %)

| | '15 | | '16 | '17 | '18 | '19 | 연평균 증가율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재정수입 | 382.4 | 377.7 | 391.5 | 406.8 | 426.6 | 446.6 | 4.0 |
| • 국세수입 | 221.1 | 215.7 | 223.1 | 233.1 | 244.2 | 255.6 | 3.7 |
| ■ 재정지출 | 375.4 | 384.7 | 386.7 | 396.7 | 406.2 | 416.0 | 2.6 |
| (증가율) | (5.5) | (8.1) | (3.0) | (2.6) | (2.4) | (2.4) | |

- ③ **(관리재정수지)** '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

- ④ **(국가채무)**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 | '15 ¹⁾ | '16 | '17 | '18 | '19 |
|-------------|-------------------|--------|--------|--------|--------|
| ■ 관리재정수지 | △33.4 | △37.0 | △33.1 | △25.7 | △17.7 |
| (GDP 대비, %) | (△2.1) | (△2.3) | (△2.0) | (△1.4) | (△0.9) |
| ※ 통합재정수지 | 7.0 | 4.8 | 10.1 | 20.4 | 30.6 |
| (GDP 대비, %) | (0.4) | (0.3) | (0.6) | (1.1) | (1.6) |
| ■ 국가채무 | 595.1 | 645.2 | 692.9 | 731.7 | 761.0 |
| (GDP 대비, %) | (38.5) | (40.1) | (41.0) | (41.1) | (40.5) |

주: 1) '15년의 경우, 재정수지는 본예산(국회 확정) 기준, 국가채무는 전망치 기준

4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1)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 **(전망의 정확도 제고)** 거시·재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성장률·세수전망을 보다 신중하게 하는 등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
 - 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주요 전망기관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의채널 강화
- **(총지출 규모 관리)** '15~'19년 기간 동안의 세입감소에 대응하여, 총지출 규모를 '14~'18년 계획기간 보다 하향 조정

-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관리

- **(Pay-go 등 재정준칙 제도화)**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준칙 제도화 노력 지속 추진
- 새로운 의무지출 도입시 재원조달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Pay-go 원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추진
- 총지출 증가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검토

(2) 재정개혁 지속 추진

- **(낭비·비효율 해소)** 사업기획부터 종료시까지 단계별 혁신 추진
 - **(기획단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강화, 유사·중복사업 통합합 등을 통해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 제고
 - **(집행단계)** 복잡한 전달체제로 인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복지 등의 전달체계 통합·연계 등 개선 추진
 - **(평가단계)** 부처 중심의 통합자율평가로 전환하고, 전략적 분석(Strategic Review) 제도를 도입하여 분야·부문별 평가도 추진 검토
-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효율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출 효율성 제고
- **(민간의 창의와 활력 활용)**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등을 통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재정의 역할 적극 보완

(3) 보조금 등의 부정·불법 근절 추진

-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부정·불법 수급에 대

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 조정

- 고의 부정수급시 재정지원 영구금지(One-strike Out), 부정수급액 5배 이내 제재 부가금 제도, 신고 포상금 확대(1→2억원) 등 추진

- **(재정정보 공개 확대)** ‘열린재정’ 시스템을 개통(15.7.1)하여 보조사업별 통계정보 및 다양한 재정정보를 공개
- 또한, 국고보조금의 단계별 정보관리·공개,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17년 상반기까지)

(4)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감면 정비 등)** 관행적인 일몰연장 방지, 조세지출 신설억제 등을 통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
- 국세감면율을 법정한도 내에서 관리하고, '15년부터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추진
- **(지하경제 양성화)** 현금영수증제도 강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탈세·은닉재산 추적 등 세정노력 지속 추진
- **(과세기반 확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등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

5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 **(사회 분야)**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국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되, 지출효율화 노력도 지속 추진
- 복지 분야는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복지 지출 효율화 노력 병행

- 일자리 분야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강화
 - 문화 분야는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 구축
- **(경제 분야)**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투자를 내실화하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 중점
- R&D 분야는 민간투자가 어려운 기초연구·미래 성장동력 부문 등에 집중하고 성과가 미흡한 R&D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 산업 분야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등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
 - SOC 분야는 지출을 효율화하면서 안전투자 등을 지원하고, 농림 분야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투자 확대
- **(안전 분야)** 안전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하여 신종 전염병 등 예방 강화, 4대악 근절, 환경위해 방지 등에 지속 투자
- 안전교육·훈련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중점 지원

II.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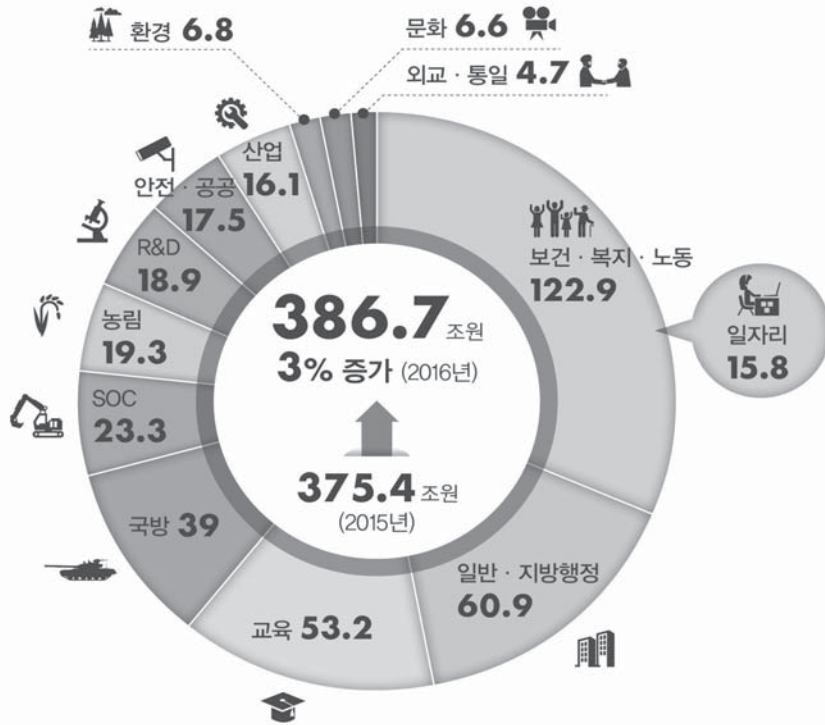
- 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9.8(화) 국무회의를 거쳐 9.11(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

대한민국 혁신을 이끄는
정부예산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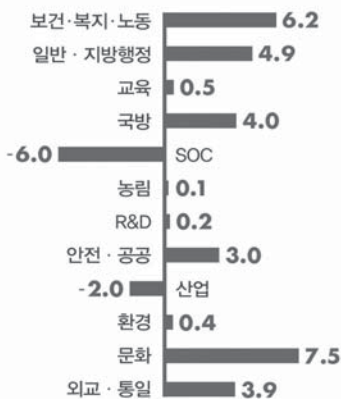


분야별 재원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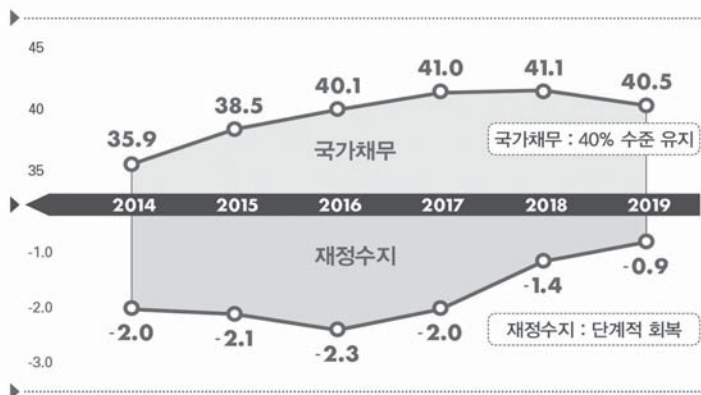
(단위: 조원)



증가율
(단위: %)



재정수지·국가채무 비율 전망 (GDP 대비, %)



1 청년-경제-문화-민생을 위한 정부예산 2016

국민행복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 희망 예산

일할 능력을 키우고
일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핵심 청년일자리
사업의 예산도
늘었습니다!

01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1만명, 418억원



일학습 병행제 확대
3,300 → 6,300개社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9 → 40개교

02

창업·취업 지원 강화



창업선도대학 증가
28 → 34개



임금피크제 지원금 증액
320억 → 521억원



세대 간 상생고용
임금피크제, 임금체제 유연화 + 청년고용
1만명, 619억원

03

일자리 및 복지 원스톱 지원



핵심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증액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통한 집행



고용복지+센터 확대
40 → 70개



실업급여 인상 및 수급기간 30일 연장
실직 전 임금 **50% → 60%**,
4.1조 → 5.1조원

2
청년·경제·문화·민생을 위한 정부예산 2016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열쇠 경제 혁신 예산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경제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01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에너지신산업 창출
969억원



유망 미래 먹거리 사업 중점 지원
1.1조 → 1.3조원



기초연구 확대
1.5조 → 1.6조원

02

중소기업 성장 지원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
3,700억원



벤처·창업 활성화 위한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지원
365억 → 425억원



산단입주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개선펀드 조성확대
270억 → 600억원

03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신설
2,000억원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지원 신설
128억원



전통시장 화장실제도 도입
11억원

안정적인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문화 융성 예산

문화 창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생적
창작생태계 조성을
지원합니다!

01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



문화창조융합벨트
1,319억원



융복합 K-Culture Valley(민자)
국내최초 대형아레나 조성 230억원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 85억원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100억 → 140억원

02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킬러콘텐츠 집중 육성
게임산업 210억 → 329억원



동계올림픽 연계 관광(건설비)
2,976억 → 3,418억원



외국인 환자 종합 서비스 창구 신설
의료기관 해외진출 모델 구축(신규)

03

문화향유 기회 확산 및 예술인 창작여건 지원



문화가 있는 날
90억 → 150억원



실버세대 문화교육
200 → 300개소
인생나눔교실
2,000 → 3,500회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3,500 → 4,000명

4 청년·경제·문화·민생을 위한 정부예산 2016



365일 국민 모두를 위한 노력 민생 든든 예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01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저소득층-개별급여 본격화 및
생계급여 확대
최대 **105** → **127**만원/4인, 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5.8 → **6.1**만명



여성-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620 → **757**개소



노인-노인일자리 확대
33.7 → **38.7**만개



중산층-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1 → **1.5**만호

02

국민안전 제고



감염병 대응 강화
항바이러스제 비축, 전 국민의 **30%**



노후 하수관 교체투자(싱크홀)
1,108억 → **2,450**억원



긴급 신고전화 통합시스템 구축
273억 원
20여개 → **3**개 (119, 112, 110)

03

방위능력 확보 및 병영문화 선진화



국방예산, **4%** 증액
첨단무기체계 확충 **11.7**조원



병사 봉급 **15%** 인상
GP/GOP 근무수당 **50%** 이상 인상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기재부 · OECD · KIPF 공동 21, 22일 ‘제4차 국제재정포럼’ 개최

경제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재정 여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재정의 역할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2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공동으로 21, 22일 양일간 ‘제4차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재정 의사결정에서의 행정부-국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정립’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게르하르트 슈테거 오스트리아 감사원 차장, 필 보웬 호주 의회예산처장 등 주요 선진국 재정관료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성장 둔화 △복지 등 의무지출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보험 비용 증가에 따라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재정여력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는 재정의 역할과 예산배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분담과 관계정립에 대해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예산과정에서의 입법을 통한 권한 배분 △입법에 의한 예산배분의 최근 경향 △예산과정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뉘 논의가 이뤄진다.

호주 의회예산처장은 “인구노화와 경제성장 둔화로 의무지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선순위가 높은 지출에 더욱 집중하고 신규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정부와 입법부의 지출증액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재정준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스웨덴 재무부 예산차관보는 ‘입법을 통한 배분: 스웨덴 사례’ 발표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감사원 차장은 ‘예산결정을 둘러싼 권력의 분배: 헌법적 요소 vs 법적요소’라는 발표에서 “의사결정권자들의 의지 없이 재정건전성 확보는 어려우며 법적 규정은 도움이 될 뿐 이런 의지를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머니투데이, 2015-09-21〉

국무조정실 “산하 27개 국책연구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이달 중 완료 목표”

“인구노화·경제성장 둔화로 재정 수요 증가...경제주체 역할 중요”

국무조정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조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27개며 이 중 6개 연구기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KDI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상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에서 “이달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실적에 따라 엄격한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삭감 및 차등 적용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준용한 기관평가를 실시해 기관장 성과연봉과 기관 경상운영비 등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기관의 예산 및 기관장·직원 연봉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추 실장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인데 이는 우리 경제사회 각 부문이 함께 동참·협력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특히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고 출연연구기관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2015-09-15)

청년고용사업 ‘요란한 빈수레’

정부 부처 앞다퉈 19개 사업 벌여
6개는 지원성격 약하고 7개는 중복...448억원 쓴
해외취업, 1,100명만 취직

지난해에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는 사업에 총 448억원을 쏟아부었다. 청년들에게 멘토링과 직무교육을 제공했지만 실제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1,100여 명에 불과했다. 청년 1명을 해외에 취업시키는 데 1인당 4,000만원 정도씩의 국민세금을 쓴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거나 각 부처의 사업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적 청년고용사업 19개 중 5개는 지원 대상이 모호하고 1개 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개 사업 중 7개는 다른 부처의 사업과 비슷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

교육부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해외 산업 현장에서 대학생들이 인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에 119억원을 투입했지만 교육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세계로 프로젝트’와 지원 대상, 사업내용이 비슷하다. ‘세계로 프로젝트’는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고용노동부의 ‘K-MOVE’ 프로그램으로 흡수됐지만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의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 역시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흡사하다. 일부 학교는 각 부처에서 동시에 예산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사업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인턴제 사업에 2013년 기준 2,498억원을 지원했지만 6개월의 인턴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65.3%에 그쳤다. 보고서는 “사업주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인턴을 반복해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들을 반영해 내년부터 일부 사업들을 합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비슷한 사업에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가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

을 미리 조율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2015-09-15〉

근로소득보다 낮은 주식소득 세율...8조 7천억원 벌어 1조 2천억원만 세금 냈다

대주주들 건수 기준 3만 5천명 해당
상위 3.7%가 전체소득의 74.8% 점유
실효세율 14.3%...과세 개선 방안 필요

지난해 주식을 팔아 10억원 이상 돈을 번 기업 대주주는 1200명가량인데, 이들에 적용된 주식 양도소득 최고세율은 소득세보다 낮은 20%에 그친다. 이에 근로·사업 소득자보다 세부담을 낮게 설계돼 있는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넓히는 미세 조정 수준의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 과세실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주식 양도소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주식을 팔아 소득을 올린 대기업 대주주와 중소기업 대주주는 각각 1만 5,308명(건수 기준)과 1만 9,84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소득 규모는 총 8조 7,684억원에 달한다.

이를 소득 규모별로 보면, 주식 양도소득이 100억원을 웃도는 이들은 116명(대기업·중소기업 합계)이며, 소득 금액은 3조 5,440억원이다. 과세 대상 주식 양도소득자 가운데 0.3%에 해당하는 이들이 과세 대상 주식 양도소득의 40.4%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범위를 10억원 초과로 넓히면, 전체의 3.7%(1,285명)가 소득의 74.8%(6조 5,57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자들이 낸 세금은 1조 2,539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4.3%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연간 1억 5,000만원(과표소득 기준)이 넘는 경우엔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견주면 주식 양도소득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낮은 셈이다. 중소기업 대주주에게는 10%, 대기업 대주주의 경우엔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탓이다.

이런 주식 양도소득 과세 방식은 다른 소득원과의 형평성뿐 아니라 소득 규모에 따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주식 거래로 번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도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고(유가증권시장 기준 지분율 2% 이상→1% 이상) 세율도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20%로 단일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근본적인 개선에는 못미친다는 평이 나온다.

■ 대안은? 그동안 주식 양도소득 과세 개선 방안은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중 하나는 보유 기간에 차등을 뒀 소득 규모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미국 방식이다. 미국에선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주식 양도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친 뒤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보유할 때는 분리 과세한다. 분리 과세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종합소득 누진세율보다는 낮다.

일본은 과거 미국과 유사하게 주식 양도소득도 여타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를 해왔으나 2004년 이후에는 20% 단일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외에도 이자나 배당은 물론 우리나라에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 각종 채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합쳐 과세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엔 누진 분리 과세를 하되 장기보유자에 한해 양도소득의 절반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들 국가들은 개인 투자자에도 과세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는 처음부터 모든 주식 양도소득자에 대해 과세를 한 반면 우리나라는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를 하고 금융소득별로 과세 방식이 다 제각각이어서 과세 방식이 복잡하다”며 “우선 다양한 형태의 금융소득을 일원화하고 손익을 통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겨레, 2015-09-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한·중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9일까지 중국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15 한·중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세연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중국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심포지엄의 첫째 날인 8일에는 ‘부동산 관련 관세제도’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세금징수 방안’을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9일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조세정책’이 소개된다.

조세연 관계자는 “양국 조세와 재정 정책을 연구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2015-09-08〉

재정포럼

2015년 9월호 통권 제231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희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최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5년 9월 15일 발행 / 제19권 제9호(통권 제231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 414-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17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